

발간등록번호
11-1250000-000128-01

22

독일 통일 총서

언론 분야

관련 정책문서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통일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2

독일통일 총서

언론 분야

관련 정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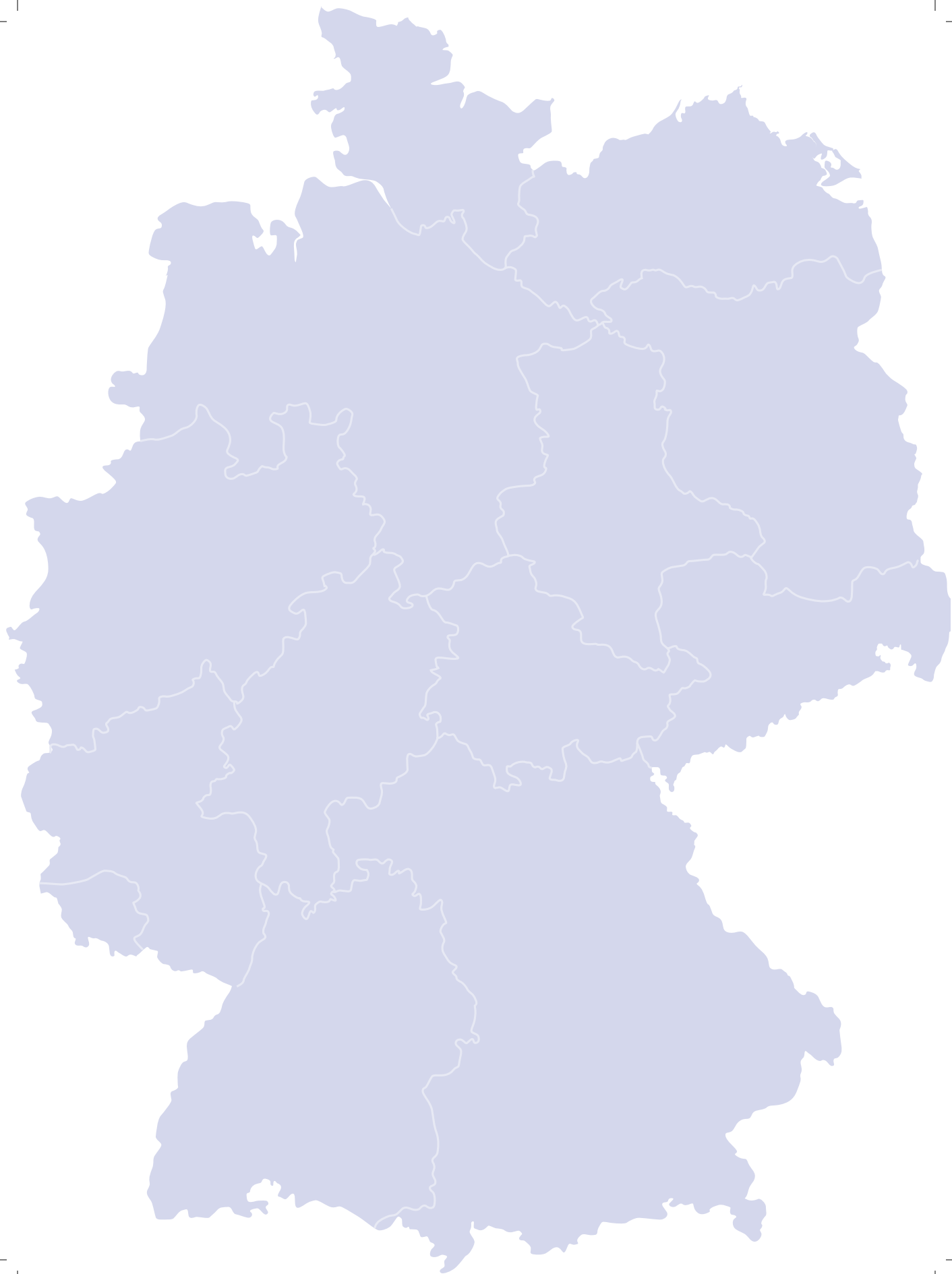
독일통일 총서 22

언론 분야 관련 정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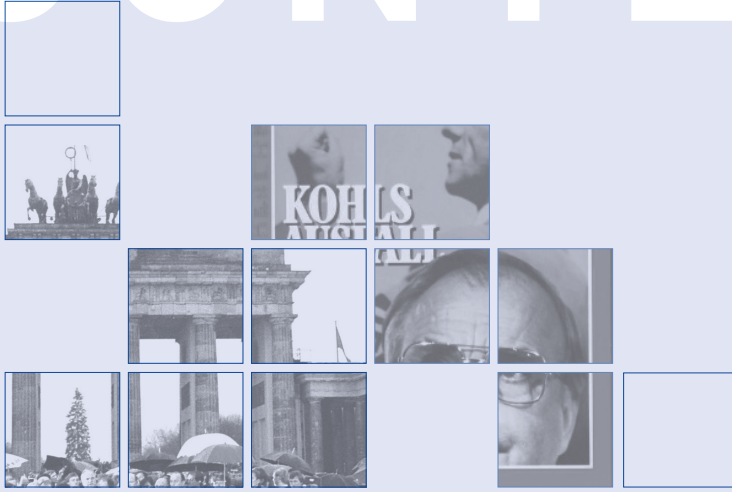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전화 02)2272-0307



CONTENTS



독일통일과 언론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제기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구성	13
제2장 동서독 언론교류 및 통일독일의 언론정책	16
제1절 동서독 언론구조와 언론교류	16
1. 서독 언론의 구조	17
2. 동독 언론의 구조	35
3. 동서독의 언론교류	48
제2절 통일독일의 언론개혁과 구조변동	55
1. 통일과정의 동독 언론변화	55
2. 통일 이후 동독 언론정책과 구조변동	74
제3장 통일과 언론 관련 국내 연구 및 정책방안	94
제1절 통일과 언론 관련 연구 현황	94
1. 독일 통일언론 사례 연구	94
2. 남북한 통일언론 관련 연구	97
3. 통일언론 관련 연구 평가	99

제2절 남북한 언론교류 및 정책방안	101
1. 언론교류의 역사	101
2. 남북 언론교류 방안	104
3. 통일 이후 언론통합 정책방안	112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19
제1절 결론	11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3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미디어

들어가며	136
제1장 동독 언론에 대한 불신과 개혁	142
제1절 슈프리트닉지 사건과 샤보브스키 기자회견	142
제2절 모드로우 정부의 언론개혁정책	144
제2장 동독의 언론심의위원회와 동서독 언론위원회	146
제3장 서독 대형 출판사와 동독 미디어시장	150
제4장 연방제에 따른 방송구조의 구축	156
제5장 신연방주 방송 담당 특임관	159

CONTENTS



언론 분야 관련 정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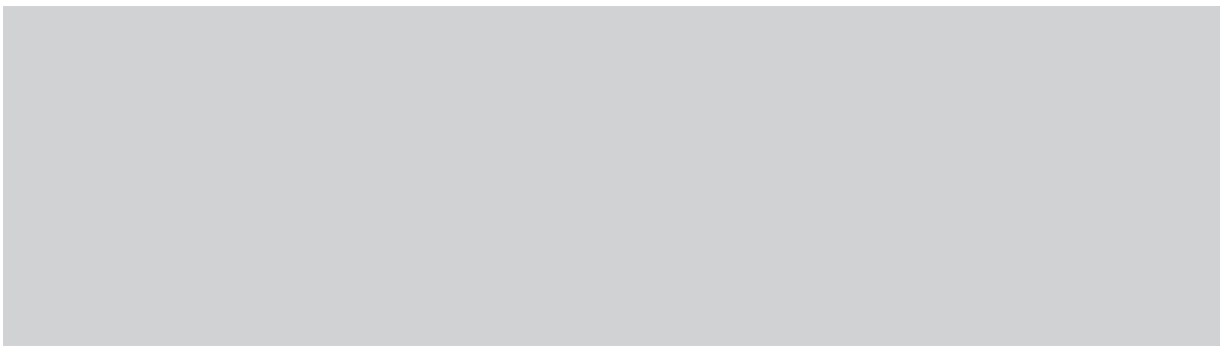
문서 목록	166
문서 요약	176
문서 요약(문서번호 1~66)	176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표 목차

표 1-1) 전후 서독의 방송 설립 현황(1948-1949)	20
표 1-2) 통일 전 서독 공영방송 현황	28
표 1-3) 서독 일간신문 발간 추이(1954-1989)	32
표 1-4) 5대 신문기업의 시장지배력(1976년 기준)	33
표 1-5) 주요 동독 라디오채널 현황(1989년)	41
표 1-6) 1988-1989년 동독 일간신문 현황	46
표 1-7) 통일과도기 동독 공산당 신문 소유관계 변동내역(1989-1990년)	65
표 1-8) 동독 주요 신문 소유관계 변동내역(1989-1990년)	69
표 1-9) 통일 이후 동·서독인의 일일 미디어 이용 현황(2015년)	89
표 1-10) 동서독지역 텔레비전 시청률 추이 비교(1994-2014년)	90
표 1-11) 언론교류 3단계 방안	109

언론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과 언론

김진웅
(선문대학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전후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은 곧 동서독통일 30주년을 맞이하지만, 한국은 분단의 역사만 더 길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축하의 분위기가 넘치나, 우리나라에서는 시련을 인내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연속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있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남북문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이다.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강경노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과 미국 국익을 최우선주의로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 등 보수적 국제기류는 이러한 긴장된 남북관계의 배경으로 작용하여 왔다.

지난 1990년 동서독이 통일을 이루자, 남한과 북한도 곧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한동안 부풀어 올랐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남북 사이의 분단 상황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물론 남북정상회담도 두 차례나 개최되었고, 개성공단 조성, 다양한 남북 협력관계 성사 등으로 기대가 고조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교류들은 그 성

과들이 축적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사건으로 그쳤을 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효과가 빈약하여 공허하게 다가온다. 이런 와중에서 당위론적 긍정적 통일론과 회의론적 부정적 통일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막대한 통일비용 문제 등으로 통일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남북통일이 완성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독일은 우리보다 최소한 30여 년 앞서 이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동서독통일은 남북한이 통일되기 전에는 소중한 모델사례이다. 아니 통일이 된 이후에도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1990년대에 독일통일 경험을 함께 공유했었지만, 당시에는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분석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성찰적 시각에서 볼 때 미처 공유하지 못했거나 재평가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또한 독일통일이라는 현상 자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리 비춰지고 재평가된다. 아울러 정치적 통일은 지난 과거의 사건이지만 동독과 서독이 완전한 내적 통일을 달성하기까지 독일통일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독일과 한국의 주어진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우리가 독일통일 사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독일통일 경험을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민주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일궈냈다는 점일 것이다. 동독과 서독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이데올로기적 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느 쪽이 통일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또 물리적 힘에 의한 통일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화적 절차를 거쳐 일궈냈다는 점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사적 사건이다. 우리에게 6.25전쟁이라는 비극적 경험이 있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아울러 주변 강대국들의 동의와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했던 과정도 4대 강국 영향력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통일과정에서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보다는 동독 주민들의 적극적



인 지지를 기반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남북한통일에서도 북한 주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독일통일은 주변 강대국의 반대를 극복하고 달성하였다.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주변 강대국들이 독일통일을 강하게 반대했으나, 독일은 외교력으로 이들 나라를 설득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북한과 중국의 유대관계,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등 한반도 주변의 통일 환경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독일이 주변 강대국의 반대를 극복하고 이룬 통일외교 전략을 우리가 참고해야 할 이유이다.

넷째, 동서독통일의 경험들을 참고하여 남북한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 한국통일의 발단, 과정, 통일 이후 개혁은 독일 사례와는 상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지만, 통일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공통적인 현상들은 공유될 수 있다. 주민의 대량탈출 및 이주,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통일비용 조달 문제, 국영방송의 개혁 문제 등은 차후 통일과정에서 마주해야 할 일들이다.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경험했고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다.

통일은 보통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하는 관점과,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일을 특정 시점에 한정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는 시각은 정태적 관점으로 그 사건 자체에만 주목하는 것이다. 반면 통일을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시각은 사건으로서의 통일 이전과 이후의 긴 기간을 포함하여 진행되는 현상으로 보는 동태적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판단할 때 독일통일은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단 이후 수십 년간 다양한 인적, 물적 상호교류가 이어져 통일의 결실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의 언론교류가 독일통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구체적으로 서독 방송의 잠재적, 누적적 효과가 증폭되어 동독

붕괴를 낳았다고 인식된다.¹

이 글에서는 이러한 독일통일과 언론의 역할 관계를 주목하고자 한다. 통일 전 서독 텔레비전은 굳게 드리워진 이데올로기적 장막을 뚫고 동독인들에게 침투되어 베를린 장벽을 무너트리는 데 기여하였다. 통일 이후에는 동서독을 잇는 공론장이자 독일을 하나의 진정한 공동체로 건설하는 데 구심체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독일통일과 언론에 관한 주제가 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것은 1990년 독일통일 직후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몇몇 연구²를 제외하면, 국내 통일언론에 관한 논의에서도 독일사례는 관심의 대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듯이 보인다. 반면 그동안 독일 현장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통일언론을 조명하는 연구 성과들이 제시되었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통일 이후 ‘내적 통일’의 과정이 지속되어 왔다. 우리는 독일통일을 하나의 정치적 사건으로만 인식해 온 것은 아닌지, 진정 독일통일에서 배울 점을 제대로 흡수·소화시켰는가 하는 반성과 함께 아직도 진행 중인 동서독 통일과정을 장기간의 긴 여정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은 여전히 필요하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구성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통일과 언론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통일과 언론의 문제를 진단하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독일통일은 일련의 과정으로 통일 이전, 통일 전환기 및 통일 이후를 모두 아우르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런 과정으로서의 통일에서 언론의 역할을 살펴

.....

¹ Cheml, Christian(2009). Die DDR-Berichterstattung bundesdeutscher Massenmedien und die Redaktionen der SED(1972-1989). Metropol. 김영욱·심영섭(2011). 통일과 언론: 독일의 경험, 언론재단 연구서 2011-08. 한국언론진흥재단. 재인용.

² 김영욱·심영섭(2011). 통일과 언론: 독일의 경험, 언론재단 연구서 2011-08. 한국언론진흥재단.



보려고 한다. 여기에는 언론의 기능뿐 아니라 언론의 구조 및 질서 그리고 변화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 사례는 그 자체로서보다도 한국통일과 연계 차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독일경험을 성찰하는 관점에서 남북 통일언론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언론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보다 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우리나라 통일언론의 현주소는 독일에 비유하면 1970년대 이전의 냉전적이고 적대적인 언론교류의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류단계를 거쳐서 도달한 통일 그리고 내적 통일의 정착단계까지 통과한 독일사례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비록 구체적인 측면의 분석에서는 독일과 한국이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총체적인 관점에서 독일통일 사례는 매우 귀중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내용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즉 독일통일과 언론에 관한 분석(2장)과 한국통일과 언론에 관한 부분(3장)이다. 독일의 통일 사례는 올바른 이해 및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고, 한국의 통일 논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모색을 위한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장에서는 통일 이전부터 통일 이후 언론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분단시기 동독과 서독의 언론질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본다. 이는 궁극적으로 동서독 방송개방에서 왜 서독 방송이 동독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또 동독 방송은 왜 자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았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분단 시기 활발했던 동서독 간의 언론교류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 이어서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전환기의 동독 정부의 언론정책들을 살펴보고, 통일 이후 동독 방송과 신문의 개혁정책을 서술하려고 한다. 덧붙여 통일독일에서 나타난 구동독 언론시장의 변화 및 특징적 현상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3장에서는 앞장에서 서술한 독일통일 경험을 기반으로 한 한국에서의 통

일언론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세부적으로 한국의 통일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남북 언론교류는 어떠한지, 바람직한 방안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 언론개혁의 정책방안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등에 관해 설명하려고 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독일의 통일언론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또 남북통일과 언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들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려고 한다.

동서독 언론교류 및 통일독일의 언론정책

제1절 동서독 언론구조와 언론교류

독일통일과 언론에 관한 주제를 생각할 때는 ‘따로 또 함께’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었다가 하나가 된 사실, 서독과 동독의 언론이 서로 상이한 시스템이었지만 상대방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실, 독일통일 이후 단일국가이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그렇다. 독일 분단은 서로 다름의 구조를 낳았으나, 동시에 하나를 위한 지속적인 언론교류는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단과 상호 소통이 동서독통일로 이어졌고, 통일독일의 현주소를 낳은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분단 시기의 동서독의 언론현상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통일 이전 서독의 언론 질서에 대한 이해는 통일 이후 독일 언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통일 이후 독일 언론정책은 서독의 언론모델에 따라 동독 언론이 흡수·통합되는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서독 방송시스템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서독 신문시장의 구조 및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독의 언론구조에 대한 분석도 통일문제의 이해에서 선결요건에 속한다. 왜냐하면 베를린 장벽 붕괴 및 독일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이미 분단시기부터 배태되

어은 산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독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소통의 구심점이 되지 못해 궁극적으로 동독 정권이 내적으로 붕괴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독 언론질서의 전반적인 특징 및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1. 서독 언론의 구조

1) 언론정책의 기초

분단 시기 서독 언론의 기본질서 및 통일 이후 독일 언론지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언론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연합국의 언론정책이 기본 골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론정책은 패전국 독일이 스스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전승국이 주도한 정책이었다. 서독지역을 점령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연합국의 언론정책은 무엇보다 나치시대의 언론도구화 경험에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언론이 국가 권력에 의한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막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의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는 방송영역과 신문영역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 제도화시켰다. 공영방송시스템 도입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연합군 주둔 시기의 언론은 민족주의나 인종주의 등과 관련하여 독일 국민을 재교육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전승국 모두는 이런 언론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연합국 언론정책의 기초는 서독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유지되었다. 서독 언론정책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 토대는 독일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 5조에 의거한다. 즉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 글 혹은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전파할 수 있으며, 접근이 가능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로이 정보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신문(언론)의 자유와 방송 및 영화를 통한 자유는 보



장되고 검열은 금지 된다”고 명시하여, 표현의 자유나 언론 자유와는 별도로 신문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언론정책이 요구되고 이의 궁극적 지향 목표 중의 하나는 언론의 다양성이다.³ 언론 다양성이 정책의 상위목표로 지향되고 있는 근거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원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랄프 다렌도르프는 민주주의를 ‘갈등과 타협을 통한 지배’라고 정의했는데,⁴ 이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다수의 집단이 공존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이질적이고 다채로운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언론의 다양성도 강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호 이해관찰과 사회변화의 수단 및 방법상 논의에 있어서 사회집단 간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나아가 언론은 다시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민주주의는 전 사회집단이 최대한 의견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할 때 가능하며, 또한 사회현안에 대해 국민 다수의 기본적 동의(Grundkonsens)가 형성될 때 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론의 다양성 추구 방법에 있어서 신문과 방송은 동일하지 않다. 즉 신문영역에서는 자유 시장경쟁 논리에 의해 자율 조정되도록 맡겨두고 별도의 규제적 언론정책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매체의 특수성 때문에 방송은 그 자체 스스로가 최적화를 지향하지 못한다. 또 방송은 여론형성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오용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문처럼 사상의 자유 시장 논리에 따라 자율 조절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방송의 정기능 보장을 위해서는 사전적 규제가 요구된다.⁵

다음에서는 이러한 서독 방송과 신문의 제도적 골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³ Heinrich, Juergen(1994). Medienoekonomie, BandI: Mediensystem, Zeitung, Zeitschrift, Anzeigenblatt,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p.93.

⁴ Tonnemacher, Jan(1996). Kommunikationspolitik in Deutschland, Konstanz. p.40.

⁵ Hoffmann-Riem, Wolfgang(1979). Rundfunkfreiheit durch Rundfunkorganisation, FaM. p.19.

2) 서독의 방송

(1) 전후 서독 방송정책

서독 주둔 연합군의 방송정책은 방송의 정치권력 도구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운영원칙을 제시하였다.⁶

첫째는 기존의 중앙집중적 국영방송제도를 탈피하여 공영방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제도를 통하여 정부나 정당에 의한 통제 및 경제적 이해집단에 의한 통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대신 사회적 집단에 의한 방송시스템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영국 BBC 방송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중앙집중적 방송시스템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는 전국 차원의 단일 방송시스템 대신, 각 주 단위로 지역방송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45년 영국군 점령지역에 북서독일방송(NWDR)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지역공영방송사가 1948년에서 1949년에 걸쳐 각 주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거점을 둔 다수의 공영방송사들은 상호 연합하여 1950년 전국방송채널 ARD(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를 출범시켰는데, 이것이 오늘날 제1독일공영방송이다. ARD는 따라서 단일 방송사가 아니라, 전국 지역 공영방송사가 함께 편성하는 전국채널이다. 나아가 1961에는 또 다른 전국채널인 독일 제2공영 텔레비전방송 ZDF(Zweites Deutsches Fernsehen)가 설립되었는데, ARD와는 달리 중앙집중적 방송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다만 방송에 관한 권한은 각 주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ZDF 운영 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이다.

⁶ Tonnemacher, Jan(1996), Kommunikationspolitik in Deutschland, Konstanz. p.27.



표 1-1) 전후 서독의 방송 설립 현황(1948-1949)

방송사	창립일	소재지	방송권역(州)	관할 연합국
북서독일방송(NWDR)	1948.01	Hamburg	Schleswig-Holstein, Niedersachsen, Berlin, Nordrhein-Westfalen, Hamburg	영국
헤센방송(HR)	1948.10	Frankfurt	Hessen	미국
남독일방송(SDR)	1949.05	Stuttgart	Wuerttemberg, Baden	미국
바이에른방송(BR)	1948.10	Muenchen	Bayern	미국
라디오브레멘(RB)	1949.03	Bremen	Bremen	미국
남서부방송(SWF)	1949.01	Mainz/ Baden-Baden	Rheinland-Pfalz, Wuerttemberg, Baden	프랑스

출처 : Stuibler, Heinz-Werner (1998a). Medien in Deutschland Band2 Rundfunk, 1.Teil. Konstanz. UVK Medien. pp.200-201 재구성.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지역 단위로 신설된 공영방송사들은 대부분 독일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 개국하여 주정부에 넘겨지는 절차를 거쳤다. 지역 공영방송 대다수는 주(州) 단위로 방송권역이 분할되었다. 그러나 북서독일방송(NWDR)은 쉘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및 니더작센(Niedersachsen)주를 포괄하는 방송이자 베를린, 함부르크까지 방송권역으로 하는 가장 큰 방송사였다. 전체 서독지역의 절반 정도가 북서독일방송의 방송권역에 포함되었다. 북서독일방송은 차후 각 주 사이의 이해관계 차이 등으로 인해 다시 세 개의 방송사로 분리되었다. 먼저 동독 한가운데 섬처럼 홀로 떨어져 있는 지역인 베를린은 1953년 11월 법률제정을 통해 자유베를린방송(Sender Freies Berlin)으로 독립하여 개국하였다. 이어 1954-1955년 사이에 서부독일방송(Westdeutscher Rundfunk)과 북부독일방송(Norddeutscher Rundfunk)이 분리 출범하였다. 그 외에도 서독 남서부 자를란트(Saarland)주는 전후에 프랑스에 속했다가 1957년에 다시 독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자를란트는 전

후 프랑스 지배를 받아 1955년까지 프랑스인이 방송사 사장을 지내는 등 다른 주에 비해 오랫동안 검열이 실시되었다. 이런 연유로 1957년 뒤늦게 지역공영방송 자를란트방송(Saarlaendischer Rundfunk)이 공식 출범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후 서독지역 방송은 아홉 개 지역 공영방송사로 구성되었고, 상호 연방적 조직을 갖춘 새로운 방송질서가 수립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차후 서독 방송제도는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고유한 공영방송 질서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런 공영 독점 방송시스템은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다가 상업방송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이원적 방송제도로 전환되었고 동서독통일을 맞이하였다. 이런 특성으로 통일 전까지 서독 방송은 사실상 공영방송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었고, 분단시기 동독지역에 미친 방송의 역할은 사실상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2) 서독 방송의 법제

전후 서독 방송정책 전반을 지배하는 법적 토대는 독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와 동일시되는 동시에 제한적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유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 운영주체가 스스로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의 자유권을 대리적으로 구현해 주는 봉사 또는 기여의 자유(Dienende Freiheit)를 뜻한다. 또는 개개인이 향유하는 자유보다는 공동체 차원의 집단적 자유(Kollektive Freiheit)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이 신문에 비해 강조되는 이유도 이와 관련되며, 특히 독일 방송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에 기여하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원칙하에 독일 주정부들은 그동안 방송에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연방 차원에서 다양한 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이러한 방송국가조약(Rundfunkstaatsvertrag)의 존재는 방송정책에 관한 권한이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에게 있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방송국가조약은 연방 차원의 법률



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주는 방송국가조약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공통적 이해관계 사안들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다.

방송국가조약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개별 사안 단위로 조약을 따로따로 체결하였다. 첫 번째 방송조약은 ARD운영에 관한 것으로, 각 주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편성하는 텔레비전 ARD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1959년 4월 17일 제1텔레비전 방송운영에 관한 상호협약 및 각 지역 공영 방송 사이의 재원배분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ARD-Staatsvertrag). 그 뒤를 이어 1961년 6월 6일에는 전국채널인 제2공영방송 ZDF 설립에 관한 국가조약(ZDF-Staatsvertrag)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68년 10월 31일 공포된 방송수신료 규정에 관한 국가조약이다. 이후부터 방송수신료 인상 시마다 관련법이 매년 개정되다가 1988년에는 ‘방송재원 국가조약(Rundfunkfinanzierungsstaatsvertrag)’이라는 법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동서독통일 이후 1990년대부터는 통합 방송조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개별 사안과 관련된 각 주 간의 다양한 협약들은 1991년 8월 31일 ‘통일독일 방송에 관한 국가조약’으로 단일화되었다. 흔히 ‘방송 국가조약(Rundfunkstaatsvertrag)’으로 불리는 이 법으로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던 조약들이 모두 하나로 합쳐졌다. 즉 ARD국가조약(ARD-Staatsvertrag), ZDF국가조약(ZDF-Staatsvertrag), 방송수신료국가조약(Rundfunkgebuerenstaatsvertrag), 방송재원국가조약(Rundfunkfinanzierungsstaatsvertrag) 및 영상텍스트국가조약(Bildschirmtext-staatsvertrag)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각 주가 연방 차원에서 방송 관련 법규를 단일화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방송기술 발달에 따른 환경의 변화, 국내외적 방송 관련법의 변화 및 동서독의 통일을 반영한 새로운 방송구조를 형성하려는 공통된 이해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

⁷ Stuibler, Heinz-Werner(1998a). Medien in Deutschland Band2 Rundfunk, 1.Teil. Konstanz. UVK Medien. pp.329-332.

구체적으로 우선 이 단일법은 1990년 독일통일을 반영한 것이다. 즉 동서독 간의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36조에 의거하여 구동독의 국영방송 체제를 서독처럼 공영 체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둘째는 유럽 텔레비전 가이드라인(EG-Fernsehrichtlinie)의 준수이다. 즉 국경을 초월하는 프로그램의 전달이 일상화됨에 따라 방송과 관련된 국내 법규를 유럽연합 차원의 규정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그 외에 방송제도의 전환도 방송국가조약의 개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공영방송 체제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상업방송 허용으로 이원적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와 관련 각 주는 연방 차원에서 방송국가조약을 통해 공영채널과 상업채널에 대한 규제, 재원,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3) 서독 방송의 특성

방송의 자유를 구현할 구체적 방편인 독일 방송정책이 지향하는 원리는 다양성이다. 방송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송자유에 기반하여 지향하고 있다. 독일 헌법(기본법) 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송 자유의 의미는 방송 자체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신문 등 여타 매체의 자유와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방송자유는 매체접근의 제한과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주체집단(소유 집단)을 위한 이익추구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보편적 의견형성의 자유이자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라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단지 방송 주체의 개별적 권리를 의미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도적 차원의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방송 종사자는 자신의 사적 권리행사의 차원에서 개별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대신 사회의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차원에서만 방송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방송의 다양성은 공영 혹은 상업방송 등 방송구조에 관계없이 정책결정에 있어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독일의 방송정책에 있어서 다양성의 담보 문제는 핵심적 사항이다. 즉 방송구조를 공영이나 상업 체제로 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최대로 담보할 수 있을가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성을 기준으로 방송구조를 구분하는 모델이 정형화되었는데, 이것이 곧 내적 다원주의와 외적 다원주의 모델이다(Stuiber, Heinz-Werner, 1998a, 492-495).⁸

먼저 내적 다원주의(Innenpluralismus)는 각 채널별로 다양성을 담보하도록 추구하는 것이다. 그 배경은 가용 방송채널수가 극히 제한되어 소수채널만이 존립하는 상황에서 내용상 다원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내용상의 표현이나 전달에 있어서 이질적이고 상이한 집단의 견해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특정 견해의 독점적 지위를 허용치 않는다. 내적 다양성모델은 개개인의 매체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매체 자체 내에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대변 또는 전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 모델에 의하면 어느 특정 매체에만 노출된 수용자도 다양한 견해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의 구체적 실현여부는 무엇보다도 사전조정과 규제장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건에 상응하는 대표적 방송구조로는 공영방송을 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다른 형태의 방송구조도 내적 다원주의를 추구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외적 다원주의(Aussenpluralismus)는 독립된 다수의 채널이 서로 경쟁을 통해 총체적인 스펙트럼을 형성하면서 프로그램의 종합적 다원성을 추구한다. 보통 사적 소유 및 사경제적 경쟁을 통해 의견 다양성이 실현되도록 추구하기 때문에 다양성 보장 여부는 시장지배 관계가 크게 좌우한다.⁹

⁸ 앞의 책, pp.492-495.

⁹ Branahl, Udo(1997). Medienrecht. Eine Einfuehrung, Opladen, p.21.

따라서 이 모델은 독립된 방송채널이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소수에 의한 과도한 시장집중을 통제하는 것도 다양성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방송채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은 오히려 제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방송모델에 의하면 기존의 공영방송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상업방송이 등장한 것은 내적 다원주의에서 외적 다원주의로의 정책적 전환이다.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혼합방송 체제는 이론상 내적 다원주의와 외적 다원주의가 공존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중적 다양성보장(doppelte Vielfaltssicherung)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영방송은 자체 내에서 내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여타 상업채널과 공동으로 외적 다양성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실제로 어느 정도 충족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전혀 상이한 두 방송구조의 공존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도 아직 미지수이다.

위에서 살펴본 다원주의에 입각한 독일방송의 특성은 연방적 구조이다. 연방적 방송질서가 토착화된 데에는 몇 가지 정치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첫째는 분산적 방송질서의 추구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점령한 연합국 측은 새로운 방송 체제 정립의 제1원칙으로 과거 나치정권하에서와 같은 방송의 정치적 도구화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즉 국영방송에 대한 논의는 처음부터 배제시키는 한편, 전국 단일방송사보다는 분산적인 다수의 방송사가 공존하도록 추진했다. 그 결과 이른바 ‘1개1社’ 원칙으로 독립된 방송사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독일방송 체제의 역사적 토대는 각 지역방송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방송을 기반으로 방송제도가 뿌리를 내려 정착될 수 있는 또 다른 배경은 연방적 정치 체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각 주별로 독립적인 정치구조에 따라 방송 관련 사항도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 정부에 전권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방송채널 허가권, 감독,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은 방송사가 속한 주정부 소관사항이다. 전국채널의 경우는 각 주가 합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주체가 된다.

이와 밀접한 연관하에 있는 독일방송의 또 다른 특성으로 공영방송 체제를 들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입된 공영방송제도는 주둔한 연합국에 의한 산물이었다. 이는 국가권력 및 특정한 사회집단에 의한 방송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낮선’ 제도를 토착화시키고 유지·발전시킨 것은 독일 자신이다. 그동안 일부 민영론자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상업채널의 허가는 끝내 허용되지 않고 단일 공영 체제로 유지되었다.

이에 반해 신문은 처음부터 민영 체제로 유지되어 결국 전후 공영방송 독점시대에는 방송과 신문 간의 구조를 이원 체제로 유지함으로써 수용자에게 다양하고 균형있는 정보를 접하도록 추구했다. 이러한 방송-신문 간의 이원화정책은 상업방송의 등장에 따라 방송시장 내에서의 이원화정책으로 변화되었다. 즉 뉴미디어 등장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공영과 민영이 공존케 함으로써 방송매체 내에서 다양성을 최대한 담보토록 정책전환을 가져왔다.

그러나 방송정책의 기조는 여전히 공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공영 체제가 사회적으로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고, 정치사회적 체제도 이를 유지시키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영방송 ZDF, ARD는 전 국민의 정보매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후에 등장한 상업채널들이 정보매체보다는 오락적 내용 위주로 기여하는 역할에 한정된 것도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높이는 이유이다. 아울러 사민당(SPD)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정당이 공영 체제를 든든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도 독일 공영방송 발전에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방송을 문화의 핵심영역으로 보고 방송정책노선을 이에 맞추고 있다. 기술발달 측면을 제외하고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1980년대 상업방송의 허용은 보수당의 시장경제적 방송정책이 관철된 것에 다름 아니다.

(4) 독일 방송의 현황

독일 방송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1945년까지는 국영방송의 시기였고, 전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공영독점 시기에 해당된다. 이후 상업방송 등장은 이른바 ‘공·민영 이원 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와 현재에 이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방송은 동서독 분단으로 양 지역에 주둔한 연합국의 정치 체제 성격에 의해 상이하게 형성되었다. 즉 소련군이 주둔한 동독지역은 사회주의적 국영방송 체제로, 서독지역은 공영 체제로 새 단장을 하였다. 상업 체제가 아닌 공영 체제로의 전환은 독일의 민주사회로의 재전환을 위한 방송역할의 중요성 및 나치와 같이 방송이 특정집단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원칙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서독지역에서의 방송정책은 한마디로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및 연방적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¹⁰

ARD를 구성하는 각 방송국은 정치적 영역의 구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주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1950년에는 이들 방송사가 연합하여 ARD채널을 형성해서 전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따라서 각 공영방송사는 독립된 지역공영채널을 운영하고 전국채널 프로그램에 정해진 일정량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내보내기도 한다. ARD 이외에 1961년 개국한 전국채널 ZDF는 애초 연방정부가 설립을 주도하였다. 당시 아데나워 총리는 정부 주도로 민영방송사를 설립하려다 실패하고 대신 이를 공영방송으로 전환하여 방송을 시작한 것이다. 독일공영방송은 보통 ARD를 제1채널, ZDF는 제2채널, 그리고 각 지역 주(州) 공영채널은 3채널이라고 부른다.

독일 공영방송은 수신료와 광고 및 기타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

¹⁰ 김영욱(1997). 공민영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의 차별성과 유사성. 연구보고 97-19, 한국방송개발원. p.12.



으나, 수신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도록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광고에 의한 수입은 매우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배제시키되 동시에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정책이다. 또한 이러한 광고방송의 강력한 규제는 민영방송으로 하여금 상호 시장경쟁을 할 수 있는 생존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수신료를 결정하는 권한은 각 주정부에 속한다. 광고재원 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적정한 수신요금을 정하기 위해서 상설기구(KEF)도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1-2) 통일 전 서독 공영방송 현황

	지역공영방송사	방송권역(州)
1	서부독일방송 WDR(Westdeutscher Rundfunk)	Nordrhein-Westfalen,
2	북부독일방송 NDR(Norddeutscher Rundfunk)	Schleswig-Holstein, Niedersachsen, Hamburg
3	바이에른방송 BR(Bayerischer Rundfunk)	Bayern
4	남서부방송 SWF(Suedwestrundfunk)	Rheinland-Pfalz,
5	남부독일방송 SDR(Sueddeutscher Rundfunk)	Baden-Wuerttemberg
6	헤센방송 HR(Hessischer Rundfunk)	Hessen
7	자유베를린방송 SFB(Sender Freies Berlin)	Berlin
8	라디오브레멘 RB(Radio Bremen)	Bremen
9	자를란트방송 SR(Saarlaendischer Rundfunk)	Saarland

한편 그동안 서독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민영 체제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견해는 한동안 더욱 거세지기도 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을 간추려보면, 첫째는 정치적 영향력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공영방송의 요체는 감독규제기관의 구성에 있는 바, 공영방송의 규제기구는 정당의 지배구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사민당과 기민연합의 양대 정당이 분할 지배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둘째는 조직이 관료화되어 있고 경영상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셋째는 너무 많은 채널의 운영으로 이로 인한 수신료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즉 두 개의 전국종합채널, 10여 개의 지역공영채

널 및 다수의 전문채널에 대한 운영부담을 모두 시청자가 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서독에서 상업채널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이미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1973년 연방정부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1984년 네 개의 도시에서 케이블실험프로젝트(Kabelpilotprojekt)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기술적 문제는 물론 상업 프로그램이나 수용자의 시청경향 등에 관한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상업채널의 도입이 확정되어 1984년 RTL 및 Sat1 방송이 시작되었다. 이른바 공영채널과 상업채널의 이원적 방송시스템으로 전환되었고, 방송시장을 둘러싼 상호간 경쟁이 시작되었다.

상업채널에 대한 허가관리 및 감독기능은 공영방송과는 별도로 이루어진다. 각 주에서는 주미디어청(LMA: Landesmedienanstalten)을 설치하여 민영방송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구체적으로 민영방송사의 (재)허가, 채널 배당 및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 기구는 방송사가 방송법규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규제기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 밖에 주미디어청의 주요 임무에는 프로그램 기본노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 규정에 관한 사항, 오픈채널 운영, 채널 운영 기획 등이 포함된다.¹¹

주미디어청의 구성은 공영방송사의 감독기구인 방송위원회(Rundfunkrat)와 유사하게 각 정당을 비롯하여 방송법이 정한 사회단체에서 파견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채널 운영에 관한 협력을 위해 모든 주미디어청이 참여하는 협의체(ALM)가 구성되어 있다.

상업방송의 도입은 방송시장의 집중화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언론 산업 전반의 집중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거대 복합언론기업의 다각적 소유

¹¹ Stuibler, Heinz-Werner(1998b). Medien in Deutschland. Band 2 Rundfunk 2.Teil, UVK Medien, Konstanz, pp.834-840.



및 영향력과 연계되어 있다. 주요 방송기업으로는 베르텔스만(Bertelsmann), 스프링어(Springer) 그룹이 꼽힌다.

방송시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소유 제한방식을 실시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시청점유율 제한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방송사 투자 지분 및 채널수에 대한 규제제도는 없어지게 되었다. 시청점유율제도는 한 방송기업이 참여한 채널의 시청자점유율 합계가 30%를 넘는 경우에만 규제한다.

방송시장의 집중현상은 미디어집중조사위원회(KEK: Kommission zur Ermittlung von Konzentration im Medienwesen)에서 감독을 전담한다. 즉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전국 규모 상업채널의 시청점유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집중현상의 감시 및 제재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기구는 6명의 방송 및 경제 분야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은 판사로 임명된다. 임기는 5년으로 각 주 대표가 선발권을 갖고 있다. 아울러 각 주는 상호 공동사안에 관해 긴밀한 협조를 위해 주미디어청 대표자회의(KDLM: Konferenz der Direktoren der Landesmedienanstalten)를 설치하고, KEK의 결정을 최종 수용 혹은 거부하는 역할을 한다.

3) 서독의 신문

(1) 전후 서독 신문정책

오늘날 독일 신문질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 형성된 언론정책의 산물이다. 따라서 당시 서독 주둔 연합군의 신문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문허가정책(Lizenzpolitik)을 통해 신문발행을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구체적인 신문 발행 허가조건은 과거 나치당원의 경험이 없는 자 그리고 나치시대에 신문발행 및 언론인 경험이 없는 자를 전제조건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1949년 연합군 주둔기간 내내 지속되어 과거 독일 언론 체제

와의 철저한 단절을 시도하였다.

둘째, 연합군의 언론자유 통제이다. 주둔 연합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신문발행이 가능하다는 점, 신문담당관의 사전 사후 검열의 실시는 당시 대표적인 언론자유 규제에 해당된다.

셋째, 미국과 소련 언론정책은 근본적 차이가 있었다. 미군정이 지배하는 지역은 초당파적 자유언론을 지향하는 신문발행을 선호한 데 비해서, 소련군 점령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언론사상에 입각한 당파적 신문을 선호하였다. 전승국 간의 지배정책의 근본적 차이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서독과 동독의 분단을 낳았다. 이를 기초로 분단 기간 동안 동독과 서독의 언론정책 및 언론질서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 주게 되었다.¹²

(2) 서독 신문시장 추이

서독 신문시장은 1949년 9월 서독 정부가 수립되자 급격하게 팽창하여 종전 16개에 불과하던 신문은 무려 500여 개로 급증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신문허가제가 폐지되자, 과거 언론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던 언론기업들이 대거 신문시장에 뛰어들어 결과였다. 이로 인해 서로 치열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져 대규모로 신문이 폐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1954년에는 일간신문 수가 225개로 줄어들었다.

전후부터 통일 전까지 서독 일간신문의 추이를 살펴보면, 신문 수가 점차 감소하여 통일 직전인 1989년에는 1954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발행부수는 점증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따라서 1954년 134만 부였던 일간지 발행부수는 1980년대 이후 200만 부를 넘어 동서독통일시기까지 유지하였다. 이는 기준연도인 1954년과 비교할 때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표 1-3) 참조).

¹² Tonnemacher, Jan(1996), Kommunikationspolitik in Deutschland, Konstanz. p.26.



표 1-3> 서독 일간신문 발간 추이(1954-1989)

	발행 신문 수	1954년 기준 증감(%)	발행부수	1954년 기준 증감(%)
1954	225	100	1,340,000	100
1964	183	81	1,730,000	129
1967	158	70	1,800,000	134
1976	121	54	1,950,000	146
1981	124	55	2,040,000	152
1985	126	56	2,090,000	156
1989	119	53	2,030,000	152

출처 : Schuetz, W. J. (2012). Deutsche Tagespresse 2012. Media Perspektiven. p.571.

이러한 현상은 서독 신문시장이 소수 언론기업에 의해 집중화되는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 신문시장 집중화는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동반되어 진행되었다.

첫째는 소수 거대 신문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강화이다. 특히 5대 신문기업의 시장지배력은 1976년에 전체 신문시장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에 달했다. 가장 큰 신문기업은 악셀 스프링어 그룹(Axel-Springer Verlag)으로 총 발행부수는 565만 부에 달하며, 28.7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2위는 슈투트가르트 신문그룹(Gruppe Stuttgarter Zeitungsverlag)으로 130만 부를 발행하여 6.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다. 3위는 총 117만 부의 신문을 발행하는 베스트도이체 알게마이네 차이퉁 그룹(WAZ-Gruppe)으로 약 6%의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표 1-4 > 5대 신문기업의 시장지배력(1976년 기준)

그룹명	본사	주요 발행 신문	총 발행부수 (만 부)	시장 점유율(%)
Axel-Springer Verlag	Hamburg	Bild, Welt, B.Z, Hamburger Abendblatt, Berliner Morgenpost	565	28.74
Gruppe Stuttgarter Zeitungsverlag	Stuttgart	Stuttgarter Zeitung, Stuttgarter Nachrichten, Suedwestpresse, Rheinpfalz, Schwarzwaelder Bote	130	6.61
WAZ-Gruppe	Essen	Westdeutscher Allgemeine Zeitung, Westfaelische Rundschau, Neue Ruhr-Zeitung, Westfalenpost	117	5.96
DuMont-Schauberg	Koeln	Koelner Stadtanzeiger, Express Koeln, Express Duesseldorf	76	3.84
Sueddeutscher Verlag	Muechen	Abendzeitung Muechen, Abendzeitung Nuernberg, Sueddeutscher Zeitung,	49	2.48

출처 :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126.

둘째는 하나의 지역신문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점점 확대되었다. 경쟁 지 없이 단 한 개 신문이 발행되는 지역이 1954년 85개였는데, 1976년에는 156개로 배가되었고, 통일 직전에는 160개로 늘어났다.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1954년에는 전체 서독 국민의 8.5%가 1개 신문이 발간되는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1976년에는 32.7%, 통일 직전에는 49%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잡지시장의 집중화 현상도 일간신문과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잡지시장은 4대 출판기업이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지배하였다. 전체 잡지시장의 1/3 정도를 지배하는 1위 기업은 하인리히 바우어 그룹, 2위는 악셀 스프링어 그룹(Axel-Springer Verlag), 3위는 부르다콘체른(Burda-Konzern) 그리고 4위는 그루너-야르(Gruner+Jahr) 순이다.¹³ 이 중 악셀 스프링어 그룹은 신문 시장과 잡지시장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대 언론기업으로 꼽힌다.

¹³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127.



독일의 신문은 정보전달 및 여론형성 기능과 관련하여 이른바 ‘공적과업 (Oeffentliche Aufgabe)’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erttemberg) 주신문법(Landes Pressegesetz: LPG)은 다음과 같이 신문의 공적책무를 명시하고 있다(32조). “신문은 공적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신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뉴스를 편집, 보도 및 논평하고 비판하거나 의견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의무는 자유시장경쟁 논리에 의거하여 신문이 기능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⁴

먼저 서독의 신문시장은 전국지를 구심으로 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소수 거대 중앙지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대도시를 구심점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신문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뮌헨에서 발행되는 쥐드도이체 차이퉁(Sueddeutsche Zeitung), 프랑크푸르트의 프랑크푸르트 차이퉁(Frankfurt Allgemeine Zeitung) 등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신문이 서독의 신문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어 권위 있는 전국 단위의 신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대중신문의 발행부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대중신문은 정통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정론지와는 달리 오락적 기사 위주의 대중성을 표방하는 가판 중심의 신문이다. 서독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중신문은 빌트(Bild)로, 지역판 발행을 포함하여 전국지로서 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한다.

셋째, 신문시장의 집중화 현상이 심하다. 집중화는 단일 거대신문을 중심으로 한 현상이 아니라, 소수의 신문기업이 다수의 신문을 발행하면서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이다. 동시에 대도시보다는 지역 단위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의 경우 하나의 신문이 경쟁지 없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으로 인한 집중화 현상이 높은 편이다.

¹⁴ Tonnemacher, Jan(1996). Kommunikationspolitik in Deutschland, Konstanz. p.46.

넷째, 주간신문의 영향력이 강하다. 전국 단위의 일간신문이 빈약한 반면, 슈피겔(Spiegel), 디 차이트(Die Zeit), 슈테른(Stern), 포커스(Focus) 등 주간신문들이 발달되어 있다. 이들은 언론영역에서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특히 다양한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한 심층보도, 탐사 보도 등을 통하여 독일 저널리즘을 주도하고 있다.

2. 동독 언론의 구조

1) 동독 언론통제 시스템

사회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자유 민주주의에서의 언론의 자유와는 전혀 상이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주의 언론의 자유는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신문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고, 언론은 집단적 선전자, 선동자, 조직자로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동독 언론도 이런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가능하게 된다. 1949년 동독 최초 헌법에서는 ‘검열은 금지된다(Eine Zensur findet nicht statt)’고 명시하는가 하면, 헌법(27조)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지닌다. 이 권리는 직무상 또는 공적 관계로 인해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느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1항). 또한 “신문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는 보장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동시에 공산당의 무제한적 권리 행사와 중앙집중적 통제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은 당과 국가의 결정사항을 위에서 밑으로 전달하며, 제반 비판은 원칙적으로 불허하여 근본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



장될 수 없는 구조이다.¹⁵

이러한 언론의 자유의 제약은 곧 언론통제를 의미한다. 동독에서 언론통제의 목적은 우선 모든 반공산주의 정치 및 사상, 즉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사회 민주주의, 수정주의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동시에 생산력 및 노동생산성 증대, 자원절약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선전하려는 것이다. 동독 언론은 보도할 수 없는 절대적 금기 또는 성역이 존재하는데, 이를테면 공산당의 결정사항, 정치재판의 결과, 베를린 장벽 문제 등이 이에 속한다, 또는 어떤 정치적 사건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지침에 따라 보도할 수 있다(Puerer & Raabe, 1996, 368-369).¹⁶ 언론검열은 완벽한 통제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른바 ‘검열 없는 검열’이 이루어진다, 즉 자기검열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언론인 스스로가 자체검열을 실시하여 타율적 언론검열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실제적인 언론통제 시스템은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주축으로 작동된다. 구체적으로 매스미디어 통제는 당중앙위원회 정무국(Politbuero)이 담당하고 산하에 선전선동부가 설치되어 있다. 선전부는 매일 정치적 사안에 관한 보도지침을 담당하고, 선동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의 보도지침은 직·간접적으로 각 언론사에 전달되는데, 매스미디어에 대한 보도지침은 보통 일주일 단위로 전달된다. 지침내용은 어떤 사안에 관하여 무엇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를 전달하거나, 아예 구체적인 보도내용까지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언론이 반발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¹⁷

¹⁵ Holzweissig, Gunter(1989). Massenmedien in der DDR. Berlin. Gebr. Holzapfel. p.11.

¹⁶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p.368-369.

¹⁷ Holzweissig, Gunter(1989). Massenmedien in der DDR. Berlin. Gebr. Holzapfel. pp.13-16.

또한 중앙통제기관으로 설치된 언론청(Presseamt)은 보도 관련 또는 홍보업무를 수행한다. 언론청은 주로 공산당 정무원의 정책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주로 기자회견, 보도자료 형식을 통하여 제공하는데, 언론은 이를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언론청은 블록정당이 운영하는 신문의 보도내용이 공산당 기관신문의 보도내용과 일치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외에도 교회신문의 검열, 언론 허가업무, 신문 용지 배급 역할, 정부부처의 국가홍보 업무의 조정 등을 담당한다.¹⁸

언론통제에는 국가안전부(Ministerium fuer Staatssicherheit) 비밀정보요원의 감찰시스템도 관여한다. 이들은 각 언론사에 비공식 요원으로 상주하면서 동료 언론인들을 감찰 및 감시하고 민감한 사안의 보도는 사전에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¹⁹

제도적 차원에서 언론통제는 상기한 다양한 통제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지만, 실질적 통제의 효율성은 다른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공산당 산하 핵심 언론이 보도를 주도하고 다른 신문들은 이를 그대로 따라서 보도하는 식으로 자발적 언론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공산당 중앙기관지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및 동독 관영통신사 ADN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동독의 방송

(1) 방송의 역사적 개관

동독 라디오방송은 1945년 5월 13일 ‘베를린방송(Berliner Rundfunk)’이 최초로 전파를 타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같은 해 9월과 12월 ‘라디오 라이프치히(Radio Leipzig)’와 ‘라디오 드레스덴(Radio Dresden)’이 각각 개국하

.....

¹⁸ Holzweissig, Gunter(1999). Massenmedien in der DDR. in Wilke, Juergen(1999). Medien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p.577.

¹⁹ Holzweissig, Gunter(1989). Massenmedien in der DDR. Berlin. Gebr. Holzapfel. pp.11-18.



였다. 1946년에는 포츠담, 할레, 바이마르 등 동독 주요지역에 방송국이 신설되어 전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동독 텔레비전방송은 서독 ARD가 방송을 시작하기 4일 전인 1952년 12월 21일 DFF(Deutscher Fernsehfunk)가 시험방송을 시작하면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DFF 정규방송은 몇 년 후인 1956년 1월 2일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동독 공산당 산하 국가방송위원회는 1952년 DFF를 모든 동독 방송을 지휘하는 최상위 방송기관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또 텔레비전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률로 ‘텔레비전에 관한 법(Verordnung ueber den Fernsehrundfunk)’이 1956년 6월 1일에 제정되기도 하였다. 수상기 증가율도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즉 1953년 600대에 불과하던 것이 1956년에는 71,000대로 백배 이상 증가하였고, 1968년에는 무려 417만 대로 늘어 본격적인 TV시대가 열렸다. 동독 정부의 고민거리는 국경을 넘어오는 서독 TV 수신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를 위하여 동독 정부는 서독의 PAL방식이 아닌 프랑스의 SECAM방식을 도입하여 서독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차단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1969년에는 컬러 방송을 시작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자 하였고, 같은 해 10월 3일 DFF2 채널이 개국하여 투톱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동독 텔레비전은 특히 1970-1980년대 호네커 집권시대에 중요한 매체로 인식되었다. 1972년 텔레비전 DFF는 ‘Fernsehen der DDR’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호네커 수상은 동독 텔레비전이 자국 국민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이를 통해 시청시장에서 서독 텔레비전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시청률 제고를 위해서 시청자들로부터 외면 받았던 뉴스정보 프로그램보다 오락 프로그램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편성전략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라임타임대인 19시부터 21시30분 사이에 시사뉴스 프로그램보다 오락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권은 물론 서독, 프랑스, 이태리 등 서방국가에서 수입한 영화를 편성하는가 하면, 쇼 오락 프로그램을 대폭 편성하였다. 재미있는 현상은 이러한 편성정책으로 인해 평소 동독 방송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서독 국민들이 이들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했다는 점이다.

(2) 방송통제시스템

동독 방송은 동베를린을 중심으로 중앙통제(Zentrale Steuerung) 시스템을 견지하였는데, 방송영역의 최고 통제기관은 공산당 중앙위원회(Zentralkomitee) 산하의 선전선동부였다. 또 실무영역에서의 통제는 동독정무국(Politbuero) 산하 라디오국가위원회와 텔레비전국가위원회로 구분되어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이원화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동독 방송은 자유로운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의 기능이 아니라, 국가 및 당의 선전선동 매체로 기능하도록 통제되었다.

일상적 통제 방법으로는 선전선동부에서 매주 목요일 언론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신문, 방송 분야의 편집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주간 편집 가이드라인이 제시 및 하달되었다. 편집회의 결정사항은 일주일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 보도지침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보도지침은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넘어 특정 사건보도의 구체적 지시사항이 되기도 하였다.²⁰

또 다른 통제 메커니즘은 언론인 자격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예비 언론인은 교육을 통해 100퍼센트 핵심 당원으로 육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독에서 언론인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첫째, 언론인 전문 교육기관 졸업자, 둘째, 라이프치히 칼 막스(Leipzig Karl Max) 대학 언론

²⁰ Stuibler, Heinz-Werner(1998a). Medien in Deutschland Band2 Rundfunk, 1.Teil. Konstanz. UVK Medien. p.247.



저널리즘학과 졸업자, 셋째, 레닌의 사회주의 언론 역할에 대한 교육 이수자. 아울러 언론인 교육과정에는 사회과학, 언론학, 언어학(러시아어 등), 기타 정치학, 경제학, 문화학 등을 이수하도록 했다.

그 외에 관영 뉴스통신사 ADN을 통한 정보통제도 중요한 통제 메커니즘이었다. ADN을 동독 총리실 산하 언론청(Presseamt)에 편제시켜 전 세계 통신사 뉴스를 검열하거나 통제한 후 각 언론사에 전달·배포하였다. 검열에서는 주로 당파성 기준으로 뉴스 정보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통신사 ADN에 의한 통제는 총체적으로 뉴스 흐름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천적으로 보도금지 조치하는 역할을 하였다.

(3) 동독 방송 현황

분단시기 동독 방송 현황은 텔레비전채널과 라디오채널이 두 축을 형성하였다. 먼저 동독 제1텔레비전 DFF1은 보통 8시부터 13시까지 그리고 15시부터 24시까지 방송하였다. 오전에는 주로 학교방송 및 재방송으로 편성하고, 오후에는 뉴스정보, 매거진, 오락, 영화 등 종합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다. 이에 비해 제2텔레비전 DFF2는 보통 오후 시간대인 17시부터 24시까지 방송하였다. 방송내용은 주로 음악, 영화, 오락 등 대중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이 중에서 영화 프로그램은 인기가 낮아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았는데, 그 이유는 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내용에다, 값싼 러시아영화 위주로 편성하는 사례가 대다수 차지하였기 때문이다.²¹

.....

²¹ Holzweissig, Gunter(1989). Massenmedien in der DDR. Berlin. Gebr. Holzapfel. pp.114-115.

표 1-5) 주요 동독 라디오채널 현황(1989년)

채널명	개국	방송내용	기타
Radio DDR I	1959	시사정보 및 오락 프로그램	종일방송
Radio DDR II	1964	문화 및 교육방송	13:00-4:00
Berliner Rundfunk	1945	뉴스, 시사정보	종일방송
Stimme der DDR (Deutschlandsender)	1971	해외 독일어방송	종일방송
Radio Berlin International	1959	외국어 대외방송	
Jugendradio DT64	1987	청소년 프로그램	4:00-24:00

출처 : Holzweissig, Gunter(1989). Massenmedien in der DDR. Berlin, Gebr. Holzapfel. pp.103-106 재구성.

한편 라디오도 텔레비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주요 채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Radio DDR: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였는데, Radio DDR I은 시사정보 프로그램 및 오락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하고, 1969년부터 하루 24시간 동안 중파 및 단파를 통해 방송하였다. Radio DDR II는 교육 및 문화채널로 차별화하여 매일 13시부터 익일 4시까지 15시간 동안 UKW를 통해 방송하였다. Radio DDR은 전국에 스튜디오를 둔 네트워크 방송시스템으로 지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휴가철이나 박람회 기간에는 특별 방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즉 5월부터 9월 말까지 로스토크(Rostock) 지역 채널을 통해 동독 라디오 휴가방송(Radio-DDR-Ferienwelle)을 실시하는가 하면, Leipzig 박람회 기간에는 7시부터 20시까지 박람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동독 메세방송(DDR-Messewelle)을 내보냈다.
2. Berliner Rundfunk: 베를린방송은 동독 수도를 대표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뉴스, 매거진 중파 및 초단파방송을 24시간 내보냈다. 특히 30분 간격으로 뉴스방송을 실시하였다.



3. Stimme der DDR: 동독의 소리(Stimme der DDR) 방송은 동독 이외에 거주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채널이다. 이 방송은 이전의 도이칠란트젠더(Deutschlandsender)를 개칭한 것이자, 베를린방송이 운영하던 'Berliner Welle'의 인수 그리고 'Radio Berlin International'의 유럽서비스 기능을 대신 수행하였다. 하루 24시간 동독 국내외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4. Radio Berlin International: 라디오 베를린 인터내셔널은 동독을 대표하는 대외방송으로 서독의 대외방송인 Deutsche Welle와 경쟁관계를 형성하였다. 1959년부터 유럽,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11개 언어로 방송을 내보냈다.
5. Jugendradio DT64: 유겐트라디오(Jugendradio) DT64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송으로 1987년 12월에 개국하여 하루 20시간 방송하였다. 원래 베를린방송(Berliner Rundfunk)에 속해 있던 것을 독립시킨 것으로, 'Jugendradio DT64'라는 채널명은 1964년 개최된 청소년들의 독일 집회(Deutschlandtreffen)를 상징하는 것이다. 서구의 팝뮤직 소개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는데, 주로 서독 베를린방송(SFB) 및 RIAS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모방하였다. 동시에 동독 다른 미디어에서는 터부시되는 사회문제 등을 청소년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표출하여 인기를 끌었다.

동독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관한 규제는 이른바 '자본주의 음악'의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음악을 60% 내보내고, 나머지 40%를 자본주의 음악으로 편성토록 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규제는 공산당 이데올로기 전파와 관련되는 한편, 서구음악 편성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와 관련된다.²²

²² Holzweissig, Gunter(1989). Massenmedien in der DDR. Berlin. Gebr. Holzapfel. p.106.

동독 방송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언론이념에 따라 당과 국가의 정책을 하향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이후 서독 방송과 경쟁관계를 의식해 시청자 취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는 서독 방송을 선호하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는데, 필요한 재능 있는 예술가가 절대 부족하여 서방국가에서 초청해야 하는 것이 문제였다.

시사뉴스 프로그램도 서독 방송과의 경쟁관계를 의식하는 편성정책이 핵심이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Aktuelle Kamera(시사카메라)와 Schwarze Kanal(검은 채널)이다. Aktuelle Kamera는 1952년 첫 방송을 시작한 핵심 뉴스정보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고 서독 방송 프로그램과 경쟁하는 편성전략을 구사하였다. Schwarzen Kanal 역시 시사정보 프로그램으로 1960년 시작하여 서독문제를 대상으로 다루는 공격적인 정치매거진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동독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의 외면 속에 서독 텔레비전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태를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3) 동독의 신문

전후 동독 신문제도는 서독지역에 비해 이른 1945에서 1946년 사이에 갖추어졌다. 동독에 주둔한 소련점령군은 신문발행을 전면 금지시키고 허가제를 실시하였다. 소련주둔군은 정당이나 대중조직단체에게만 신문발행을 허가하고, 개인에게는 신문소유 및 발행을 금지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동독지역에서는 독일 공산당(KPD/SED) 및 대중조직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신문발행 허가를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1946년 4월 23일에 동독 최대 전국일간신문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가 창간되었다. 소련점령군의 언론정책 기조는 권력을 이양받은 동독 정권에서도 그



대로 계승되어 허가제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때까지 이어졌다.²³

동독 신문통제시스템은 당중앙위원회를 기점으로 두 개의 라인을 거쳐 작동되었다. 하나는 당의 결정사항을 직접 당 기관지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신문에 전달하고 이를 다시 관영통신사 ADN에 보도지침으로 하달하여 지방신문을 비롯한 제반 신문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통로는 정무국 산하 언론청(Presseamt)에서 관영통신사 ADN에 당의 결정사항을 지시내리고, ADN은 다시 하위 신문들에게 보도지침 또는 당 지침을 하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신문통제시스템에서는 중앙당 기관지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신문과 관영통신사 ADN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외에도 신문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검열기구가 운영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기검열의 강화효과를 기대하였는데, 문제발생 시 편집국장이 책임을 지고 강제 퇴직하는 시스템으로 통제하였다. 또한 우정성(Deutsche Post)은 관영 언론통제기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신문유통판매의 독점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우정성에 등록된 정기간행물만 판매하도록 허용하였다.²⁴

한편 동독 신문시장은 각 지역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동독은 기존의 주(州) 단위의 행정구역을 폐지하고, 대신 전국을 14개의 지역 단위 베찌르크(Bezirk)로 재획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산당 지부조직이 만들어졌고, 각 지역 단위로 공산당이 발간하는 일간신문이 창간되었다. 이로써 동독 일간신문시장은 각 베찌르크 단위로 공산당 기관지 역할을 하는 14개 지역신문이 주축이 되는 구조로 형성되었다. 이 지역신문들은 보통 'SED 베찌르크신문(SED-Bezirkzeitungen)'으로 불리는데, 이들은 관내 소구역 단위별로

.....
²³ Puerer, H. & Raabe, J. (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372.

²⁴ Holzweissig, Gunter(1989). Massenmedien in der DDR. Berlin. Gebr. Holzapfel. p.18.

10개 이상의 지방판 신문을 발행하면서 구독시장에서 독점적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동독 신문발간 현황을 살펴보면 1988년 기준으로 동독지역에는 1,812개의 정기간행물이 발행되었다. 이를 신문 유형별로 세분하면, 일간신문 39개(총 발행부수 970만 부), 주간 및 월간신문 30개(950만 부), 공산당 직능단체신문 667개(200만 부), 잡지 508개(214만 부), 중앙관보 176개, 구역신문 4개, 지역관보 354개, 교회 및 종교단체 발간 주간신문 및 잡지 34개(38만 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⁵

이 중에서 당 중앙 일간신문 노이에스 도이칠란트는 발행부수가 1,100만 부에 달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신문이다. 자유독일청소년연맹(FDJ: Der Freie Deutsche Jugend)에서 발간하는 용에 벨트(Junge Welt)도 약 1,400만 부에 육박하는 발행부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공산당 산하 지역신문들은 발행부수가 각각 약 20만 부에서 70만 부에 육박하여 수만 부 정도에 그치는 다른 정당 기관지보다 입지가 확고하다(〈표 1-6〉 참조).

²⁵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374.



표 1-6 > 1988-1989년 동독 일간신문 현황

발행 주체	신문명	유통지역	지역판 발행수	발행부수 (천부)
SED	Neues Deutschland	동독전역	-	1,100
	Berliner Zeitung	동독전역	-	425
	Ostsee-Zeitung	Rostock	11	292
	Schweriner Volkszeitung	Schwerin	11	201
	Freie Erde	Neubrandenburg	14	202
	Maerkische Volksstimme	Potsdam	14	348
	Neuer Tag	Frankfurt Oder	11	211
	Lausitzer Rundschau	Cottbus	15	291
	Volksstimme	Magdeburg	20	451
	Freiheit	Halle	23	585
	Saechsische Zeitung	Dresden	20	566
	Leipziger Volkszeitung	Leipzig	13	484
	Freie Presse	Karl-Marx-Stadt	23	661
	Das Volk	Erfurt	15	401
	Volkswacht	Gera	13	238
	Freies Wort	Suhl	8	178
CDU	Neue Zeit	중앙기관지	-	113
	Die Union	Dresden/Leipzig/ Karl-Marx-Stadt	-	63
	Der Neue Weg	Halle/Magdeburg	-	37
LDPD	Der Morgen	중앙기관지	-	62
	Thueringische Landeszeitung	Erfurt/Gera/Suhl	-	68
	Saechsisches Tagesblatt	Dresden/Leipzig/ Karl-Marx-Stadt	-	65
NDPD	National-Zeitung	중앙기관지	-	56
	Thueringer Neueste Nachrichten	Erfurt/Gera/Suhl	-	32
	Saechsische Neueste Nachrichten	Dresden/ Karl-Marx-Stadt	-	29
기타	Junge Welt	FDJ 기관지	-	1,381
	Tribuene	FDGB 기관지	-	414
	BZ am Abend	석간신문	-	204

출처 :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377 ; Noelle-Neumann, E. & Schultz, W. & Wilke, J.(994). Publizistik
Massenkommunikation. Fischer Taschenbuch Verlag. p.225 참조 재구성.

이상에서 살펴본 동독 신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SED 공산당 소유 국영신문이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즉 전국 지부터 지역신문까지 포괄하여 발행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되도록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자유롭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국가나 정부의 정책적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정립되었다.

둘째, 개인이 아닌 기관 및 단체가 신문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시스템이다. 신문은 크게 세 그룹, SED신문, 블록정당신문, 직능단체신문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자유 민주국가인 서독이 개인 소유의 신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공산주의 국가인 동독은 공적 기관이나 단체만이 신문을 발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셋째, 전국지보다 광역 단위의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단위의 일간신문은 노이에스 도이칠란트를 비롯하여 두서너 개에 불과하다. 대신 각 지역 단위로 발행하는 지역신문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공산당(SED)과 블록정당이 발행하는 신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광역 지역신문은 읍면 단위에서 다수의 지방관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14개 지역신문 중 'Freies Wort'를 제외하면 모두 10여 개 이상의 지방관을 발행하였는데, 특히 'Freiheit'와 'Freie Presse'는 무려 23개의 지방관을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동독 공산당은 전국적으로 작은 소구역까지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동독은 높은 발행부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당시 동독 인구는 약 1,700만 명에 달했는데, 일간신문 발행부수는 970여 만 부로 인구 두 명당 한 부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서독이 세 명당 한 부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던 것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이다.

3. 동서독의 언론교류

언론은 당대 사회를 반영하는 살아 있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동서독 분단 상황에서 양국의 언론은 정치적 분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소통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였다. 늘 일관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전반적 관점에서 언론을 살펴보는 것은 단지 통일 과도기에 한정하여 언론의 기능을 바라보는 통상적 시각에 비해서 양국의 언론교류 및 통일에 기여한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준다.

1) 언론교류의 흐름: 냉전에서 화해로

분단기 동서독 언론관계는 1960년대까지는 냉전기 그리고 1970년대 이후는 화해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적대적 관계였던 분단 초창기 양국 방송은 상호 치열한 전파전쟁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당시 동독 방송정책의 핵심은 동독 국민들의 서독 방송 수신을 차단하는 것과, 서독 방송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 동독 국민들의 서독 방송 수신은 처벌대상이 아니었지만, 비밀리에 수신해야 했다. 동독 정부는 텔레비전 수신 시스템을 서독(PAL)과 다른 SECAM 방식으로 정하여 서독에서 넘어오는 방송수신을 방해하려 하였다. 이를 통해서 동독 정부는 자국 방송이 서독 방송보다 시청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동독 주민 90%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독 방송을 수신하였다.²⁶

이와 관련 동독 방송의 편성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
²⁶ Holzweissig, Gunter(1989). Massenmedien in der DDR. Berlin. Gebr. Holzapfel. pp.62-72.

동독 TV 프로그램을 서독 TV에 맞대응하여 편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주요 사건에 관한 정보를 자국 TV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경주하였다. 둘째는 동독의 정치 관련 프로그램을 서독 프로그램보다 더 주목을 끌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표적 프로그램은 Aktuelle Kamera(시사카메라)를 들 수 있다. 이 시사정보 프로그램은 동독 국민들을 보호하고 서독 방송 프로그램과 경쟁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또한 Schwarze Kanal(검은 채널)이라는 프로그램은 서독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정치매거진이었다. 이를 통해서 서독에서의 직장해고, 실업자, 외국인 노동자 실태, 노동자 권리침해 문제 등 인권침해 실상들을 비판하는 지속적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동독 정부의 이러한 방송정책적 목표는 첫째, 동독 TV로 하여금 서독 TV 침투에 대한 방어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둘째, 동독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회적 불만, 동독탈출 분위기 등을 잠재우도록 하려는 속셈이었다.²⁷

한편 동독은 분단 이후 서독 및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 선전방송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1947년에 서독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Deutschlandsender’가 방송을 시작했으며, 이어서 1959년에는 해외방송 ‘Radio Berlin International’이 개국되었다. 또한 1956년에는 서독 정부가 독일 공산당(KPD)을 금지시키자, 막테부르크(Magdeburg)에 서독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방송 ‘Freiheitssender 904’를 신설하였다. 이 방송은 주로 서독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프로그램으로 1971년 9월까지 15년 동안 지속하였다.

한편 분단시절 동독 언론인은 별도의 허가 없이 서독지역과 서베를린을 방문하여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동독에 체류하는 서독 언론인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취재가 허용되었고, 다양한 방

²⁷ 앞의 책, pp.62-67.



식으로 취재활동을 통제받았다. 동독 정권은 동서독 간의 독일문제에 대한 언론보도에 매우 민감했다. 그 이유는 1949년 동독 정권 수립 이후 서방국가들로부터 자신들이 국제법적으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동독은 서독을 외국으로 인식했으나, 서독은 분단 후에도 단일 국가로서 하나의 독일을 추구하고 통일을 지향했다. 따라서 동서독 간의 사안들을 외국문제 차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반면 동독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활동하는 서독 언론인을 다른 외국 특파원과 동등하게 취급했다.

동독 정권은 자국민들이 서독 언론을 통해 걸러지지 않은 ‘조작된’ 정보를 접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서독 언론에 대한 규제를 심하게 하였다. 특히 국경을 넘어 수신이 자유로운 서독 방송보도에 매우 민감했다. 동독 당국이 유독 서독 방송의 취재보도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²⁸ 서독 방송법상 언론은 동독을 포함하여 독일 전체의 실상을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동독 관련 정보를 서독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뿐 아니라, 동시에 동독 시청자를 대상으로 보도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동독 방송이 엄격한 통제를 받아 보도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동독 시청자들은 서독 방송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동독 주재 서독 방송 특파원들은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특파원들은 늘 정보를 제공한 익명의 동독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고, 동독 당국으로부터 통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2) 상주 특파원제도

독일 분단 당시 동독과 서독 모두 상대국에서의 언론활동은 1972년 12월 21일 체결된 이른바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²⁹을 통해서 허용되었

²⁸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I Presse, Konstanz. UVK Medien. pp.393-394.

²⁹ 기본조약의 원래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관계에 관한 기본조약(Vertrag ueber

다. 언론 관련 합의사항은 1972년 11월 8일 양국 간 편지교환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핵심내용은 양국 언론인들의 상대국에서의 취재보도 활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독 정부는 서독 언론인들의 자국 내 취재 및 활동을 현행법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기본조약은 양국에서의 언론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갖추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서독 언론인들은 상대국에 상주하면서 합법적인 취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89년까지 약 20여 명의 서독 특파원들이 동독 동베를린에 상주하였고, 반대로 서독지역에는 여섯 명의 동독 언론인들이 상주하였다. 서독 특파원이 동독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동베를린 체류허가 및 기자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동독 법률에 따른 인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기자증 발급은 동독 외무성 산하 언론청이 담당하였다. 1972년 이후부터 서독 언론인들은 동독 정무원 산하 언론청이 담당하는 대신, 외무성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서독 특파원은 원칙상 1년 간 유효한 기자증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았다. 1976년부터는 가족을 동반하여 함께 출입국 할 수 있었다. 아울러 특파원들은 외교관 차량과 같이 별도의 자동차번호를 부여받는가 하면, 카메라기자 등 취재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서독에서 데려오거나 동독인을 고용할 수도 있었다. 상주 특파원과는 달리 일정기간 특별취재를 위한 ‘출장 특파원(Reisekorrespondenten)’에 대해서는 정보국의 심의를 거쳐 취재허가 유무를 결정하는가 하면, 정식 기자증(Presseausweis) 대신, 허가사항을 명시한 이른바 ‘프레스카드(Pressekarten)’를 발급해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동독에 상주하는 서독 특파원들은 동독 법률에 의거하여 자유로운 취재나 보도가 크게 제약되었는데, 1973년 제정된 ‘특파원규정(Korresponden-

.....
die Grundlagen der Beziehun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이다.



tenverordnung)’은 서독 언론인 활동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동독 외무성 언론관계부를 통해 특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통제 역할을 하였다. 이를테면 국가 및 공공기관이나 주요기구에 대한 취재의 경우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주요인사에 대한 인터뷰 역시 별도의 허가를 거쳐야 가능했다. 그리고 동베를린에 거주하는 외국 특파원들이 동독 타 지역을 여행할 경우 언론관계부에 신고하도록 했다.³⁰

한편 특파원들에 대한 통제는 1979년 새로운 법규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특파원들의 활동에 대한 사전허가제도가 기존 국가 및 공공기관을 넘어 모든 사회단체나 연구기관에 관한 취재 또는 인터뷰까지 확대되었다. 나아가 특파원들이 동베를린 떠나 타 동독지역을 취재할 경우, 적어도 출발 24시간 전까지 언론관계부에 알리도록 했다. 이러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여행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서독 언론이 교회단체 및 작가, 예술가 등 1980년대 동독 정권에 대한 반체제 지식인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방지할 경우 공산 동독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언론정책으로 풀이된다.

만약 동독 당국이 제정한 언론활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독 특파원들에게는 몇 단계의 대응 및 제재조치가 내려지곤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³¹

- 경고(Verwarnung): 이는 경미한 법적 위반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 가장 낮은 제재이다.
- 언론홍보활동: 서독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동독언론기관을 통한 비판적 보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다.
- 기자회견 참여 금지: 주요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 시 해당 언론사를

³⁰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I Presse, Konstanz. UVK Medien. pp.391-395.

³¹ 앞의 책, p.397.

- 배제시키는 것으로 주로 1960년대에 사용되었던 통제방식이었다.
- 사전검열(Vorzensur): 이는 방송 및 보도 전 언론활동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1978년 서독 공영방송 ARD 특파원이 동독 작가와의 인터뷰 녹화를 금지시킨 조치가 이에 해당된다.
 - 추방(Ausweisung): 특파원들이 동독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조치이다. 이에 해당되어 추방된 사례는 서독 시사주간지 슈피겔(Spiegel: 1975년), 공영방송 ARD(1976년), 공영방송 ZDF(1979년), 시사주간지 슈테른(Stern: 1983년) 등이다.
 - 사무실 폐쇄: 이는 가장 강력한 규제조치로, 1978년 슈피겔이 강제입양 사건에 대한 비판적 보도로 인해 해당 사무실이 폐쇄되는 불행한 사건을 겪었다. 동독 당국은 슈피겔 특파원이 내정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강력한 제재를 내린 것이다.

이러한 서독 특파원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 분위기는 1987년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의 서독 방문 및 동서독 양국 간의 우호관계 합의에 따라 완화되었다. 나아가 호네커 수상 후임으로 선출된 모드로우(Modrow) 정부가 들어선 1989년 11월말부터 새로운 법규가 만들어져 특파원에 관한 통제가 크게 완화되었다. 나아가 1990년 1월 9일부터는 외국 특파원에 대한 규제조치 및 취재 허가 관련 규정이 모두 사라졌으며, 1990년 6월 1일부터는 서독 언론인에 대한 허가제도가 폐지되어 동독 취재가 좀 더 자유로워졌다.

서독 특파원들의 취재활동은 엄격하게 제한을 받았으나, 주로 다음과 같은 정보원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동독 관련 보도를 하였다.³²

첫째, 동독의 언론보도이다. 동독의 언론들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지만, 동독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주요 정보원 역할을 하였다.

둘째, 외무성 언론관계부이다. 특파원들의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파트너는

³² 앞의 책, p.395.



동독 외무성의 언론관계부가 전담하였다.

셋째, 동독 내 지인 및 친인척이다. 서독 특파원들은 동독에 거주하는 지인 및 친인척을 통해 동독인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넷째, 거리 즉석 인터뷰이다. 동독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는 당시 미디어에게 터부시되었던 통제영역을 깨뜨리는 유용한 방법이었다.

3) 동서독 방송 개방

동독에서 서독 방송의 수신은 가능했지만,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 대한 접근은 통제되었다. 라디오방송의 경우 동독 한가운데 위치한 베를린에서 송출하는 방송사 및 동독 국경에 가까이 위치한 방송이 동독에서 손쉽게 청취가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동베를린에서는 베를린 주둔 미군이 운영하는 RIAS와 공영방송 자유베를린방송(SFB)이 동독가정에서 수신되었다. 그리고 북독일방송(NDR), 헤센방송(HR), 바이에른(BR)도 동독과 가까운 지리적 환경으로 동독 국민들이 많이 시청하는 방송이었다. 그 외에 베를린에서 송신하는 BBC 독일어방송도 분단시기 약 300만 명의 동독 수신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1980년대 초부터 동독은 지역 공동안테나를 설치하여 서독 방송 수신을 암묵적으로 허용하였고, 1986년 2월 28일에는 아예 법률제정을 통해 공동안테나 설치 및 서독 방송 수신 조건을 완화시켰다.

동독에서 서독 방송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동독 국민들의 서독 방송에 대한 높은 신뢰성이다. 분단기 서독 방송은 사실상 공영방송 독점 체제였는데, 공영방송은 엄격한 잣대로 정부나 정치사회 문제 등에 관해 정확하고 비판적인 보도로 서독 국민들에게 매우 신뢰도가 높은 방송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동독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성향으로 동독인들이 선호하였는데, 이는 정치, 경제 등 자국 체제를 일방적으로 선전·옹호하는 동독 방송과 좋은 대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스투이버(Stuiber)는 서독 방송의 역할을 이렇게 평가하였

다. “동독에서의 관심 사안, 주요뉴스, 자신들에 관련된 보도는 주로 서독 TV를 통해서 접했다. 서독 공영채널 ARD, ZDF 그리고 후에 신설된 상업채널은 비록 서독 방송이지만 동독을 위해서 제4권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³³ 아울러 서독 방송은 동독사회의 ‘대안언론’ 또는 ‘공론장(Gegenöffentlichkeit)’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서독 방송은 ‘거실의 적대계급(Klassenfeind im Wohnzimmer)’으로 불리기도 했다.

둘째는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음악 프로그램은 동독 수용자들의 취향에 부합되는 것으로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 공산당이 정보를 독점하여 전달하는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서독 미디어에 대한 동독인들의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서독 국민들의 동독 언론에 대한 인거나 관심은 전반적으로 적었다. 다만 특정 분야, 특히 스포츠나 문화 프로그램, 영화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기가 많았다.

제2절 통일독일의 언론개혁과 구조변동

1. 통일과정의 동독 언론변화

1) 과도기 동독 언론정책 및 변화

동서독 통일과도기의 언론구조 및 정책변화는 정치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와 관련 동독 붕괴로 인한 독일통일의 전조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대내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는 이미 이전부터 위기상황이 지속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지식인 및 예술가를 중심으로 한 반체제 집단의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동독 정권은 해직, 구속, 추방 조치 등을 통해 탄압했으나 근본적으로 이들의 행동을

³³ Stuibler, Heinz-Werner(1998a). Medien in Deutschland Band2 Rundfunk, 1.Teil. Konstanz. UVK Medien. p.261.



차단하거나 뿌리 뽑지는 못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 고르바초프 정권의 개방정책에 따른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내외적 환경변화는 독일통일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요구는 1989년 가을 시작된 동독 붕괴 과정에서의 핵심적 요구 중의 하나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50여만 명이 모인 1989년 11월 4일 동베를린 시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사항이 제시되었다.³⁴

첫째, 1948년 유엔 인권선언 19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어떠한 제약도 없이, 또 어떤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디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매스미디어는 국가로부터 통제나 억압 없이 시민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회적 제도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차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언론법 제정 및 인적 쇄신을 낳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사실 동독 헌법에서는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였지만, 개인이나 언론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1989년 동독 국민들의 민주화운동은 40여 년 간 공산당 독재 권력의 핵심 도구로 기능해 온 언론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결국 호네커 동독 수상이 물러나고 과도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독 언론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선 수십만 명이 운집하곤 했던 이른바 ‘월요데모’에 관한 뉴스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³⁴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412.

어서 언론의 자유(Meinungsfreiheit) 보장에 대한 요구가 지식인, 예술가 등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동독 정부는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일단 ‘선전선동부’를 폐지하는 대신, ‘정보미디어정책부(Abteilung fuer Informationswesen und Medienpolitik)’를 신설하면서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1989년 12월부터 1990년 4월까지 약 5개월 간 집권한 모드로우(Modrow) 정부의 주요 언론 관련 개혁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집권 공산당은 신문·방송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포기하는 한편, 대다수 공산당 소유 신문 및 잡지에서 손을 떼기로 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주요 언론사 책임자들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였다. 또 외국 특파원들에 대한 제반 통제조치를 없애고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취재 및 보도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였다. 법제 차원에서는 언론법 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언론법안, 즉 미디어결정(Medienbeschluss)을 제정하는가 하면, 자유민주적 언론시스템으로 전환을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 모든 정당들로 하여금 제반 언론활동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도록 했다. 한편 서독 기업들이 동독 신문에 광고를 게재토록 허용하는가 하면, 서독 신문 및 잡지의 동독지역 판매를 허용하였다. 그동안 실시되어 왔던 신문에 대한 재정지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독 신문의 판매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수 신문들이 폐간 위기에 직면하는 현상도 벌어졌다.

한편 드 메지에르 정부(1990.4.-1990.10.)에서는 좀 더 진일보한 언론정책들이 이어졌다.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미디어정책부를 신설하여 방송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1990년 6월부터 미디어정책부는 방송전환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같은 해 9월 13일 동 법안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방송전환법은 동서독 간 통일조약 체결(1990년 8월 31일)로 인해 효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폐지되었다. 왜냐하면 통일조약 36조에 따르면, 방송은 늦어도 1991년 말까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법적인 공공기관(Einrichtung)으로 전환토록



하였고, 방송전환에 관한 권한도 각 주 소관사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디어법 제정을 통해서 자유롭고 다양한 언론질서를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1990년 5월 고트프리트 뮐러 장관은 '신문유통에 관한 법(Verordnung ueber den Vertrieb von Presseerzeugnissen)'을 만들어 서독 거대 언론기업에 의한 신문 유통시장의 독점 및 지배를 차단하고자 했다. 나아가 13명으로 구성된 '신문과 미디어위원회'는 '미디어법제정위원회 계획안(Entwurfe der Mediengesetzgebungskommission)'을 제시하는 한편, 미디어감독위원회와 함께 '미디어결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토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추진 중이던 미디어법 역시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으로 편입토록 한 통일조약의 발효로 인해 빛을 보지는 못했다. 대신 통일 이후 동독 5개 주는 각각 주신문법(Landespressegesetz)과 주미디어법(Landesmediengesetz)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드 메지에르 정부는 1990년 6월, 정보통제의 핵심이었던 동독 국영 뉴스통신사 ADN(Allgemeine Deutsche Nachrichtendienst)을 제한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ADN은 이듬해 독일신탁청에 의해 서독 통신사 DDP에 매각되었다.

한편 통일과도기 동독 정부에 의해 진행된 언론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독 미디어법을 새로 제정하기 위해 모드로우 정부는 미디어법제정위원회(Mediengesetzgebungskommission)를 1989년 12월 설치하였다. 요아힘 호이징어(Joachim Heusinger)를 위원장으로 한 동 위원회는 주무부서의 대표 외에 '원탁회의' 대표, 정당 및 사회단체, 교회 및 언론기관의 대표, 전문가 등 총 60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집단이 참여하는 이른바 '미디어원탁회의(Runder Medientisch)' 형식이었다.

언론법 제정과 관련하여 미디어법제정위원회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³⁵

첫째, 기본권의 보장 및 정보의 자유를 보장한다.

둘째, 정부 및 국가로부터 미디어의 독립을 보장한다.

셋째, 국민들의 정보, 문화 및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론에 대해 공적 책무를 부여한다.

넷째, 미디어 분야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예방토록 한다.

이러한 원칙은 무엇보다도 구미디어시스템을 개혁하고 동독 미디어질서를 유럽 미디어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어 전제된 것이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미디어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참여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도출되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신문방송을 아우르는 단일 법안으로 미디어법을 제정할 것인지, 혹은 신문법과 방송법을 따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대립이 심했다.

결국 제한된 활동기간으로 인해 위원회는 법제정 절차를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첫째 단계는 이른바 ‘미디어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디어결정’은 잠정적 미디어법으로 최종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동독미디어법을 대행토록 하였다. 나아가 둘째 단계는 본연의 미디어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 단계는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된 동서독통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또한 이미 제정된 ‘방송전환법(Rundfunkueberleitungsgesetz)’ 역시 통일조약 36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동독지역의 통일된 신문법과 방송법도 무용지물이 되었다. 왜냐하면 차후 동독지역은 서독법에 따라 각 주 단위로 법률을 제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으로 통일 전 전환시기의 동독 언론 관련 중요한 법률은 ‘미디어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에 관한 법률적 기능을 수행하는 ‘미디어결정’은 주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³⁵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p.412-413.



있다. 미디어결정은 총 1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⁶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2조.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침해하는 제반 행위는 금지된다. 전쟁을 종용하거나 폭력조장 및 종교나 인종, 민족을 모독하고, 군사적, 파시스트적 보복, 또는 반인류적인 선동을 위해 대중 미디어를 악용하는 등의 제반 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 기본권의 행사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4조. 대중 미디어를 통해서 진실하고 다양하며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5조. 모든 검열은 금지된다.

제6조. 언론은 보도과정에서 개인의 인권 및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고, 내용과 출처를 확인하며,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 보도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 언론인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주제나 과업에 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견해를 공적으로 대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취재원의 비익권을 보호하고 저작권을 보호한다.

제8조. 국가 공공기관, 협동조합, 정치 및 사회조직은 정보공개 의무를 지며, 이를 통해 언론인의 정보권을 강화토록 한다.

제9조. 언론은 모든 사회집단과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보도해야 한다. 언론은 자유로이 의견의 다양성을 공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개개인이나 법인은 신문이나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을 발행할 권리를 갖는다. 신문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대신 등록제를 실시한다.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쇄시설 및 신문용지 확보를 위한 공적 기금을 설치한다.

.....
³⁶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413.

제10조. 동독 우정성은 국내에서 인쇄된 인쇄물이 500부 이상일 경우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배달할 의무가 있다. 신문발행인은 독자적 유통망을 통해서 인쇄물을 유통할 수 있다.

제11조. 미래의 공영방송으로서 TV, 라디오 및 뉴스통신사 ADN은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기타 제반 방송조직도 독립성을 보장한다. 아울러 외국 기업의 지분투자의 경우, 허가의무제도를 통해서 동독 미디어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다.

제13조. 언론인 및 예술 분야 종사자는 자신들의 지위 및 작업에 관한 규약의 공동참여권을 보장한다. 언론은 편집방침 및 종사자의 지위 등과 관련 편집규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미디어결정의 주요내용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내용,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또한 대중 미디어의 의무에 대한 규정, 신문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독 언론을 민주적이고 다원적 시스템으로 새로이 구축하려 하였다. 따라서 미디어결정은 모든 정치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면서 기존의 동독 미디어시스템을 탈중앙집중화시키는 목표를 지향하였다. 다만 미디어결정에는 반독점 관련 규정, 이를테면 카르텔법 및 시장경쟁법 등에 관한 조항, 민영방송에 관한 규정, 외국 신문의 유통에 관한 조항 등이 빠져 있다.³⁷

동독 인민회의는 ‘미디어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감시기구로 ‘미디어감독위원회(Medienkontrollrat)’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는 미디어결정 12조에 의거한 것으로, 1990년 2월부터 1990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동독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정당 및 시민운동단체, 종교단체, 유대인 단체 등 다양한 집단의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³⁷ 앞의 책, p.416.



‘미디어감독위원회’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입법, 사법, 행정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입법 기능(Legislative Funktion) 차원에서 미디어감독위원회는 미디어 방송광고 허가, 미디어법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사법 기능(Appellative Funktion)은 미디어결정에 따라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가 실제로 보장되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행정 기능(Exekutive Funktion)은 TV 및 라디오 방송사의 사장 임명과 관영 뉴스통신사 ADN의 경영진 인사권 행사를 들 수 있다. 동시에 외국기업의 동독 미디어에 대한 투자에 관한 허가권도 관할하였다.³⁸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명목상의 임무와는 달리 실제 권한행사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통일 직전 해산되었다. 무엇보다도 반년 남짓한 짧은 활동기간에다, 통일 이후 서독법률에 따라 동독지역의 언론법제가 새로이 제정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규제감독기구로서 미디어감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 및 공산당에 의해 완전히 통제받았던 언론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시민들의 의견의 다양성 및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감독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특히 방송미디어와 관련된 임무가 중요하였다. 인쇄매체와 관련된 역할로는 당시 서독 거대 언론기업들이 자체의 유통시스템으로 시장을 지배하려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독립적인 유통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였고, 미디어부가 1990년 5월 관련법을 제정토록 하였다. 그러나 동서독 양국의 통일로 인해 미디어감독위원회는 1990년 9월 해체되었고, 동독 자체의 언론개혁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대신 동독 언론은 서독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³⁸ 앞의 책, p.417.

2) 과도기 동독 신문시장의 변화

통일 전환기에 동독의 신문지형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독 주요 신문의 소유구조 변화, 시장경제적 언론기업으로 전환, 핵심 편집진의 교체, 신문 제호의 교체, 신문 내용의 변화, 새로운 신문의 창간, 서독 신문과의 협업, 서독기업의 동독 신문 인수 및 동독지역 사세 확장 등이 꼽힌다. 특히 신문내용의 변화에 있어서는 공산당의 지시에 충실했던 정보전달 기능으로부터 탈피하고, 터부시되었던 시민과 사회문제에 관해 성역 없이 비판·보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기존에 독일 우정성(Deutsche Post)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신문유통시장을 개방하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동독 공산당 소유 신문의 편집국장이 사퇴하고, 기자들의 신임을 받는 새로운 인물들로 편집진이 전면 교체되었다. 환경변화에 따라 동독 공산당은 1990년 1월 말까지 언론영역의 독점적 소유구조를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신문, 방송 및 통신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경영상의 경제적 어려움과 독점적 소유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공산당 소유였던 신문 11개(총 16개 중)와 인쇄시설 21개(총 26개 중)를 1990년 6월 말까지 이른바 ‘인민의 소유(Volkseigentum)’, 즉 공영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신문들은 국가 및 공산당으로부터 독립된 신문으로 새 출발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제호를 모두 바꾸었다. 종전 제호를 고수한 공산당 중앙당 기관지 ‘Neues Deutschland(노이에스 도이칠란트)’, Berliner Verlag 소유의 ‘Berliner Zeitung(베를리너 차이퉁)’과 ‘BZ am Abend(BZ 암 아벤트)’는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Neues Deutschland(노이에스 도이칠란트)’는 동독 공산당(SED) 후신인 PDS의 기관지로 전환되었고, Berliner Verlag 그룹은 서독 기업에 매각되었기 때문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는 서독 신문사들이 동독지역에 진출하여 신문을 유통·배포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기존 동



독 신문들이 모두 국영 공산당 산하 기관지로 자유로운 언론보도가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신문보도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점과 관련된다. 급작스런 베를린 장벽 붕괴에 따른 서독 언론기업의 일차적 전략은 동독지역의 유통망을 선점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90년 8월 기준으로 약 350개의 서독 신문 및 잡지들이 동독지역에서 유통 판매되었다. 이 중 몇몇 서독 신문들은 동독에서 일정한 구독자를 확보하기도 했는데, 가장 많이 팔린 신문들의 판매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ild(빌트)’ 61,000부, ‘Hamburger Morgenpost(함부르거 모르겐포스트)’ 27,000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24,000부, ‘Sueddeutsche Zeitung(쥐드도이체 차이퉁)’ 10,000부, ‘Der Spiegel(슈피겔)’ 17,000부, ‘burda-Moden(부르다 모덴)’ 13,000부 등이다.³⁹

하지만 이들처럼 시장진입에 성공한 신문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다수 서독 신문들은 동독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다른 정치적, 사회적, 물질적 상황에 놓여 있던 동독 독자들은 서독 독자와는 다른 관심사와 정보 욕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었던 서독 신문은 정론지보다는 ‘Bild(빌트)’ 같은 대중신문이었다.

초기에는 서독 신문이 주로 무료구독 또는 선물구독 형태로 보급되는가 하면, 유통망의 문제 등으로 인해 주로 도서관, 자료실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동시에 통일 이전 서독 신문을 동독지역에서 배급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통일과도기 이후 서독 언론사가 동독지역에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는 것도 중요한 시장전략에 속하였다. 이는 주로 언론출판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언론기업들이 주도하였는데, 대표적인 서독기업은 Bauer(바우어), Burda(부르다), Axel Springer(악셀 스프링어), Gruner+Jahr(그루너+야르) 등이 꼽힌다.

³⁹ 앞의 책, p.422.

장벽 붕괴 이후 공식적인 통일 전까지 10여 개의 신문이 창간되었지만,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에는 제반 여건이 좋지 않았다. 특히 노후 인쇄시설 및 인쇄용지 확보에 따른 문제가 장애물이 되었다.

이런 문제는 기존의 동독 언론을 인수하여 새로이 신문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었다. 대표적 인수사례로 그루너+야르 그리고 맥스웰그룹은 2,350억 마르크를 지불하고 언론사 Berliner Verlag를 인수하였다. 이 그룹은 당시 신문 및 잡지를 통틀어 1,000만 부를 발행하는 동독 최대 언론기업이었다. 주요 발행지로는 일간신문 ‘Berliner Zeitung’, ‘BZ am Abend’, 주간신문 ‘Wochenpost’, TV프로그램잡지 ‘FF dabei’, 잡지 ‘Freie Welt’ 등이 속한다. 그리고 공산당 소유 신문들도 대다수 서독 언론기업이 인수하였다(〈표 1-7〉 참조).

표 1-7 > 통일과도기 동독 공산당 신문 소유관계 변동내역(1989-1990년)

신문명	발행지	발행부수 (1988년)	인수업체
Neues Deutschland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Ost-Berlin	1,100,000	PDS(독일사회당)
Freie Erde(프라이에 에르데)	Neubrandenburg	202,000	Augsburger Allgemeine/Kieler Nachrichten/Schwaebische Zeitung
Freie Presse(프라이에 프레세)	Chemnitz	661,000	Medien Union/Rheinpfalz그룹
Freiheit(프라이하이트)	Halle	585,000	DuMont/Schauberg그룹
Freies Wort(프라이에스 보르트)	Suhl	178,000	WAZ그룹
Lausitzer Rundschau (라우지처 룬트샤우)	Cottbus	291,000	Saarbruecker Zeitung
Leipziger Volkszeitung (라이프치거 폴크스차이퉁)	Leipzig	484,000	Springer Verlag
Maerkisches Volksstimme (머크시쎬 폴크스슈팀메)	Potsdam	348,000	FAZ그룹
Neuer Tag(노이어 탁)	Frankfurt Oder	211,000	Suedwest Presse그룹
Ostsee-Zeitung (오스트제-차이퉁)	Rostock	292,000	Luebeker Nachrichten
Saechsische Zeitung (쎬지쎬 차이퉁)	Dresden	566,000	Gruener+Jahr(51%),



Schweriner Volkszeitung (슈베리너 폴크스차이퉁)	Schwerin	201,000	Burda그룹
Das Volk(다스 폴크)	Erfurt	401,000	WAZ그룹
Volksstimme(폴크스슈팀메)	Magdeburg	460,000	Bauer그룹
Volkswacht(폴크스바흐트)	Gera	250,000	WAZ그룹

출처 : Holzweissig, Gunter(1989). Massenmedien in der DDR. Berlin. Gebr. Holzapfel. pp.76-80 ;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I Presse, Konstanz. UVK Medien. pp.377-379 ; 김영욱·심영섭(2011). 통일과 언론: 독일의 경험, 언론재단 연구서 2011-08. 한국언론진흥재단. pp.118-122.

한편 동독에 진출한 서독 언론기업의 다수는 일간신문 발행의 경험이 없는 잡지출판 언론그룹이었다. Bauer(바우어), Burda(부르다)가 이에 속하는데, 이들 기업은 통일을 계기로 신문시장에 진출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서독지역에서 일간신문기업과 잡지출판기업이 분리되어 두 축을 형성하여 왔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동독시장에서 전개되었다. 이들 일간신문 발간 경험이 없는 기업들의 진출은 동독지역에서 신문 창간에 실패하는 쓰라림을 맛보게 되었다. 이들은 동독 신문시장의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가 하면, 동독 신문사 인수 시 낙후된 인쇄시설 등 신문발행에 필요한 시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도 했다.

동독 신문사는 관영 언론 특성에 따른 보도내용상의 문제뿐 아니라, 신문인쇄에 필요한 제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준이 서독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었다. 따라서 통일과도기에 서독 신문사들은 이런 측면에서 동독 신문사를 인수 및 지원하는 한편, 동독 언론사로부터는 자신의 동독 진출에 관련된 인적 및 정보 체계에 관해 도움을 받는 협력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서독 언론기업들은 동독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동독 신문들은 생존에 필요한 자본투자가 긴요한 상황이었으며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경쟁 체제의 새로운 환경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협업 및 협력관계는 주로 블록정당 신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즉

CDU, LDPD, NDPD 등 블록정당들은 자체 소유의 신문을 다수 발간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한 자리 수에 불과한 낮은 발행부수를 유지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과도기에 밀려온 시장경쟁 환경에서 독자적인 생존의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이들은 신속하게 서독의 거대 언론사와 협력관계를 통해 새로운 생존 방향을 모색해야 했다.

먼저 정당 CDU계열의 신문 6개 중 5개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그룹으로 넘어갔다. 다만 드레스덴에서 발간되는 CDU 소유 신문 ‘Die Union(디 유니온)’은 쥐드도이체 차이퉁이 인수하였고, 통일 후에는 ‘Dresdener Neuen Nachrichten(드레스테너 노이에 나흐리히텐)’으로 제호를 바꿨다. 또한 LDPD 소유의 신문 5개 중 4개는 Axel Springer그룹이 차지하였으며, NDPD 계열 신문 3개는 폐간되고, 나머지는 각각 Bauer그룹, Burda그룹 및 Axel Springer그룹이 인수하였다.

한편 직능단체 소유의 신문들도 전환기 이후 발행부수가 급감하였고, 다수는 서독 언론기업에 매각되었다. 대표적으로 FDJ 기관지 ‘Junge Welt(용에 벨트)’는 베를린 장벽 붕괴 전까지 매일 150만 부를 발행하다가 전환기에는 40만 부로 곤두박질쳤다. 노동조합 신문 ‘Tribuene’, 블록정당 신문 ‘Neue Zeit’, ‘Bauern-Eco’, ‘Der Morgen’ 등도 몇 달 사이에 큰 폭으로 독자층을 잃었다. 그 이유는 직능단체 탈퇴로 인한 회원수의 급감, 독립된 신문으로의 전환 그리고 국가보조금 지급제도가 사라져 구독료가 크게 오른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기타 동독과 서독 언론의 협업관계는 동서독 국경 인접지역의 언론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서독 신문은 동독지역에서 지역판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통일전환기에 서독 거대 언론기업과 업무협약, 인수 및 합병 등 관계를 체결한 동독 일간신문사는 1990년 5월 기준으로 26개 신문사에 달했고, 100여 개 신문사들도 기술적, 인적 협력관계 또는 합병을 체결할 예정



이었다.⁴⁰

통일과도기에 동독 신문시장이 붕괴된 원인 중의 하나는 신문가격의 급등이다. 이는 동독시절 신문정가제 및 국가지원제도에 따라 저렴했던 신문구독료가 시장논리로 전환되면서 크게 오른 데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동독시절 신문 1부당 가격은 0.15마르크였는데, 독점가격제도가 사라지면서 한순간에 세 배 정도 오른 0.4~0.5마르크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 2월 13일 미디어규제위원회가 국가의 신문 정가제도를 폐지하면서 대두되었다. 이는 서독에 비해서는 싼 가격이지만 대다수의 동독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규모 구독 취소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매일 백만 부 이상 발행하던 동독 공산당 기관지 ‘Neues Deutschland’, 직능단체 발간의 신문 ‘Junge Welt’, ‘Tribuene’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1990년 2-3월 한 달 사이에 동독지역에서 무려 1,660만 명이 신문 및 잡지구독을 해약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1990년 6월까지 기존 독자의 절반 이상을 잃어 동독 신문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동독 신문과 서독 신문과의 시장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서독 신문들은 동독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동독 신문과 무한경쟁을 벌이는 현상이 벌어졌다. 서독 신문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차후 동독지역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경영전략 차원에서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
⁴⁰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p.421-426.

표 1-8 > 동독 주요 신문 소유관계 변동내역(1989-1990년)

신문명	발행지	발행부수	구소유주	인수업체
Neue Zeit(노이에 차이트)	Ost-Berlin	97,000	CDU	FAZ그룹
Maerkische Union(매르키슈 유니온)	Cottbus/Frankfurt-Oder/Potsdam	41,000	CDU	-
Die Union(디 유니온)	Dresden/Leipzig/Karl-Max-Stadt	60,800	CDU	SZ그룹과 협력
Der Neue Weg(데어 노이에 벡)	Magdeburg	36,300	CDU	FAZ그룹
Thueringer Tageblatt (튀링어 타게블라트)	Erfurt/Gera/Suhl	28,600	CDU	FAZ그룹
Der Morgen(데어 모르겐)	Ost-Berlin	53,000	LDPD	Springer그룹
Liberal-Demokratische Zeitung (리버랄-데모크라티슈 차이퉁)	Halle/Magdeburg	55,800	LDPD	-
Saechsiches Tageblatt (잭지슈 타게블라트)	Dresden/Leipzig/Karl-Max-Stadt	66,400	LDPD	-
Thueringische Landeszeitung (튀링기슈 란데스차이퉁)	Erfurt/Gera/Suhl	47,600	LDPD	WAZ그룹
Nazional Zeitung(나찌오날 차이퉁)	Ost-Berlin	55,000	NDPD	-
Norddeutsche Neueste Nachrichten (노르도이체 노이에스테 나흐리히텐)	Rostock/Schwerin/Neubrandenburg	31,400	NDPD	Springer그룹
Saechsische Neueste Nachrichten (잭지슈 노이에스테 나흐리히텐)	Dresden/Leipzig/Karl-Max-Stadt	29,800	NDPD	Burda그룹→ 마드작그룹
Thueringer Neueste Nachrichten (튀링어 노이에스테 나흐리히텐)	Erfurt/Gera/Suhl	29,000	NDPD	-
Bauern-Echo(바우어른-에코)	Ost-Berlin	91,000	DBD	FAZ그룹
Tribuene(트리뷰네)	Ost-Berlin	412,000	FDGB	-
Junge Welt(웅에 벨트)	Ost-Berlin	1,400,000	FDJ	독립발간
Deutsches Sportecho (도이체 스포트예코)	Ost-Berlin	182,000	FDJ	Springer그룹
Berliner Zeitung(베를리너 차이퉁)	Ost-Berlin	425,000	Berliner Verlag	Gruner+Jahr/ Mexwell
BZ am Abend→베를리너 쿠리어	Ost-Berlin	204,000	Berliner Verlag	Gruner+Jahr/ Mexwell

출처 : Holzweissig, Gunter(1989). Massenmedien in der DDR. Berlin. Gebr. Holzapfel. pp.76-80 ;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p.377-379 ; 김영욱·심영섭(2011). 통일과 언론: 독일의 경험, 언론재단 연구서 2011-08. 한국언론진흥재단. pp.118-122. 참조 재구성.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 통일에 이르는 기간 등장한 시민운동 및 정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신생 신문들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다른 제도권 언론과는 달리 조작되지 않은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고 잘못된 문제점들을 공적으로 제기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변혁을 이끌 중요한 대안언론 또는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11월 창간된 ‘Weimarer Wochenblatt(바이마르 보헨블라트)’는 동독 역사상 최초의 자유독립신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수많은 시민단체들과 신생 정치집단들은 앞을 다투면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즉 시민운동단체 ‘Neues Forum(노이에스 포럼)’도 1989년 11월 ‘Neuen Erfurter Zeitung(노이엔 에어푸르터 차이퉁)’을 창간한 것을 비롯하여 30여 개 대안신문들이 1989년 말부터 1990년 초까지 새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들 대안신문들은 재정적 어려움과 신문 발행에 필요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몇 주 내지는 몇 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폐간되었다. 동시에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다양한 정치적 견해에 부합되지 못한 것도 발행 중지된 원인 중의 하나이다. 기타 기존 신문들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시민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려는 편집전략도 새로 등장한 대안신문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었다.⁴¹

구동독의 신문유통시장은 동독 우정성(Deutsche Post)이 독점하였다. 전체 신문잡지 중 무려 85%가 우체국을 통해 배달되었고, 나머지 15%는 4,500여 개 우체국 또는 1,500개의 기타 가판점에서 판매되는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서독 신문사들은 1990년 1월 서독 신문의 동독판매가 허용되자, 무엇보다 유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전 동독지역에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약 2만 5천 개의 가판대가 필요하였다. 1990년 당시 서독지역에는 9만여 개의 가판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적극적으로 동독시

.....
⁴¹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p.423-424.

장에 진출하려고 했던 서독 언론기업은 Bauer, Burda, Gruner+Jahr 그리고 Axel Springer그룹이었다. 이들은 동독 우정성과 공동으로 신문유통회사를 설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80여 개의 서독 신문을 동독지역에 배급시키려 했으나, 여기에서 배제된 다른 신문사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미디어감독위원회는 1990년 3월 특정 언론사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유통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즉 1990년 5월 2일 ‘Verordnung ueber den Vertrieb von Presseerzeugnissen in der DDR(동독 신문유통에 관한 법)’이 발효되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경로를 통해 신문이 유통되도록 결정하였다.⁴²

- 우체국 신문배달서비스
- 동독에 본사를 둔 민영 신문유통원
- 동독에 본사를 둔 신문사의 자체 가택배달
- 동독에 본사를 둔 자체 유통회사를 통한 신문배달
- 유통회사 또는 광고대행사(단 우체국 또는 신문유통원을 통해 배달하는 경우)

상기 법규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언론사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한 신문유통질서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서독 거대 언론기업들은 다른 서독 언론사, 동독 언론사 및 동독 유통회사와 공동으로 12개의 유통회사를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통일 직전까지 16개의 독립 유통회사가 신설되었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는 19개의 유통회사가 운영되었는데, 이 중 12개는 언론기업이 소유 및 경영하는 회사였다. 따라서 유통시장에서 신문기업의 영향력은 지배적이었다. 서독지역과 비교해보면 이런 현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당시 서독의 신문유통회사는 81개인데, 이 중 언론기업이 관여하는 회사는 불과 6개 뿐이었다. 게다가 동독 전체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지역은 언론

⁴² 앞의 책, pp.431-433.



사 소유의 유통회사가 지배하고, 나머지 40%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독립 유통회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였다.⁴³

동독 신문유통시장은 공공성에 입각한 구조로 개편하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집중화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동독시절 국영기관인 우정성의 독점적 지배를 받던 유통시장은 통일 이후 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유통시장이 개방,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유통시장은 서독 언론기업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져, 언론사와 독립적으로 이원화된 질서를 유지하던 서독과는 상이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3) 동독 방송 체제의 변화

앞에서 살펴본 과도기 신문영역의 변화와 방송영역에서의 변화는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즉 신문시장은 서독 언론기업에 의한 인수, 창간, 협업 등 시장경쟁시스템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데 비해, 동독 방송은 다양한 변화를 위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스템에의 근본적인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방송개혁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였고, 통일 이후의 정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에 속했다. 다만 기존 국영방송시스템의 전환 및 새로운 방송정책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전개되었다.

먼저 동독 방송민주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국영방송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러한 논의는 전체 독일 차원이 아닌 동독에 한정된 것이었고, 통일 이후 개혁시도가 무산되기는 했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독에서 방송시스템 전환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서독 공영방송 ARD, ZDF와 같은 형태의 공영방송으로 전환시키되 독립된 제3의 공영방송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서독과는 다른 동독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시키려는 것이 목표였다. 둘째는 서독

⁴³ 앞의 책, p.434.

공영방송 시스템에 편입시킨 후, 동독 각 주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하자는 의견이다. 이는 한마디로 주 단위의 지역 공영방송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독 공영시스템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논의와 동시에 동독 국영방송은 제도적 및 내용적으로 일련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1990년 4월에는 동독 텔레비전 DFF 경영권을 5개 주가 분할 지배토록 결정하였다. 이어 1990년 5월에는 브란덴부르크주가 자체 지역방송 ‘Antenne Brandenburg’를 설립하였고, 1990년 6월부터 다른 주들도 독자적인 지역방송을 시작하였다.

또한 종전의 국영방송 이름을 개칭하고 프로그램 편성도 대폭 개혁하였다. ‘Radio DDR1’은 ‘Radio Aktuell’로 개칭하고 정보 및 뉴스서비스채널로 개편하는가 하면, ‘Berliner Rundfunk’는 가족 및 오락채널로 전환하였다. 또 ‘DT64’는 청소년 대상 채널, ‘DS-Kultur’는 문화채널로 전환되었다. 이런 개혁내용은 1990년 7월 13일 인민의회가 제정한 방송이전법(Rundfunküberleitungsgesetz)에 명시되었으나, 몇 달 후 1990년 10월 3일 동서독통일로 인해 전면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왜냐하면 통일 이후 방송과 관련하여 유효한 법적 근거는 통일조약 36조가 유일한 것으로 서독 정부가 주도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통일조약 36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⁴⁴ “방송을 늦어도 1991년 말까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법적인 공공기관(Einrichtung)으로 전환토록 한다. 방송전환에 관한 권한은 각 주 소관사항이다. 방송의 임무는 해당지역 시청자들에게 공영방송으로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1항). “1항에 제시된 기한 내에 방송기관은 연방적 방송구조에 부합토록 방송국가조약을 체결하거나, 각 주별로 또는 몇 개 주 연합으로 공영방송사를 신설토록 한다”(6항).

⁴⁴ Stuißer, Heinz-Werner (1998a). Medien in Deutschland Band2 Rundfunk, 1.Teil. Konstanz. UVK Medien. pp.265-267.



따라서 방송은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새로운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즉 1990년 12월에 동독텔레비전 DFF1, DFF2 채널이 종영되었고, DFF2 채널은 서독 ARD로 전환되어, 전국 종합 프로그램을 내보내게 되었다. 동독 각 주 연합의 공동채널을 운영하려는 계획은 결국 실패하고, 대신 다수의 지역방송이 신설되었다. 중부독일방송 MDR은 세 개 주가 연합으로 운영하는 방송채널이고, 브란덴부르크방송 ORB는 브란덴부르크주 단독으로 운영되는 지역방송 그리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기존 서독 북부독일방송 NDR에 편입되었다. 그 외에 ZDF는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수신이 가능했고, 민영채널들은 위성 수신시설 설치로 빠르게 동독 시청자들에게 보급되었다.

2. 통일 이후 동독 언론정책과 구조변동

1) 동독 신문시장의 개혁

앞서 언급했듯이 전환기 및 통일 이전 국가독점적 신문시장이 지배했던 동독에서 통일과도기에는 신문의 다양성이 활짝 꽃을 피웠다, 이른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26개 신문사가 새로 설립되었고 61개 신문이 창간되었다. 이 중 서독 언론기업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지배적이었다, 즉 26개 신생 신문사 중 21개가 서독 언론기업 소유였고, 총 61개 신문 중 43개가 이들이 창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창간된 대다수 신문들은 동독시절부터 존재했던 신문이 제호만 바꾼 것이고, 순수 신규 창간된 신문은 불과 8개에 불과하였다. 이 중에서 'Gottbuser General-Anzeiger(고트부스 제너럴 안차이거)'는 서독 자본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창간된 동독지역 유일의 신문으로 관심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1991년 5월 폐간되었다.

동독 신문은 1991년 중반 이후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었다. 시장경쟁 질서가 본격적으로 작동되고, 이로 인해 구공산당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한 집중화현상이 심화되었다. 신문발행 부수도 1989년 약 980만 부에 달했던 것

이 1991년에는 750만 부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 중 530만 부는 구동독 신문, 그리고 220만 부는 서독 신문이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구동독 신문의 지배력도 급감했는데, 특히 이른바 3대 동독 신문, 즉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D), 용에 벨트(JW), 트리뷴네(Tribuene)의 시장점유율이 1989년 30% 감소했고, 2년 후인 1991년에는 무려 90%를 상실하였다. 아울러 Berliner Zeitung은 30%, BZ am Abend는 15% 감소되었다. 반면 베를린지역은 16개 신문이 경쟁하는 도시로 부상하였는데, 이 중 6개는 서독지역 신문이고 10개는 동독 지역에 기반을 둔 신문이다. 이는 베를린이 통일독일의 수도로 자리잡아 성장을 거듭하는 것과 관련된다.⁴⁵

이렇듯 동독의 신문지형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구체적으로 동독 주요 신문의 영향력이 상실되었고, 시장경제적 언론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핵심 편집진들이 새로운 인사들로 전면 교체되는가 하면, 신문 제호의 교체 및 신문 내용도 큰 변화를 보였다. 이 중 신문내용의 변화는 종전의 당의 지시에 충실한 기사에서 탈피하는가 하면, 터부시되었던 시민과 사회문제에 관해 성역 없이 보도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우후죽순 처럼 새로운 신문이 창간되는가 하면 서독 신문과의 협업 및 서독 언론기업의 신문사 인수 등 동독지역 사세 확장에 주력하였다.

한편 언론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언론법이 40여 년 간 존재하지 않았던 동독에서는 처음으로 법률이 만들어졌다. 동독시절 언론의 자유는 헌법 27조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언론은 공산당 통제하에 존재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 대신 언론은 선전선동부의 보도지침 및 국영통신사 ADN을 통한 뉴스공급시스템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따라서 통일 이후 동독의 신문과 방송의 법제는 기본적으로 서독의 제도를 모방하여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동독지역 주들은 서독지역 주언론법을 모델로 법 제정을 시도하였다. 예

⁴⁵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p.443-446.



컨대 작센주는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니더 작센주 등과 협력관계를 통해 법안을 제정하였다. 또 튀링겐주는 라인란트-팔츠, 헤센, 바이에른주의 도움으로 언론법을 만들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베를린지역은 서베를린 언론법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동독신문법 제정에 있어서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생 주의 언론법은 서독 주들의 법규를 모델로 하였다. 둘째, 통일 전과는 달리 언론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셋째, 언론인의 활동 및 의식이 이전 동독 체제와 완전히 단절되도록 하였다.⁴⁶

한편 동독 신문시장의 정책 또는 개혁을 위한 모색방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⁴⁷

첫째, 기존 동독신문제도를 전면 개혁한 후 지속화하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국가 및 공산당 산하 신문의 소유구조 및 편집 및 경영정책을 새로 전환하여 동독 고유의 신문시장 환경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대표적 일간신문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 ND), 용에 벨트(Junge Welt)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동독 공산당 중앙기관지 ND는 통일 직전 110만 부를 발행하였는데, 통일 10년 후인 1999년에는 64,600부로 크게 줄었다. 또 Junge Welt는 1989년 150만 부 발행하던 것이 2000년에는 불과 22,000부로 곤두박질쳤다. 따라서 이들은 생존경쟁적 시장논리에서 살아남기가 여전히 버거운 상황에 놓여 있다.

둘째, 동독 시민계급 주도로 신문시장의 지배력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기존 동독 반체제 지식인, 예술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집단에 의한 신문

⁴⁶ Trautloff & Bruebler(2010).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r ostdeutschen Landespressegesetzte und Rundfunkordnung. in Machill, M / Beiler, M / Gerstner, J (ed.) (2010). Medienfreiheit nach der Wende. Entwicklung von Medienlandschaft, Medienpolitik und Journalismus in Ostdeutschland. Konstanz. UVK. pp.75-83.

⁴⁷ Thierse, W. & Spittmann-Ruehle, I./Kuppe, J. (ed.) (2000).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pp.173-183.

창간 및 언론시장의 구축을 시도하는 방안이다. 이들에 의한 대안신문 창간은 동독시절에는 불가능했는데, 그 이유는 일부 정당 소유 신문을 제외하면 대다수 신문은 공산당 소유였고, 국가에 의한 신문유통시장 통제 및 신문용지 배급조차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1990년 1월 신문시장에 대한 통제가 완화된 후에는 30여 개 신문(주간신문 포함)이 창간되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3개 신문만 남았다가 이마저도 모두 폐간되었다. 대안신문은 여타 신문들에 비해 불리한 경쟁상황에서 생존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즉 이들은 서독 언론기업의 지원도, 구동독 언론처럼 기득권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경쟁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대다수 동독지역 독자들은 시민단체가 창간한 신문보다는 구동독 공산당 기관지를 구독하는 성향을 보였다. 만약 이들 신문이 현존한다면 동독지역 국민들의 여론을 좀 더 잘 대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통일과정에서 언론정책적으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서독 신문시스템에 의한 시장지배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는 한마디로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의한 서독 신문기업의 동독시장 잠식을 의미한다. 동독 신문시장의 대다수는 이러한 서독 신문기업이 지배하는 양상을 보인다. 최신 인쇄시설 및 자본력을 갖춘 시장경쟁력이 강한 거대 서독 언론기업이 대거 진출하여 동독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문편집방향의 우위성을 기반으로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독자의 수요에 맞춘 편집방침으로 동독의 잠재적 수용자를 끌어들었다. 특히 동독 국민들은 종전의 국가 통제적 언론정보와는 정반대로 자유주의적 언론사상에 입각한 언론생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상기 세 가지 방안 중 첫째와 둘째 방안은 동독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이었고, 셋째는 서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동독 신문시장의 개혁은 서독 정부의 민영화 정책, 특히 신탁청이 주도하는 언론시장의 민영화였다.



독일 신탁청(Treuhandanstalt)은 통일조약 25조에 의거하여 구동독 국유 재산을 구조조정하고 민영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어 독점적 국영기업을 경쟁력 있는 민영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언론 분야에서는 신문영역이 신탁청의 손을 거쳐 민영시스템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동독 신문들이 서독 언론기업들에게 매각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동독 공산당 소유 신문들은 서독 언론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되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서독 기준으로 볼 때 동독 주요 신문들의 발행부수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둘째, 이들 신문들은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지역판을 동시에 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신탁청의 동독 신문 매각과정에는 40여 개 서독 언론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매각 신문사의 낙찰기준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높은 구매가격을 제시한 기업, 둘째, 노후 시설의 개선 및 투자계획 여부 그리고 셋째, 기자 및 직원의 고용승계 등이다. 아울러 참여기업들은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신문사를 인수받을 수 있었다. 첫째, '1사 1개 원칙'으로 각 신문기업은 단지 1개 언론사만 인수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둘째, 신문기업은 매각대상 신문이 발행되는 지역에서 이미 신문을 발행하고 있지 않아야만 낙찰자격이 주어졌다.⁴⁸

이를 기준으로 신탁청이 주도한 신문매각정책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⁴⁹

첫째, 신탁청은 전국에서 높은 발행부수를 갖고 있던 SED 소유 지역신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⁴⁸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p.446-449.

⁴⁹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450 ; Tonnemacher, Jan(1996). Kommunikationspolitik in Deutschland, Konstanz. p.108.

않았다. 즉 신문시장의 다양성에 관한 언론학적 정책문제는 매각과정에서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둘째, 신탁청은 서독 신문시장에서 1970년대에 경험했던 집중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실제로 동독 신문들은 특정 언론기업에 독점 매각되어 차후 집중화가 초래되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구동독 신문 매수자는 대다수가 서독 언론대기업에 편중되었다. 낙찰조건이 막대한 자본을 전제로 하고 차후 투자를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거대기업 외에는 신문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넷째, 모든 신문을 통일 이전 발행양식 및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매각하였다. 이는 통일 전환기에 급격하게 달라진 매각대상 신문의 새로운 실상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테면 공산당 소유의 주요 신문들의 발행부수는 1989년에서 1990년 사이 대폭 떨어졌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치 않아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신탁청의 매각정책은 소유주체만 바꾸었을 뿐, 과거 동독시절의 독과점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동독 공산당이 소유했던 신문들을 민영화했으나 소수 거대 신문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질서는 변함없이 지속되는 현상을 낳았다. 실례로 1991년 독일 10대 언론기업 중에서 구동독지역 언론사는 6개에 달했는데,⁵⁰ 이들은 모두 서독 언론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문시장에서 소수 언론기업에 의한 독과점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한편 독일 신탁청의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독 신문사가 직접 동독지역에 진출하는 방법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은 동독 진출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취하였다. 첫째는 서독 신문의 동독 지역판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초기에 국경지역 신문을 중심으로

⁵⁰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451.



이루어졌다. 둘째는 동독지역에서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유통 판매 등 기존 신문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 시장진입의 성공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셋째는 동독 신문과 협력관계를 수립하여 진출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주로 공산당 소유 지역신문과 연계해서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번거롭고 까다로운 신탁청의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진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었다. 특히 15개의 동독 공산당 관영신문들은 약 558만 부를 발간하고 있었고, 이들 대부분은 통일 과도기인 1990년 초 국가 소유에서 민영화되어 독립하였다. 따라서 서독 거대신문사들은 이들과 협업 또는 투자관계를 맺어 1990년 5월 기준으로 2/3 정도가 협업관계를 체결한 상태였다. 아울러 17개 정당기관지들 역시 서독 신문사들과 협업관계를 체결하였다. 한편 협업정책에 적극적인 동독지역 인접 서독 언론사들은 국경개방 이후 신속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즉 우선 신문을 신속하게 동독지역에 보급하는 한편, 이어서 동독 지역판을 발행하였다. 이런 전략은 자본을 투자하여 동독지역에 새로 신문을 창간하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이라서 특히 중소기업 언론사들의 효과적인 동독시장 진출 전략으로 선호되었다.⁵¹

이러한 현상들을 기반으로 통일 이후 동독 신문시장의 변화를 정리하면, 기존 관영신문의 민영화가 핵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신탁청의 신문매각정책, 다른 한편으로는 서독 신문기업의 적극적인 동독시장 진출정책이 양대 주축을 이루면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독시장의 변화가 곧 통일 이후 동서독이 하나의 동일한 신문시장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신문시장은 서로 매우 상이한 현상이 두드러져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다만 동독 신문

.....
⁵¹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443 ; Thierse, W. & Spittmann-Ruehle, I. & Kuppe, J. (ed.) (2000).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pp.173-183.

시장은 서독 언론기업의 손아귀로 넘어가, 거대 언론기업 중심으로 재편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신규 신문 및 중소 신문은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동독 신문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독과점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구동독 신문영역은 국가독점적 시스템에서 한순간에 자유 시장경쟁 체제로 재편되는 데 따른 극심한 혼란과 격변이 동반되었다. 이는 방송매체의 사정과는 매우 다른 현상이었다. 즉 방송은 통일조약 36조 및 1991년 방송국가조약 체결, 주방송법 제정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쁨이 마련되었었다.⁵²

따라서 동독 신문에 대한 통일 10년 후 평가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특히 동독 신문의 현실적 기능 및 위상은 동독시절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서독지역 신문시장은 소규모 언론, 중간 규모 언론 및 거대 신문사들이 상호 경쟁하는 시스템인 데 비해서, 동독 신문은 오로지 거대 신문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현상도 문제이다.⁵³

2) 동독 방송구조의 전환

신문과는 달리 방송은 서독 방송시스템에 따라 민영화가 아닌 공영적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통일 전 방송은 공산당의 입과 귀로서 도구적 역할에 충실했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는 공영방송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동독 국민들은 제3공영방송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했으나 관철되지 못하고 서독 방송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는 방송이 서독 주도에 의한 ‘일방적인’ 흡수통합 정책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

.....

⁵² Puerer, H. & Raabe, J.(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p.441-442.

⁵³ Thierse, W. & Spittmann-Ruehle, I./Kuppe, J. (ed.) (2000).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pp.173-183.



다. 구체적인 개혁으로 우선 서독 파견 방송특임관에 의한 국영방송 DFF가 해체되었으며 이를 서독 공영방송 ARD가 인수하였다. 또 DFF 소유의 방송 시설 및 프로그램은 5개 주 소관으로 넘겨졌다. 이러한 변화는 동독 고유의 방송문화가 사라지고 서독 방송문화가 이식되었음을 뜻한다.

아울러 1990년 4월 동독지역 첫 자유 총선과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선출 이후, 미디어감독위원회(Medienkontrollrat) 외에 인민의회 산하 언론미디어위원회(der Volkskammerausschuss fuer Presse und Medien) 및 미디어정책부(das Ministerium fuer Medienpolitik)가 신설되었다. 이 중 미디어감독위원회는 연방 방송법 제정을 위한 업무를 전담한 반면, 언론미디어위원회와 미디어정책부는 기존 동독 방송 체제의 청산업무를 담당하였다. 동독 새 정부에서는 1990년 5월 방송법안이 만들어지고 동년 9월 26일 발효되었으나, 10월 3일 통일조약 발효로 불과 7일 만에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동독 자체의 방송개혁 노력이 무산되고 그 권한이 서독 정부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1992년 1월 동서독 모든 주를 아우르는 통일독일 방송국가조약(Rundfunkstaatsvertrag)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동독 중앙집중적 방송시스템은 서독과 동일하게 연방적 원칙에 입각한 방송구조로 개혁되었다. 즉 동독시절의 국영방송 체제가 각 주 소관의 공영채널과 민영채널의 이원적 방송질서로 개편되었다. 서독 방송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는데 그쳤을 뿐, 그 이상의 혁신적인 개혁은 시도되지 않았다.

구동독에서 공영방송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 몇 단계를 거쳤다.

첫째, 앞에서 서술했듯이 통일 과도기에 동독 인민회의의 미디어결정을 통해 DDR 방송의 위상은 더 이상 국가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 전환되었다. 국가 소유에서 공공 소유로 전환된 것이다.

둘째, 서독 방송제도를 모델로 다양한 지역 공영방송이 출범하였다. 대표적으로 동독 5개 주 연합으로 구성된 동부독일방송(Ostdeutsche Rundfunk) 설립이 제시되었으나, DDR 방송과 같은 중앙집중적 통제 가능성의 문

제가 제기되어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연방제 원칙에 따라 각 주는 공영방송 ARD 회원사로 가입하고, 몇몇 주가 공동으로 공영방송사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즉 튀링겐, 작센 그리고 작센-안할트 3개 주는 1991년 5월 방송협약을 체결하여 중부독일방송(MDR: Mitteldeutscher Rundfunk)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는 1991년 9월 공영방송 ORB(Ostdeutsche Rundfunk Brandenburg)를 설립하였다. 이들 MDR, ORB는 1992년 초 ARD 공영방송 연합체에 가입하고 방송을 시작하였다. ORB는 약 10년이 지난 후인 2003년 3월 베를린 공영방송 SFB와 함께 베를린-브란덴부르크방송(RBB: Rundfunk Berlin-Brandenburg)으로 통합되었다. 나머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애초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주와 함께 북동독일방송(NORA)을 설립하려 했으나, 1992년 3월 최종 서독의 북부독일방송 NDR에 편입하였다.

셋째, 중앙집중적 공영방송 ZDF는 동독 각 주에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전 독일로 가시청권을 확장하였다.⁵⁴

한편 동독에서 전개된 방송개혁을 위한 정책적 논의 및 가능성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⁵⁵ 우선 동독지역을 대변할 단일 전국채널 동부독일방송(Ostdeutscher Rundfunk)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는 구공산당, 민사당(PDS), 사민당(SPD) 등 진보정당들이 동참하였다. 둘째, 서독 방송시스템에 따른 주 단위의 공영방송 질서를 수립하는 방안이다. 이는 사실상 서독 방송시스템으로 편입되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 국영방송 일체를 민영화하여 방송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방안이다.

이 세 가지 방안 중 민영화 방안은 서독의 방송질서와 배치되는 것으로

.....

⁵⁴ Trautloff & Bruebler (2010).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r ostdeutschen Landespressegesetze und Rundfunkordnung. in Machill, M & Beiler, M & Gerstner, J (ed.) (2010). Medienfreiheit nach der Wende. Entwicklung von Medienlandschaft, Medienpolitik und Journalismus in Ostdeutschland. Konstanz. UVK. pp.85-87.

⁵⁵ 롤란드 티사-질비아 디틀(이우승 역)(2002). 독일방송통일: 동서독은 어떻게 방송시스템 통합을 이루었는가?. 커뮤니케이션북스. pp.59-60.



처음부터 논의의 대상이었다. 첫째 방안인 동부독일방송의 설립은 몇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제시되었다. 즉 현재 방송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활용할 수 있다는 점, 동독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 그리고 구동독 방송을 정화시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⁵⁶ 이를 통해 전국 단위 제3공영채널로 동독의 문화정체성 중심 역할을 수행케 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방송개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서독 정부가 지향하는 방송정책의 기본 원칙은 방송 권한을 각 주정부의 소관으로 넘기고, 연립적 방송구조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서독에서는 주 단위로 방송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민영방송이 허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견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부합되는 두 번째 방안이 처음부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방송통합의 두 방향, 즉 서독 방송제도의 이식을 기반으로 통합을 지향하는 서독 정부의 관점과 동독문화의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송정책을 선호하는 동독 국민들의 개혁노선 중에서 서독이 주도하는 통합 방안이 관철되었다. 이는 방송정책이 두 가지 핵심요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철됨을 의미한다. 즉 기존 동독 국영방송시스템의 전면적 해체 및 서독 이원방송제도의 이식이다. 한마디로 방송개혁의 방향은 기존의 동독 국영방송을 서독의 공영방송시스템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각 주 단위의 공영방송사를 설립함을 의미한다. 동독 국민들은 동독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단일 공영방송사의 설립을 희망했으나 무산된 것이다. 즉 동독 주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보다는 서독 정부가 주도하는 방송정책이 관철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방송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보다는 서독에 의한 동독 방송의 흡수통합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동독

⁵⁶ 앞의 책, pp.60-61.

고유의 방송문화는 계승되지 못하였다.⁵⁷

동독 방송의 개혁은 먼저 동독 방송의 해체를 전제로 하는데, 서독 정부는 이를 위해 서독 출신 방송특임관, 루돌프 뮐펜츨(Rudolf Muehlfnzl)을 임명하였다. 그에게는 1991년 12월 말까지 방송개혁을 완료해야 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서독 정부의 기본입장은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방송질서를 수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송시장을 흡수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해체된 동독 방송은 서독 공영방송 채널로 전환되었다. 제1TV인 DDF1은 각 주정부에 위임하고, 제2TV인 DDF2 채널은 ARD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서독 ZDF 공영방송을 위해 제3 지상파채널을 새로 배정하였다. 그리고 동독 시절 라디오 및 TV 인력 11,200명과 우정성 소속 기술직 직원을 모두 합치면 14,000여 명에 달했는데, 이들 방송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하였다. 즉 1/4 정도만 지역 공영방송사에서 고용승계토록 하였다.

한편 상기와 같은 방송통합의 결과로 등장한 동독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시되었다.⁵⁸ 첫째, 공영방송은 사회통합적 기능보다는 동독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한다. 둘째, 방송의 주도권을 서독이 독점 행사함에 따라 동독인의 상실감이 커졌다. 셋째, 장기간 분단에 따른 상호 이질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넷째, 주로 동독 체제의 붕괴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다루어 융합과 통합의 역할에는 소홀하다. 다섯째, 동독 지역공영방송사 경영진이 서독 출신으로 채워져 동독지역 주민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여섯째, 동독 문제를 주로 과거청산에만 치중하였지, 사회적 통합 차원에는 소홀히 하여 동독인들로부터 외면 받았다.⁵⁹

이에 따라 동독 방송의 개혁은 단지 서독 방송에 의한 흡수 통합을 의미

⁵⁷ 이우승(2004). 분단국의 방송교류. 커뮤니케이션북스. p.238.

⁵⁸ 앞의 책. pp.242-244.

⁵⁹ 이우승(2005). 통일방송론, 한울아카데미. pp.279-280.



한다. 즉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동독 방송시스템을 해체하고 서독 방송시스템을 이식하였지, 문화적 관점에서 동독 시민들에 대한 문화적 배려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 서독 방송문화가 그대로 동독 주민에게 주입되는 방송정책은 동독인들에게 이질감을 심어 주고 공영방송 시청거부로 나타나게 되었다.

3) 구동독 언론시장의 특성

(1) 신문시장의 집중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일 신탁청 매각정책에 따라 동독 신문시장은 국가 소유에서 민영구조로 일대 변혁이 이루어졌으나, 이로 인해 신문시장의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어 다양성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독 신문시장의 집중화 현상은 신탁청의 매각과정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히 진행되었다. 따라서 동독지역 신문집중화의 원인은 기존의 시장질서가 급격하게 변화 내지는 붕괴되는 과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⁶⁰ 현실적으로 동독 신문 집중화는 서독 거대 일간신문 그룹이 신문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을 뜻한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전국신문은 단 두 개만 살아남고 모두 폐간되었다. ‘Neue Zeit’, ‘Bauern Echo’ 등은 폐간되었고, 150만 부를 발행하던 ‘Junge Welt’도 1995년 20만 부로 급감하면서 폐간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이렇듯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신문이 대규모로 폐간된 이유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⁶¹

첫째, 서독 거대 언론기업들이 주도한 무한시장경쟁에서 대다수 신문들은 살아남지 못하였다. 무한경쟁은 신문구독시장에서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고,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 신문들이 대거 퇴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동시

⁶⁰ Tonnemacher, Jan(1996). Kommunikationspolitik in Deutschland, Konstanz. p.108.

⁶¹ Puerer, H. & Raabe, J. (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454 ; Meyn, Hermann(1999). Massenmedi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Colloquium. p.150.

에 동독 광고시장 규모의 협소함도 수익구조를 악화시킨 주요 요인에 속한다.

둘째, 대부분의 동독 일간신문사들은 자체 인쇄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등 매우 열악한 발행환경에 놓여 있었다. 더구나 신탁청은 신문사와 인쇄시설을 함께 매각하여 다수 중소 신문사들은 공산당 계열 신문사의 인쇄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독 신문사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신문을 발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정해진 발행시간에 신문이 발간되지 못하여 시사성이 떨어지거나 막대한 운송비용, 인건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동독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특정 거대 지역신문의 유통망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독자들도 이러한 신문문화에 익숙한 구독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 창간된 신생 신문들의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는 등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었다.

동독 신문시장의 집중화는 신문 수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한다. 통일 직전 동독 일간신문은 37개였다가 통일 직후 1991년 42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불과 1년 후인 1992년에는 29개로 급감하였고, 다시 1995년에는 21개로 감소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들 21개 일간신문의 구성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구공산당 소유 지역신문이 14개를 차지한다.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것은 통일 후 서독 신문들이 발간하던 동독 지역판 발행을 중단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총 발행부수 450만 부 중 거의 90%에 육박한다(베를리너 차이퉁(Berliner Zeitung) 포함). 두 번째로는 베를리너그룹(Berliner Verlag)이 소유한 2개의 신문, 즉 베를리너 차이퉁(Berliner Zeitung)과 베를리너 쿠리어(Berliner Kurier)를 들 수 있다. 세 번째 신문은 구블록정당 신문이었던 튀링기슈 란데스차이퉁(Thuringischer Landeszeitung) 및 용에 벨트(Junge Welt)가 있다. 애초 블록정당 신문은 14개였는데 13개가 폐간되고 하나만 살아남았다. 그 밖에 구공산당 소유 전국신문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 신생 신문 쥐드튀링어 차이퉁(Suedthuringer Zeitung), 세르비안 소수민족 신문 세릅스케 노비니



(Serbske Nowiny)로 구성되어 있다.⁶²

동독지역 집중화현상이 초래하는 구체적인 문제로는 무엇보다도 다수 신문에 의한 저널리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독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단지 하나의 신문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을 낳아 결국 저널리즘의 다양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지역신문의 2/3 정도는 구공산당 지역신문들이 독점 지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독지역에서는 신규 신문의 시장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2) 구동독의 미디어 수용 특성

통일 이후 동서독인의 미디어 이용습관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공영방송 ARD/ZDF의 ‘2015년 장기 매스미디어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동독인과 서독인은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동독지역 주민은 서독지역 주민에 비해 일상적으로 신문방송을 더 많이 애용하는 반면, 인터넷과 서적 및 잡지는 서독인이 동독인보다 더 많이 이용한다. 특히 동독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서독인들에 비해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많이 이용한다. 텔레비전의 경우, 서독인의 텔레비전 시청비율은 78.2%인데 비해, 동독인들은 이보다 7.2% 높은 85.4%에 달했다. 라디오도 이와 비슷하여 서독인과 동독인의 청취율이 각각 72.4%와 81.1%로 8.7% 격차를 보였다. 이처럼 서독인에 비해 동독인이 높은 TV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동독 주민의 가계수입이 낮고, 대안적 여가활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높은

⁶² Puerer, H. & Raabe, J. (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p.457.

노년층 분포 등이 높은 시청률로 이어진 것으로 인식된다.⁶³

신문구독의 경우, 동독인(35.5%)이 서독인(32.8%)에 비해 2.7% 더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나 방송매체보다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다. 하지만 동서독 모두 전체 국민의 1/3명 정도만 신문을 읽는 것으로 나타나, 분단 이전 동독인들의 신문구독률이 매우 높았던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신문을 제외한 잡지 및 서적 등 인쇄매체의 경우, 서독 주민들의 이용률이 동독 주민 이용률을 상회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률에 있어서도 서독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 평균 이용률은 46%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이와 같이 동독 주민들의 높은 신문방송 매체 이용도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용도가 높은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정보전달 및 여론형성 기능을 통해서 정치적 통일 이후 동서독 간의 내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표 1-9) 통일 이후 동·서독인의 일일 미디어 이용 현황(2015년)

(단위 : %)

미디어 유형	서독*	동독*	동서독 차이
TV	78.2	85.4	7.2
라디오	72.4	81.1	8.7
신문	32.8	35.5	2.7
인터넷	46.4	42.7	-3.7
CD/카세트	16.4	16.9	0.5
서적	18.2	16.0	-2.2
잡지	6.6	5.7	-0.9

* 서독에는 서베를린, 동독에는 동베를린 포함.

**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서독지역 3,544명, 동독지역 756명, 총 4,3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출처: Frey-Vor, G. & Mohr, I. (2015). 25 Jahre Deutsche Einheit-Fernsehnutzung in Ost und West. Media Perspektiven, p.456.

⁶³ Frey-Vor, G. & Mohr, I. (2015). 25 Jahre Deutsche Einheit-Fernsehnutzung in Ost und West. Media Perspektiven, pp.468-469.

(3) TV 시청시장 특성

표 1-10) 동서독지역 텔레비전 시청률 추이 비교(1994-2014년)

구분	채널	서독지역			동독지역		
		1994	2014	증감 (1994- 2014)	1994	2014	증감 (1994- 2014)
공영 채널	ARD	17.5	13.0	-4.5	12.5	10.8	-1.7
	ZDF	18.1	13.7	-4.4	13.5	11.7	-1.8
	ARD3	8.7	12.0	3.3	9.9	13.8	3.9
상업 채널	RTL	16.6	10.2	-6.4	20.1	10.6	-9.5
	Sat.1	14.1	7.8	-6.3	17.0	9.2	-7.8
	ProSieben	8.6	5.8	-2.8	12.1	4.7	-7.4

출처 : Frey-Vor, G. & Mohr, I, (2015). 25 Jahre Deutsche Einheit-Fernsehnutzung in Ost und West. Media Perspektiven, p.461. 재구성.

한편 매스미디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텔레비전 수용에 관한 동서독지역의 비교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준다. 일반적으로 독일 텔레비전시장은 공영채널 3개, 상업채널 3개가 시청시장을 양분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표 1-10>은 통일 이후 20년 동안의 시청시장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우선 199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서독지역은 공영채널이 상업채널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비해, 동독지역은 공영채널보다 상업채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 이유로는 우선 통일 후 공영채널의 기간망 구축 및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상업채널은 위성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였다. 또 다른 이유는 통일 직후 동독 시민들의 공영채널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는 점이다. 동독 주민들에게 공영채널은 서독인에 의한 서독인을 위한 방송처럼 각인된 측면이 강했다. 그 밖에 동독 시청자들의 수요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채널 편성정책의 성공을 들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독재 권력 체제에서 살아온 동독인들에게 자본주의 상업방송이 전해주

는 현란한 소비문화는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2014년 시청률 추이는 1994년에 비해 뚜렷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무엇보다 동독지역 상업채널의 시청률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14년에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3대 상업채널 시청률의 합이 1994년 49.2%에서 2014년 24%로 반감되는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이에 반해 공영채널 시청률은 오히려 높아져 대조를 이룬다. 이에 따라 2014년 상위 시청률 순위는 ARD3, ZDF, ARD 순으로 모두 공영방송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공영채널의 송신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질적 서비스의 제고에 힘입어 동독 시청자들의 신뢰도가 꾸준히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통일 직후 공영방송에 대한 동독인들의 불신과 반감이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어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현상은 지역 공영채널 시청률의 증가이다. 이는 지역 공영방송이 다른 채널에 비해 지역 관련 뉴스 및 정보제공 등 지역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한 결과로 이해된다. 특히 동독지역 국민들은 지역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일상적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자신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매체로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정보매거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기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 2014년 시청률조사에서도 지역공영채널이 1위를 차지하여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Frey-Vor & Mohr, 2015, 462).⁶⁴

(4) 구동독 미디어수용의 특성

이상에서 살펴본 점들을 토대로 동독인들의 미디어수용에 관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동독인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거부감 정서가 강했다. 통일 이후 동독인들은 공영방송 ARD, ZDF를 통일독일의 방송이라기보다는 서독

⁶⁴ Frey-Vor, G. & Mohr, I. (2015). 25 Jahre Deutsche Einheit-Fernsehnutzung in Ost und West. Media Perspektiven, p.462.



방송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 공영방송은 교육적, 계몽적 차원에서 동독문제를 다룬다거나, 서독 방송인들에 의한 보도는 부정확하고 편향된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뉴스정보를 내 보내는 공영방송에 대해 동독인들은 심한 거부감을 표출해 왔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바뀌어 최근에는 신뢰하는 매체로 공영 채널이 자리매김되고 있다. 반면 상업채널의 위상은 정반대로 크게 위축되었다. 즉 통일 직후 RTL, Sat.1 등 상업채널의 선호도는 공영채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으나, 2014년 조사결과는 위상이 뒤바뀌는 현상을 보여준다. 통일 직후와 20여 년이 지난 최근의 동독인 인식이 크게 변화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독인들의 신문구독에 있어서도 특징적인 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서독 정론지보다 구동독 신문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나 지역신문을 구독하는가 하면, 서독 대중신문 및 잡지를 즐겨보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런 현상을 동독인들의 '이중적 여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⁶⁵ 이에 따라 쥐드도이체 차이퉁(Sueddeutsche Zeitung),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같은 서독 저명 신문들은 동독시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신문들이 서독 중심으로 보도하고 동독 주민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위주로 전달하기 때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견해는 주로 1990년대에 제기된 것으로 그동안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미디어 수용행태에 있어서는 여전히 동서독 분단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통일 후 동독지역의 방송과 신문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방송은 철저히 구동독 방송시스템의 해체 및 단절을 기반으로 서독 방송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비해, 신문은 과거 동독시스템이 어느 정도 유지 및 지

⁶⁵ Stolte & Rosenbauer(1995). "Die doppelte Oeffentlichkeit. Zur Ost-Studie der ARD/ZDF-Medienkommission" Media Perspektiven.

속되어 왔다. 이는 동독 방송이 철저하게 전체주의적 국가통제조직의 하부 시스템으로 작동되어 왔던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통일과 함께 완전히 새롭게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동독 국영방송은 서독 공영방송시스템에 의해 수용되고 탈바꿈되었다. 따라서 서독 전국채널 ARD, ZDF는 서독의 정치문화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위주로 보도 및 편성하여 동독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비해 신문은 소유구조는 바뀌었지만 과거 동독 언론문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구조를 견지하고 있고, 이윤추구를 기반으로 하는 속성상 동독 독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전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오랜 전통을 갖고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구동독 신문들은 서독 신문에 비해 지역민들의 정서를 파악하여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는 데 충실한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동독 신문은 방송에 비해 동독인들을 더 잘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통일과 언론 관련 국내 연구 및 정책방안

제1절 통일과 언론 관련 연구 현황

1. 독일 통일언론 사례 연구

통일과 언론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독일 통일언론에 대한 연구, 독일통일을 한국통일과 연계하여 고찰한 연구 그리고 남북통일과 언론에 관한 연구 등이다.

우선 독일통일과 언론에 관한 연구성과는 1990년 동서독통일 직후에 집중되어 제시되었다. 먼저 ‘독일통일과 언론(한국언론연구원, 1990)’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제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이후 독일 통일언론에 대한 세분화된 논의 및 성과들을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은 1995년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한국언론연구원)’에 집약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동서독 국가정책 관점에서 언론정책을 분석한 연구로 방정배(1995)는 서독의 자유민주적 언론정책은 공산 독재 권력의 유지수단으로 기능하는 동독 언론정책보다 우월하고 민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일통일에 서독 언론이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또 통일 이후 독일 언론 변화에 대한 연구 성과로 김택환(1995)은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언론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외적 환경 변화와 언론 내적 정책 및 구조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동독 미디어의 내용변화와 수용행태를 평가하였다. 핵심 연구결과는 동독인들은 서독 언론인에 의한 보도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으로 인해 구동독 언론 체제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동독 언론인들은 동독 주민들의 대변인이자 교육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는 평가도 주목을 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었지만 경제적, 저널리즘적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자유권이 실질적으로 온전히 향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독일통일과 관련한 신문방송의 보도 및 정책에 대한 분석성과로 강태완(1995)은 동서독 신문의 통일정책과 보도경향을 평가하였다. 강태완은 통일 전 동서독 신문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 통일 관련 역할을 평가하였다. 서독 언론은 다원적, 민주적 여론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언론정책으로 동독 언론정책을 포용하면서 통일에 기여한 반면, 동독은 언론통제로 인해 민주적 여론형성 및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 실패하였고 이것이 체제 붕괴로 이어졌다고 본다. 이에 비해 김광호(1995)는 독일통일 전후 과정에서 방송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통일 전 방송개방으로 동독 주민들은 서독 방송을 지속적으로 시청할 수 있었다는 점과, 서독 방송이 서독 사회와 동독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동독인들의 신뢰를 받았다는 점이 빠른 통일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독립된 연구주제로서 독일통일과 언론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독일통일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조명된 김영욱·심영섭(2011)의 연구는 예외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통일과 언론 전반에 대해 성찰적으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통일 전 및 통일 후 동서독 언론에 관해 평가하고 있다. 분단시기 폐쇄적 동독 언론시스템은 동독 주민들의 자유언론에 대한 욕구로 분출되었고, 서독 방송개방 및 서독 특파원 보도를



기반으로 한 서독 언론은 동독인들의 통일의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본다. 나아가 전환기 동독에서는 언론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통일 이후 서독 미디어 체제에 일방적으로 편입되어 동독 고유의 언론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통일 전 서독 언론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통일 이후 언론재편 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부작용을 낳았다고 본다.

한편 같은 분단국으로서 독일과 한국의 통일언론을 비교하는 연구성과도 제시되었다. 먼저 김정기(1995)는 거시적 차원에서 서독과 한국의 정치와 언론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정치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서독은 ‘열린 정치커뮤니케이션 체제’를 기반으로 ‘동방정책’이 제도화되어 통일로 이어지는 결과를 산출한 반면, 한국은 ‘닫힌 정치커뮤니케이션 체제’로 ‘북방정책’이 제도화되지 못하였고 통일에 기여하는 데에도 실패했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양국 통일문제에서 독일에 비해 한국의 정치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해 통일언론 논의를 방송 분야에 한정하는 연구 성과들도 나왔다.⁶⁶ 이는 국경을 넘는 방송의 매체적 특성과 관련 신문에 비해 방송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독일경험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연구가 집중된 것이다. 이우승(2004)은 통일언론의 범위를 방송교류로 좁혀서 동서독 방송교류의 경험을 토대로 남북한의 방송교류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즉 분단국이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하는 양국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독일방송이 어떻게 통일에 기여했는지, 남북한 방송교류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방송교류는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 방송산업적 교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의 방송교류가 산업적 관점에서 상호 상생적 관계로 지속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⁶⁶ 이정춘·전석호(1991), 분단국의 통일과 방송정책, 청림 ; 이우승(2004), 분단국의 방송교류, 커뮤니케이션북스.

2. 남북한 통일언론 관련 연구

한편 독일통일을 계기로 시작된 우리나라에서의 통일과 언론에 대한 연구도 다각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먼저 통일 및 북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들이 다수 제시되었다.⁶⁷ 1980년대 말까지 대북 관련 언론보도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언론의 북한 부서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기에는 정부의 대북 정보공개의 미온적 태도 및 정부의 의도에 따른 정보 통제 등이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내적으로는 전문 기자가 부족하고 언론인의 반공 이데올로기적 성향, 언론사의 상업주의적 속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⁶⁸ 과거 대북보도의 경향은 불신감을 바탕으로 한 적대적이고 반공노선에 따른 북한 깎아내리기나 매도 등 부정적 태도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평가한다.⁶⁹

이에 비해 언론환경 변화에 따라 대북 관련 언론보도는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이후에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상응하여 언론의 북한보도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김영옥·김택환(2000)은 정확성, 객관성 등 독일 언론의 통일 관련 보도의 시사점을 토대로 남북문제 보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을

⁶⁷ 이성춘(1995). 남북한 신문의 남북한 보도 분석, 한국언론연구원.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pp.331-381. ; 김정탁(1991). 언론인의 북한관 및 통일관 의식조사 조사연구 : 언론인의 의식조사. 언론연구원 ; 안춘옥(1991). 남북한 언론보도의 제 문제 : <남북한언론보도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의하면서, 언론연구원 ; 김경희·노기영(2011). 한국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 도정은·나은경(2014). 북한 관련 언론보도의 메시지 해석수준 및 수용자의 시간적 거리감이 통일에 대한 태도와 전쟁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8권 1호 ; 홍성기·하태경·손광주·이종철(2011). 북한 관련 뉴스보도 현황 연구: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인권 및 안보 관련 뉴스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화행·정성호·강경수·이정기(2014). 통일과 언론: 통일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⁶⁸ 김정탁(1991). 언론인의 북한관 및 통일관 의식조사 조사연구 : 언론인의 의식조사. 언론연구원.

⁶⁹ 이성춘(1995). 남북한 신문의 남북한 보도 분석, 한국언론연구원.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pp.331-381.



기준으로 북한 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연구⁷⁰ 및 텔레비전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⁷¹

남북통일을 위해서 언론, 특히 방송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 성과들도 눈에 띈다. 박종수·윤창빈(1999)은 언론 전반의 남북한 교류, 특히 김대중 정부의 언론교류 정책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방송 분야 연구성과로는 분단과정에서 방송의 역할과 교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찰한 연구,⁷² 남북한의 영상교류와 제작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한국방송진흥원, 1999), 통일 관련 남북한 방송의 역할과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⁷³ 방송제작자의 통일인식에 관한 분석,⁷⁴ 남북한 통일 이후 방송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한국방송개발원, 1994)⁷⁵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연구 성과들은 실제 방송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것으로 다분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

그 외에 북한 언론에 관한 관심도 통일담론 분위기에 편승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에는 북한 고유의 매스미디어의 특성, 역할,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연구,⁷⁶ 북한사회를 지배하는 소통구조는 매스미디어에 의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외에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지배하고 있음

.....

⁷⁰ 주창윤(2000). 북한 관련 보도의 반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방송진흥원.

⁷¹ 박주연(2012).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상파 텔레비전 정규 프로그램 연구, KBS의 <남북의 창>과 MBC의 <통일전망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 박주연(2013). 텔레비전 방송의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 편성추세 연구, <사회과학연구> 29권 3호.

⁷² 유동희(1996). 남북 방송교류의 전망과 통일방송의 기능, 문화방송 통일문제연구소 ; 유재천(1997). 분단과정에서의 방송: 통일지향적 역할 증대 방안. 문화방송 통일문제연구소. 분단국 통합과 방송.

⁷³ 이우승(2005). 통일방송론, 한울아카데미.

⁷⁴ 배진아·곽정래·윤석민(2009). 방송의 통일이념 실천에 관한 주요 관계자의 인식. <한국방송학보>. pp.126-165.

⁷⁵ 한국방송개발원(1994). 통일에 대비한 방송 체계 연구: 1단계 방송망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94-14.

⁷⁶ 강현두(1997). 북한 매스미디어론, 나남 ; 고유환·이주철·홍민(2012). 북한 언론현황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을 분석한 연구,⁷⁷ 남한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경로 및 수용현황에 대한 분석⁷⁸ 등이 있다. 이들은 폐쇄사회인 북한 언론현상의 전모를 보여 주지는 못하지만, 단면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통일언론 관련 연구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통일과 언론 관련 국내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독일통일과 언론에 대한 국내연구는 독일통일 직후인 1990년대 초에 활발하게 전개되는 단발성 차원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후 남북 통일언론에 대한 논의가 이어서 전개되었지만 독일통일 사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미약하다. 또한 통일언론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것이 아니라, 국내외 정치적 환경에 따라 활성화되거나 단절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둘째, 독일과 한국 사례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나 논의가 부족하다. 1990년대 독일통일과 한국언론을 연계한 연구성과는 이후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동서독통일 경험사례와는 무관하게 남북관계 차원에 한정된 언론연구들이 산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셋째,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언론교류 및 통일언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담론만 양산되는 측면이 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남북한 사이의 언론교류나 통일에 관련된 실질적인 진전은 크지 않으며,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언론보도도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언론에 대한 연구담론은 새로운 성과를 산출하기보다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 측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넷째, 매체정책적 담론에 치중한 연구가 지배적이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

⁷⁷ 이호규·곽정래(2012). 북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미디어. 한국언론진흥재단.

⁷⁸ 이호규·곽정래·신미녀(2015). 북한 내 한국 미디어 콘텐츠 수용실태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보다는 유관 연구기관 중심으로 대북정책과 연관된 맥락에서 언론정책을 제시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선영·전효관(2000)은 이러한 통일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매체정책 중심의 접근이나 통일문제를 남북 동질성에 기반하여 접근하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통일언론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론적 담론을 양상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통일언론 담론이 동서독의 통일 분위기 속에서 확산된 것과 관련된다고 본다. 또한 통일연구 담론이 개별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부 유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성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로 인해 비판적 시각보다는 낙관적 시각으로, 부정적 관점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통일과 언론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여섯째, 매스미디어에 국한된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데 그치고 있다. 통일은 언론 외에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의 산물이다. 즉 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요인과 외적으로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환경이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려하는 거시적 관점의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일곱째, 독일 사례를 객관적으로 분석 제시하는 데 그치기보다 한국적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재평가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동일성과 차이성이 보다 분명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독일경험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 방송질서는 독일과 같은 공·민영 이원적 시스템이지만, 실제 운용면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방송교류나 통일 후 방송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긴요하다고 본다.

제2절 남북한 언론교류 및 정책방안

1. 언론교류의 역사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남북 통일언론 및 언론교류는 정치적 대북정책의 노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개되어 왔다.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은 크게 두 시기, 즉 북한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단계와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분단 이후 1960년대 말까지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시기로 좌우 이데올로기 및 ‘반공통일’을 지향하는 정치적 환경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과의 언론교류는 원천봉쇄 되었었다. 반면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정부의 ‘평화통일구상선언’을 계기로 북한을 단독국가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언론교류 분위기도 개선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까지 실질적 언론교류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북한의 국명 또는 권력자들에 대한 호칭 사용 등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기도 하였다. 실질적인 언론교류는 200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정권별 언론교류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언론교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구체적인 언론교류보다는 이를 위한 정치적 환경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72년 7월 4일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남북한 불가침협정체결(1974년 1월)’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평화통일외교정책’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74년 8월)’을 발표하여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전두환 정권은 남북 관련 정책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오히려 북한 관련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강한 보도지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북괴 중앙통신, 방송, 신문 등 선전매체들의 발표 또는 보도하는 내용은 일체 내외통신 보도만 신는다. 북괴 매체들



의 보도 또는 논설내용을 일본신문 등 외신보도기관들이 보도한 것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긴박한 상황과 관련, 외신보도를 인용 보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문공부와 사전에 협의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언론기관이 진다”(유재천, 1997 재인용).⁷⁹ 이 시기 남북관계, 통일정책, 북한 관련 보도 등에 관한 언론통제는 문화공보부를 통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노태우 정권은 이른바 ‘북방정책’ 차원에서 남북개방정책을 지향하고 언론교류에 적극적이었다. 먼저 7.7선언(1988년 7월 7일)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6개항의 정책을 제시했다. 그중 언론교류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 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고 선언하여 남북 간 언론교류가 시작될 수 있었다. 둘째, 북한 언론자료를 개방하고 실질적 방송교류를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 노동신문과 TV 영상자료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보도사진으로 게재토록 허용하였다. 또 1991년 최초로 남북한 축구경기를 생중계하기도 하였다. 셋째, ‘남북교류협력합의서(1992년 9월)’를 체결하여 언론 분야의 교류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이에 따라 신문, 방송 등 언론 분야의 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이 가능해졌고, 언론인 및 언론단체의 교류와 미디어 기술협력 등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남북언론교류로 이어져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노태우 정부는 ‘북한 및 공산국가에 관한 보도요강(1988년 9월 8일)’ 등을 통해서 언론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협조 및 동조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는 등 언론교류에 일정한 한계를 그었다.

본격적인 언론교류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

⁷⁹ 유재천(1997). 분단과정에서의 방송: 통일지향적 역할 증대 방안. 문화방송 통일문제연구소. 분단국 통합과 방송. 재인용.

현 정부까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 15일)은 언론교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 방송교류가 활성화되어 지상파 방송에서 북한영화가 최초로 상영되는 등 북한 프로그램을 남한 시청자들이 접할 수 있었다. 언론 분야 교류도 활발해져 남북한 취재보도가 가능해져 1998년 국내 언론사들의 방북취재가 활기를 띠었다. 또 언론인교류 차원에서 ‘남북언론인대회(2006년 11월)’가 금강산에서 개최되어 상호 간 민족분열적 보도를 금지하는 등 공정보도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 언론교류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예컨대 2007년 ‘평양 남북언론인 모임’에서는 남북 편파 왜곡보도 방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 언론관계는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및 천안함 사건 등이 발생하였고, 국내적으로는 보수정부의 집권으로 인해 대북 민간 및 언론교류 전반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교류 관련 2009년 통일부는 남북 간 기사교류를 불허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이는 2008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에서 남북 사이에 언론 기사를 교류하기로 합의했던 사항이었다. 이러한 경색된 언론교류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북 언론교류의 역사는 무엇보다 집권 정부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되었다. 이승만 정권 이후 1960년대 말까지는 사실상 교류가 전무한 상태였고, 박정희 정부에서는 직접적 언론교류보다 정치적인 교류 분위기가 개선되었다. 그 후 노태우 정부에서는 사회주의권 붕괴 및 동서독통일의 분위기에 따라 전개된 ‘북방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인 언론교류를 시도하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남북 언론교류는 동서독 언론교류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남한의 경우 언론교류 정책이 지속적,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온 서독의 사례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 예컨대 서독의 '동방정책'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속된 것과 남한의 '북방정책'이 단절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극복하지 못한 차원에서 제한적인 틀 내의 언론교류 정책에 그치고 있다. 남북한과 동서독 사이의 이데올로기 대립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동서독은 이를 넘어서 교류를 강화하려고 노력한 데 비해, 남북 간 교류는 이에 종속된 상태에서 교류를 추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반공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언론교류를 크게 제약하여 왔다. 이데올로기적 분단 및 6.25전쟁을 겪은 남한사회는 반공을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삼아 북한과의 교류 폭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남북은 상호 방송수신이나 주재 특파원제도 같은 높은 단계의 언론교류는 경험하지 못하고 '낮은 교류' 수준에 머물러 왔다. 반면 독일은 상주 특파원제도, 방송개방 등 개방적 교류관계가 지속되었다. 여기에는 영토를 남북으로 길게 가르는 동서독 국경선과 동독 속의 섬처럼 위치했던 서베를린의 지리적 환경이 언론교류(방송수신 및 개방)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차이들로 인해 차후 한반도통일이 달성된 이후에도 내적 통일과정은 독일보다 더욱 큰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어떠한 방식이든 통일은 결국 양국 간 외적 및 내적 간극을 없애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2. 남북 언론교류 방안

남북한 언론교류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단일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기여토록 하는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다각적인 언론행위를 언론교류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일상적인 언론보도 행위도 통일언론교류의 중요한 영역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러한 보도행위는 남북한 간의 쌍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남한 혹은 북한 언론의 단일행위라는 측면에서 소극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남한과 북한의 상호관계적 언론교류 행위는 적극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론교류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적 측면과 개별 언론사 차원의 정책방안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주로 언론교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 남북 언론교류의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북한 언론 및 영상물을 특수자료에서 제외시킨다거나, 언론교류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적 임무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하에서 신문과 방송매체는 자신의 이해관계나 결정에 따라 북한과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다.

먼저 소극적 차원에서 볼 때, 남북 언론교류는 일상적인 대북 관련 보도의 개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방송 보도가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적대성 및 이데올로기성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북한 관련 언론보도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이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점철되어 왔다. 남북의 평화공존에 기여하기보다는 ‘전쟁 저널리즘’(김영욱, 2017)⁸⁰에 입각한 보도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고,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들을 동일한 민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특히 독일 사례를 비추어 통일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

⁸⁰ 김영욱(2017). 통일과 저널리즘. 서독 언론의 동독 보도에서 얻는 교훈.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발표문.



성 회복 및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나아가 대북 및 북한 관련 보도는 내국인뿐 아니라 북한 주민 및 탈북자들도 잠재적 수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 매스미디어의 남한 관련 보도가 정확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북한 관련 보도내용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정확히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은 남한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분단 독일의 사례에서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즉 서독 방송을 시청했던 동독 주민들은 자신들에 대한 서독 방송의 정확성, 객관성을 보고 서독 언론을 신뢰하게 되었다. 상호 언론수용이 차단된 남북관계의 경우, 북한 주민들은 탈북자를 거쳐 남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매스미디어가 탈북자 및 북한에 관해 부정확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보도를 한다면, 이것이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차후 통일과정에서의 부정적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언론보도의 개선 차원에서 보도대상을 북한까지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북한에 관한 보도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정치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언론을 통해 전달해 주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잠재적 수용자를 북한 주민까지 상정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날씨 프로그램 예보를 북한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남북 수용자들에게 현실적, 실용적인 차원에서 기여토록 하는 한편, 의식적인 차원에서 남북한이 하나라는 동질감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남한의 중앙집중적 방송구조는 서독의 지역 공영방송 중심의 연립주의적 방송제도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테면 통일 전에는 대북 관련 언론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내적 및 사회적 통합의 매개체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중

양집중적 방송구조는 이를 운영하는 주체의 관점이 일방적으로 전달되어 진정한 통합을 저해할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 이를테면 남북통일 후 남한의 KBS가 북한지역까지 흡수·통합하여 중앙집중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의견 및 정서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북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상을 기반으로 대북 관련 바람직한 언론보도의 방향을 정리하면,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보도,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보도,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보도, 통일기반의 구축에 기여하는 보도, 흥미위주보다는 내실 있고 심층적인 보도, 북한 비난 및 깎아내리기 같은 부정적 보도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은 궁극적으로 남북 간 상호 이질성을 해소시키고 동질성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1995년 8월 언론 3단체가 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보도제작준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존중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대국의 국명과 호칭을 있는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1조)”는 과거의 적대적 보도를 지양하고 향후 전향적인 보도에 대한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상기한 북한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언론사만의 책임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 차원의 대북정책 및 언론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선 북한 관련 정보 및 자료는 오랫동안 정부가 독점해 왔다. 따라서 언론은 관련 정보를 정부로부터 받아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둘째, 대북 관련 정부정책의 비판적 보도는 ‘국가 보안법’ 등을 근거로 친공좌익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언론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보도 대신 당국과의 협의나 승인을 거쳐 보도하는 관례를 낳았다.⁸¹ 적어도 북한 관련 언론 보도는 언론의 자유가 크게 제약을 받는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⁸¹ 이성춘(1995). 남북한 신문의 남북한 보도 분석, 한국언론연구원.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pp.331-381.



한편 위에서 살펴본 소극적 언론교류와는 달리 적극적 언론교류는 제반 제도적 차원의 관계수립을 통한 교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할 경우, 남한 단독으로라도 언론교류 및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차후 일어날 급작스런 상황변화에도 대비가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분단기 언론교류는 동서독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문 등 여타 미디어보다는 방송, 특히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방송은 국경을 넘어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중적 영향력이 매우 크며, 빠른 전달과 강력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언론교류는 몇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⁸²

우선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정보 및 방송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는 것이다. 신문의 기사나 사진을 교류하거나 영상물의 교류가 이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서로 이질적인 사회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하는 등 사회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특히 방송 프로그램은 제작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양질의 완성품을 구입할 경우 경제적 효과도 크다. 두 번째 단계는 상호 취재지원 및 제작지원을 하거나, 공동취재 및 제작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호 국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긴밀한 관계를 맺거나, 단독으로 취재 및 제작이 어려운 상황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방송영상물의 경우 상호협력을 통해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상주 특파원제도를 만들거나 방송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분단 상황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언론교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동서독이 이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다가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언론개방 단계는 정치적으로는

82 이우승(2005). 통일방송론, 한울아카데미.

서로 독립된 국가이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동질감과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의 교류가 성사된다면 통일을 앞당기거나 분단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표 1-11) 언론교류 3단계 방안

	신문기사 및 방송 프로그램 교류	취재·제작지원 및 공동취재·공동제작	상주 특파원 및 방송전파 개방
낮은 교류 단계	○	×	×
중간 교류 단계	○	○	×
높은 교류 단계	○	○	○

남과 북이 서로 상대국에 특파원을 상주시키는 제도는 언론 분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주 특파원제도는 쌍방의 상호 신뢰와 지속적인 교류의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972년 이후부터 시작된 동서독 간의 특파원 교류제도가 하나의 사례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북한의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으로 당분간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단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우선 주재기자 대신 일시적 취재를 허용하는 방문기자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대표적인 한 두 개 언론사를 상호 주재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를테면 공영방송 KBS와 북한의 조선중앙TV 특파원을 상대국에 상주시켜 교류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높은 수준의 언론교류는 정치적 화해관계를 전제로 가능하다.

남북이 상대국 방송수신을 허용하는 방안은 언론교류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실현되기 힘든 교류이며, 통일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 방송수신이 이루어지면 정부 차원의 정보통제가 약해지고 국민들이 직접 상대국의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동서독통일에서도 상호 방송개방의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⁸³ 따라서 북한 정권은 방송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수하여 왔으며, 조만간 지상파 및 위성방송의 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게 보인다. 다만 CD, DVD, USB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영상물이 인기리에 북한에 유통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⁴ 동서독이 전통적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교류하였다면, 남북한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비공식적 방식으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언론, 특히 공영방송은 통일과 민족화해에 기여하도록 임무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남북 간의 적대적, 갈등적 보도를 지양하고 남한과 북한이 상호 공존하고 화합토록 하는 데 언론이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이미 독일 공영방송 ZDF를 위시하여 언론법에서 제시된 사례가 있다. 구체적으로 ZDF 설치법에서는 방송이 평화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독일통일과 민족화해에 기여토록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언론교류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그동안 언론에 관한 인적, 물적 교류제도가 모색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0년 초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실질적 언론교류를 위한 초석이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받고 역할수행에 있어서 자율성이 제약을 받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⁸³ 김영욱·심영섭(2011). 통일과 언론: 독일의 경험, 언론재단 연구서 2011-08, 한국언론진흥재단.

⁸⁴ 이호규·곽정래(2012). 북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미디어, 한국언론진흥재단.

1) 남북 언론교류의 문제점

기존 남북 언론교류상의 문제점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북 언론교류는 아직도 초보단계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독의 언론교류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언론교류는 앞서 제시했듯이 다단계적인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방송 프로그램 교류, 방문취재, 생방송 등 일시적 또는 일회적 교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양국이 특파원을 상주시킨다거나 전면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직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간 방송개방이 이루어져 수신이 자유로워지는 상태가 실현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둘째, 집권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언론교류가 좌우된다. 즉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 맥락에서 언론교류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남북 언론교류는 정치전략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빈번했다.⁸⁵ 이는 기존의 남북 언론교류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거나 이렇다 할 실효성을 낳지 못하고 대부분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북한사회의 경직성, 폐쇄성으로 상호교류가 어려운 상태이다. 교류는 기본적으로 쌍방향 관계로 상호 개방적 자세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남한과의 관계는 개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폐쇄적이다. 특히 남한 언론에 영향을 받아 북한사회가 동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남한과의 언론교류에도 북한은 소극적이며 정치전략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넷째,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관계 속에서 언론교류는 제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언론교류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⁸⁵ 유재천(1997). 분단과정에서의 방송: 통일지향적 역할 증대 방안. 문화방송 통일문제연구소. 분단국 통합과 방송.



교류 등과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 교류영역이다. 독일의 경우 분단시기 전반에 걸쳐 편지교류, 방문교류, 경제교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맥락에서 언론교류도 가능했다고 본다. 따라서 남북한 언론교류의 활성화도 결국 여타 분야의 교류가 활발해질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정치적 관계는 언론교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된다.

다섯째, 언론교류를 가로막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북한과의 언론교류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자칫 이적행위로 규정되어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권위주의적 독재정권하에서는 정치적 잣대에 따라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특히 북한 관련 정보 및 뉴스의 보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없다. 대신 언론은 정부 차원에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달하는 기능이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지배하게 된다.

여섯째, 언론교류를 전담하는 주관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북한 영상물의 수입과 관련된 업무는 통일부와 문화관광부가 담당한다. 또 남북한 직교역의 경우 통일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문화관광부의 추천절차를 요하는 문제가 있다.⁸⁶

3. 통일 이후 언론통합 정책방안

남북 언론통합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언론통합의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과정이다. 우선 정치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의 독재권력 체제를 견인하던 국가기관으로서 언론을 자유 민주사회의 독립된 여론형성기관으로 전환시키는

⁸⁶ 김용호·이우승(2000). 남북한 방송교류를 위한 정책 연구. 방송위원회.

것이다. 경제적 차원에서 언론통합은 시장경쟁논리가 지배하는 시스템에서 생존해야 하는 이윤추구적 사기업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언론통합은 국민들의 문화와 정서를 담아내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정립이다. 나아가 언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남북 언론통합은 최대다수의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다. 요컨대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상응하는 시스템, 자본주의 시장경쟁시스템에 부합되는 시스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다원적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한 시스템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통일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 언론통합은 이론상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남한의 언론시스템으로 북한 언론을 개혁하는 방식, 남한과 북한의 시스템이 아닌 제3의 제도, 북한 언론시스템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 등이다. 이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방안은 사실상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 방식 내에서 언론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언론시스템을 제외한 제3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최선은 아닐지라도 남한의 언론제도에 따라 북한 언론을 개혁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도 동독 언론을 전면 해체시키고 서독의 언론시스템에 따라 재편하는 작업이 동서독 언론통합의 기본정책이었다. 따라서 통일 이후 언론통합은 현재 우리나라 신문방송 구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언론통합은 통합대상 국가의 성격 및 언론질서가 어떠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달리 말하면 통합의 주체국과 대상국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통합과정은 더 많은 진통이 따르고 후유증도 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독과 서독의 언론제도와 마찬가지로 남한과 북한의 언론제도는 서로 극단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즉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는 자유 민주주의 언



론과 억압과 통제하의 공산주의 언론이 70여 년간 고착되어 왔다. 따라서 외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통합도 쉽지 않지만, 실질적인 내적 통합, 즉 언론이 제 기능을 실제로 작동토록 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1) 방송통합 방안

방송통합은 북한의 국영방송을 남한의 방송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한의 공영방송에 편입시키는 방식, 제3의 독립적 공영방송을 신설하는 방안, 민영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개혁을 통해 기존의 독재 정권의 도구에서 탈피하여 방송 본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의 동질성을 형성하고 진정한 사회적 통합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방송통합 방안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보다는 문화정책으로서의 방송정책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남북 방송통합의 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공영방송제도에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즉 현재 KBS, MBC 시스템을 그대로 북한지역까지 확장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체제전환에 따른 진통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방송개혁이 이루어져 제도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독재 체제하의 북한 주민의 의식이나 문화를 남한과 동일하게 개선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적합하다. 반면 현재 남한의 중앙집중적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하여 북한 방송이 KBS 지역총국 체제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남한방송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동시에 독자적인 자율성의 상실로 북한 고유의 방송문화 전통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북한지역에 제3의 공영방송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재의 북한 국영방송 시스템을 공영방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후 KBS와 연합편성하는 방식을 취해 독일 공영방송의 연립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방안의 장점은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은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하고, 방송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점 그리고 방송지배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 국영방송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는 북한지역의 방송시스템을 남한의 공·민영 체제와는 다르게 전면 상업 체제로 전환시키는 정책이다. 이 경우 남한 중심의 중앙집중적 공영방송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적으로 방송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 종속성을 최대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윤추구 우선의 상업채널의 특성상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방송이 될지 의문이다. 또한 광고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쟁으로 상업화, 집중화 현상이 우려되며, 다양한 채널이 함께 공존하기에는 북한 방송시장이 협소하다. 이러한 측면 외에 근본적인 문제는 방송통합 과정에서 남한시스템과 동떨어진 민영 체제가 최종 도입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그리고 방송개혁 정책 추진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한 주도의 흡수통합은 지양해야 한다. 방송제도의 개혁방향은 남한제도와 동일하게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방송운영이나 편성내용 등은 북한 고유의 정서나 주민들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테면, 사장, 본부장 등 방송책임자를 남한 출신으로 선정하더라도 실무종사자는 북한 출신 기자와 PD가 보도 및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방송은 북한 주민들로부터 신뢰보다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동시에 민영방송의 도입 및 운용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남한처럼 공·민영 이원화정책이 도입된다면 방송시장의 상업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독의 사례를 보더라도 다소 계몽적인 서독 공영방송은 외면하고, 선정적, 자극적인 오락 프로그램 중심의 편성을 지향하는 상업채널에 대



한 인기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서도 전개되면 북한지역에서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하는 거대 언론 기업에 의한 집중화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

2) 신문개혁 방안

통일 후 신문시장 개혁은 방송영역에 비해서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문개혁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국영기관에서 민간 소유 신문시스템으로 민영화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신문시장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는 불필요하게 된다. 구조개혁의 핵심문제는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로 정착시킬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신문의 민영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향후 북한 신문시장을 좌우하게 된다. 만약 남한의 거대 신문기업을 주축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신문시장의 집중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앙일간신문을 소유하고 있는 남한 언론사가 북한 주요 신문들을 인수하면, 북한 신문시장의 집중화현상은 남한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서독 통일사례를 통해 이미 경험하였고, 현재까지도 구동독 신문시장의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적 이해관점을 기준으로 한 신문개혁보다는 북한 고유의 사회문화적 정서를 반영하는 신문정책으로 신문시장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 북한 신문 체제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신문시장의 개혁이 요망된다. 즉 기존 국영신문들을 모두 폐간시키고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여 시장을 구축하기보다는 구신문질서의 인적, 물적 기본자산을 활용하여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개혁의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북한 고유의 언론문화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신문개혁의 핵심은 국영기관이었던 북한 신문

구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이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신문은 방송과 달리 사기업적 소유 및 경영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편적이라, 국영 체제를 민영 체제로 전환하는 민영화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론상으로는 공영적 소유구조도 상정할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적다. 민영화의 경우, 특히 누가,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국영신문을 매각할 것인가가 차후 북한 신문시장을 좌우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먼저 신문시장 민영화의 추진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한시적 기구로 활동하지만 역할은 막중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신탁청은 동독 국영기관 전체의 민영화를 전담하다 보니 언론영역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경제적 관점에 치중한 매각정책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를 거울삼아 신문이 단순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이상의 사회적 기관임을 전제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언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에서 민영화 업무를 전담하거나, 최소한 언론 전문가를 포함해서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신문 매각기준의 문제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매각기준은 자본력, 향후 투자 가능성, 고용승계 보장 등이다. 신문기업은 정보전달 및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으로 인해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해당 언론의 잠재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문기업들의 시장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1사신문 원칙’ 즉 한 개 언론기업은 하나의 신문만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신문을 소유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폐간하지 않는 조건이나, 북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셋째, 남한 주요 언론기업들이 북한 신문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문시장의 집중화가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 북한지역은 남한 신문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통일 직후에



는 경쟁력 있는 북한 언론기업이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북한 신문의 민영화과정은 남한 언론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상기한 제도적 차원의 신문개혁 외에 북한 신문 언론종사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과거 공산주의 언론사상에 익숙한 언론인들은 자유 민주사회의 언론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은 언론자유를 구현하는 독립적인 언론인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북한 공산당 권력구조의 핵심인물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중 편집국장을 비롯하여 중견 언론인 이상의 상당수는 개혁과정에서 퇴직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들을 대신할 간부급 언론인은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능력 있는 기자들로 선출되어야 한다. 아울러 통일 후에는 인적 차원에서의 전면적인 재교육 필요하다. 재교육은 단순히 언론인으로서의 직업교육 차원뿐 아니라, 공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탈피하고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기본소양교육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독일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지역 언론은 단순히 뉴스보도 기능 외에 주민 또는 독자들을 계몽하고 재교육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국민들은 70여 년 이상 독재 체제에서 굳어진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 이후에는 북한 출신 언론 인력의 수급대책이 필요하다. 앞장의 독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서독 출신 언론인에 의한 동독 보도는 동독인들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남한 출신 언론인에 의한 북한 보도는 북한 국민들로부터 그대로 수용되기 어렵다. 소유 및 경영권 지배는 남한 출신 언론인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뉴스 및 보도를 담당할 기자들은 북한 출신 언론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이후 일정 규모의 북한 출신 언론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재교육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통일과 언론은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동서독 분단시기, 통일 과도기 및 통일 이후를 걸쳐 언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통일 사례분석을 통해 드러난 중요한 함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동서독통일은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통일이었다는 점과, 독일통일 과정에서 언론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독일통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래하였다고 한다. 이는 의식적, 의도적 행위 차원의 정치적 통일을 염두에 둔 관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독일통일은 장기간 동안 누적되어 이루어진 자연스런 결과이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통합 이전의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서독 또는 동서독 사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언론교류를 뜻한다. 이런 과정은 통일과 무관한 행위가 아니라 ‘낮은 단계의 통일과정’이자 ‘잠재적 통일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서독 언론교류는 점증적으로 제도적 통일로 나아가는 필연적 과정이자 그 자체가 통일의 과정이라고 본다.

둘째, 독일 언론과 정치의 유기적인 관계이다. 서독 언론이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종속된 상태에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율성을 갖고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서독의 언론은 이러한 기능에 충실하였는데 비해서 동독 언론은 정치에 종속된 도구에 불과하였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서독 언론은 동서독통일이 전격적인 정치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독 국민들에 의한 동독 체제의 내부 붕괴, 동서독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민의를 바탕으로 성취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즉 서독 언론은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민의에 의해 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서독 정부는 동서독통일을 조급하게 추진하거나 목표로 내세우지 않았다. 그렇다고 통일을 원치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나치게 정치적인 목적 지향적으로 통일을 인식하기보다는 동서독 사이의 민족동질성을 기반으로 우호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자유로운 왕래, 상대국 방송의 자유로운 수신, 편지 교환 등 국경에 의한 분리만 빼고는 사실상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교류단계를 유지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통일이 도래한 것이지, 정치권력 주도로 이루어진 통일이 아니었다. 정치적 의도를 갖는 교류보다는 비정치적인 분야의 다양한 교류가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된 셈이다.

넷째, 서독은 포용적 언론정책을 견지하였다. 동독과 서독의 언론교류 정책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선 동독 정부는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서독 간의 방송개방이나 특파원제도 등 언론교류에 소극적이었고 폐쇄적인 정책을 지향하였다. 반면 서독은 언론개방으로 인한 체제적 위협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런 차이로 인해 동서독 언론교류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나 서독은 포용적인 자세로 동독과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이를테면 동독 주재 서독 특파원들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추방되는 사건이 이어졌지만, 서독은 이에 맞대응하지 않고 인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동서독 언론교류도 순탄치 않았을 것이고, 결국 통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

우리라 예상된다.

다섯째, 서독 언론은 통일과정에서 현재적이지자 잠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독일통일 전과 통일 이후에 걸친 장기적, 지속적인 언론 역할이 평화적인 독일통일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독일 언론이 외면적으로 드러난 현재적 역할은 물론,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적 기능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나타나는 역할이다. 특히 서독 방송이 국경을 넘어 동독사회에서 수신을 가능하게 한 방송개방 그리고 동서독 국민들이 상호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시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특파원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반면 언론의 잠재적 기능은 장기적, 지속적 및 일상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언론보도의 역할과 관련된다. 뉴스정보, 오락 제공, 환경감시 기능, 여론형성 기능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서독언론, 특히 방송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는 서독 국민들은 물론 동독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폭넓은 신뢰를 받아 궁극적으로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을 형성·유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여섯째, 통일 전반 과정에서 공영방송은 통일에는 물론, 동독사회의 재건과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독일 공영방송의 역할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 즉 통일 전 방송개방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자국민은 물론 동독인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까지 공영독점 체제였던 서독 방송은 프로그램의 고품질, 언론인의 높은 윤리의식, 언론인들의 내적 언론자유 보장 등을 기반으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았다. 이는 동시에 서독 방송을 수신할 수 있었던 동독 주민들에게도 똑같은 신뢰감을 심어 주었다. 이에 따라 통일 이전에는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시키고 동서독 국민이 하나라는 일체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해 주었으며, 통일 이후에는 사회적 통합의 매체로서 공영방송이 동서독 국민들의 간



극을 해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영방송은 통일 직후 서독 중심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동독인들의 심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서서히 신뢰를 회복하여 최근에는 구동독에서 가장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독일 공영방송이 정치적 도구화 또는 상업적 수단화로부터 독립되어 시민공동체의 진정한 미디어로서 사회통합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데 기인한다고 본다. 과연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남북통일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일곱째, 서독 중심의 일방적인 동독 언론개혁은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였다. 특히 신탁관리청을 통한 국영신문의 매각정책은 큰 후유증을 낳았다. 신문시장이 소수 언론기업에 의해 집중화되었고, 서독 자본에 의한 신문시장의 지배 체제가 굳어져 동독 신문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반면 과도기에 전개되었던 시민단체 및 반체제 지식인 주도의 언론정책 방안은 배제되었다. 구동독 신문개혁은 결국 자본논리에 의해 신문시장이 재편 및 지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동독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문화적 소외감이 컸다.

여덟째, 통일 이후 구동독을 대변하는 언론 역할이 중요하였다.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지만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문화적, 정서적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동서독을 아우르는 단일 미디어보다는 동독 주민을 대변하는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언론은 지역 공영방송과 지역신문이다. 구동독지역은 5개 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순수하게 구동독지역을 대변하는 공영방송은 MDR(중부독일방송)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서베를린을 포함하는 RBB(베를린-브란덴부르크방송), 서독지역 주와 함께 운영하는 NDR(북부독일방송)이다. 따라서 MDR이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신문의 경우는 서독의 권위 있는 신문보다는 구공산당 소유였던 지역신문들이 동독인들의 의사를 잘 대변해 주면서 독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서독인 시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서독 신문보다 동독인에 의해 전해지는 동독 신문들이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

보를 더 잘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홉째, 독일은 전후 전승국에 의한 강제적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력통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독일통일은 법적으로 전승국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했음에도 이를 극복한 것은 동서독 국민들의 일치된 통일 의지가 크게 기여하였다. 정치적 결정이나 합의보다 앞서 국민들의 결집된 의사가 통일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남북통일도 북한의 독재 정권이나 남한 정치권의 의지보다도 남북한 국민들의 통일 의지가 결집될 때 주변 강대국도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 및 의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독일 경험사례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통일 전 상호 호혜적 언론교류정책은 본받고, 통일 후 서독제도로의 일방적 흡수통합정책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직시하여 이로부터 어떤 교훈을 끌어낼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위에서 서술한 독일의 경험사례는 아직도 요원해 보이는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많은 시사점들을 제공해준다. 즉 독일통일이 우리나라 통일에 시사하는 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단계적 과정을 거쳐 한반도에서 ‘연착륙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언론이 기여해야 한다.

통일은 특정 순간 이루어지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긴 시간을 거치면서 숙성되는 과정적 사건이다. 독일의 경우 1990년 10월 3일은 정치적 통일이지만, 그 이전과 이후 긴 시간도 통일과정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양국 간 방송개방으로 인한 국민들의 상호 방송수신, 1970년대 상주특파원제도,



동서독을 아우르는 전 독일인을 수용자로 한 언론보도 등은 제도적 통일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통일 이후 장기적인 언론의 역할은 동서독 국민들이 진정한 내적 통일을 완성하는 데 구심축이 되어 왔다. 이런 과정적 통일이 아닌 ‘경착륙 통일’은 혼란과 시행착오, 후유증을 많이 동반할 수밖에 없다. 남북한통일은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연착륙 통일을 위해 실효성 있는 언론교류 및 언론정책이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고 언론역량도 미흡하다는 판단이 앞서기 때문이다.

둘째, 제도적 통일의 집착보다 먼저 상호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급한 제도적 통일의 집착보다는 상호 우호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통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진다. 서독이 직접적인 통일지향보다는 동서독 간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낮은 보폭’ 정책을 실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언론도 이러한 ‘길고 낮은 통일’ 과정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 정치권의 합의에 의한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통일보다는 남북한 국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의사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통일은 일시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지속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통합적 공동체 건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의 주체는 국민들이지 정치 지도자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지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 반영하여 했던 것은 아니다. 체제와 이념의 극단적 대립성, 상호 흡수통일 또는 적화통일 야욕으로 인한 언론교류의 단절상태, 냉전 체제로 상호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선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적어도 남북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 긍정적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긴 시간이 요구된다.

셋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남북 교류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립지향적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교류지향적 우호관계를 구

축해야 한다. 통일은 상호 대립을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남북한 관계는 다소 기복은 있었지만, 일관되게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서독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적대적 상황에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도 지난하고, 이후 진정한 내적 통일에 이르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독은 이른바 ‘접근을 통한 변화’, 즉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련의 정책을 통해 동서독통일을 향해 나아갔다. 특과원 교류 외에 상호방문, 정치범 매수, 경제적 교류 등을 통해 동독을 포용하는 정책들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교류를 정치적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더 활발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통일은 통일 이전 상호교류의 질과 양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 남북언론 교류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테면 1단계로 기사 및 영상물 상호 교류, 2단계로 취재 및 제작지원 및 협력, 3단계로 공동취재 및 제작, 4단계로 특과원 교류와 언론 및 방송개방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적 교류를 거치지 않고 남북통일이 다가온다면 또 이루어진다면, 과연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스럽다.

넷째, 다단계적 남북통일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

남북통일이 공식적, 제도적인 통일의 한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긴 과정이라고 볼 때, 이에 상응하는 언론정책도 몇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먼저 통일 이전 과정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적, 문화적 공동체임을 지향하는 차원의 언론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비록 정치적으로는 분단되어 있지만 하나라는 동질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통일과정에서는 당연히 제도적, 정치적 통합을 지향하는 언론의 역할이 요구된다. 더구나 통일은 매우 복잡한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제도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환기를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 언론의 경우 대규모 집회, 베를린 장벽 붕괴, 동독 주민들의 대량탈출 등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통일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통일 이후 언론은 두 분단국이 하나의 민주시민사회 공동체로 성숙해지도록 기능해야 한다. 즉 사회통합 또는 내적 통합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이다. 이 과정은 통일 이전과 마찬가지로 긴 시간을 요하며 사회문화적 차원의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다섯째, 남한의 언론질서 및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현재 북한 관련 보도에서 오보나 추측성이 적지 않으며, 북한 관련 정보 프로그램도 진지한 접근보다는 흥미 위주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타 분야에서의 언론보도 역시 대북 관련 언론 보도 정도 및 수준과 유사한 것이지 이를 능가하지 못한다. 방송과 신문 저널리즘의 품질, 즉 사실관계 확인, 객관적 보도, 선정성의 회피, 심층성 및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높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시청자와 독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은 통일 관련 남북한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보다는 부정적, 역기능적 부작용을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 언론개혁은 현재 남한 언론구조 및 수준에 상응하는 체제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동독의 신문방송의 전환은 서독의 신문과 방송을 모델로 이루어졌다. 신문은 소수 언론대기업 중심으로 민영화되었고, 방송은 공영방송 시스템이 그대로 동독지역까지 확장된 데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한 신문시장 집중화 현상이나 공영방송에 대한 동독인들의 비판적 시각은 당연한 결과처럼 보인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 언론구조는 곧 차후 북한 언론구조를 결정하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런 측면에서 현재 남한 언론의 문제점들이 사전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섯째, 통일 이후 북한 언론 체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전준비 없이 이루어진 독일통일은 전반적으로 서독 중심의 일방적 개혁 정책 추진으로 동독사회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방송은 해체되고 서독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여 동독 방송문화를 말살하고 낮은 서독문화가 지배토록 하였다. 또한 언론정책적 논리보다 경제적 논리에 의거한 신탁관리청의 매각정책으로 동독 신문시장은 소수에 의한 독과점 현상 등 왜곡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공영방송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남한 방송 시스템에 따른 북한 방송의 흡수통합은 부정적 영향을 양산할 가능성이 많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중앙집중적 구조로 인해 자칫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남한 위주의 일방적 방송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더구나 KBS 지역국은 독립된 방송편성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통일 후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영방송이 북한 주민을 대변하거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여 신뢰를 상실하고 북한 주민의 소외를 낳게 되어 거부감을 갖게 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중앙집중적 공영방송 시스템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독립적 지역방송을 구심으로 하는 독일의 '연립방송 모델'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는 남과 북의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나아가 문화공동체를 형성하여 국가 차원의 상호협력과 통합을 지향하는 모델이다.

아울러 신문의 매각정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즉 민영화과정에서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 의거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가 최대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정책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통일 이후 북한 언론 체제 전환방법은 해체보다는 유지·보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북한의 언론시스템이 낙후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해체시키지 않고



통일한국 언론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해체 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개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단지 경제적 차원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적 대상이다. 통일 이후 언론은 북한 주민에게 새로운 사회시스템 건설을 위한 공론장이자 사회적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고유한 문화를 반영하고 최대한 자율적 언론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통일한국에서 남한이나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공동체 건설에 동참하고 기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덟째, 다각적인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디지털, 뉴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남북 간 정보교류를 모색해야 한다. 북한 내로 유입되는 남한 미디어 콘텐츠는 장사꾼 또는 밀무역자를 통해 중국 국경도시를 거쳐 북한 전역으로 지역 간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가 가족, 친지, 이웃 등을 통해 인가리에 공유되고 있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장르 등 오락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미디어 콘텐츠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컴퓨터, CD, DVD, MP3, 태블릿 PC, USB, 휴대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난 2000년대 전후부터 유통·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호규·곽정래·신미녀, 2015).⁸⁷ 따라서 남북 간 미디어 콘텐츠 교류는 동서독 방송개방처럼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디지털 시대에 상응하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독일의 현실과 한국의 현실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사례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

.....
⁸⁷ 이호규·곽정래·신미녀(2015), 북한 내 한국 미디어 콘텐츠 수용실태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변해야 진정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독일 모델은 값진 교훈으로 다가온다. 또한 독일과 똑같은 길을 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방하기보다는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공유지점, 또는 문제점 및 시행착오까지도 우리에게 귀중한 경험이라고 본다. 단 피상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깊고 성찰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강태영(1991). 통일 전후의 독일방송 현황. 〈방송문화연구〉 3권.
- 강태완(1995). 동서독 신문의 구조, 통일정책 및 보도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pp.109-177.
- 강현두(1997). 북한 매스미디어론, 나남.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2015). 통일인문학. 인문학으로 분단의 장벽을 넘다. 알렘.
- 고유환·이주철·홍민(2012). 북한 언론 현황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광호(1995). 〈통일 전 동서독의 방송정책 및 보도〉. 한국언론연구원.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pp.179-251.
- 김경희·노기영(2011). 한국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pp.361-387.
- 김명준·임종섭(2014). 미디어에 나타난 탈북자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영옥(2017). 통일과 저널리즘. 서독 언론의 동독 보도에서 얻는 교훈. 언론학회 세미나 발표문.
- 김영옥(1997). 공민영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의 차별성과 유사성. 연구보고 97-19, 한국방송개발원.
- 김영옥·김택환(2000). 남북문제 보도의 새로운 모색: 독일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함께. 한국언론재단.
- 김영옥·심영섭(2011). 통일과 언론: 독일의 경험. 언론재단 연구서 2011-08.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용호·이우승(2000). 남북한 방송교류를 위한 정책 연구. 방송위원회.
- 김정기(1995). 전후 분단국가의 정치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의 특성. 한국언론연구원.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pp.39-73.
- 김정탁(1991). 언론인의 북한관 및 통일관 의식조사 조사연구 : 언론인의 의식조사. 언론연구원
- 김정탁(1991a). 남북한 언론보도의 제 문제-남한 언론의 북한 보도 내용분석-. 언론연구원
- 김정탁(1991b). 북한부 취재보도의 문제점. 언론연구원
- 김택환(1995). 〈통일독일의 언론지형〉. 한국언론연구원.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pp.253-329.
- 도정은·나은경(2014). 북한 관련 언론보도의 메시지 해석수준 및 수용자의 시간적 거리감이 통일에 대한 태도와 전쟁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8권 1호.
- 롤란드 티시·질비아 디틀(이우승 역)(2002). 독일방송통일: 동서독은 어떻게 방송시스템 통합을 이루었는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리하르트 슈뢰더(최기식·정환희)(2014). 독일통일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법무부.
- 박종수·윤창민(1999). 남북한 언론교류. 연구서 99-06. 한국언론재단.
- 박주연(2009).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 미디어시스템의 통합과 전환에 관한 연구.
- 박주연(2012).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상파 텔레비전 정규 프로그램 연구. KBS의 〈남북의 창〉과 MBC의 〈통일전망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pp.43-68.

- 박주연(2013). 텔레비전 방송의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 편성추세 연구, 《사회과학연구》 29권 3호, pp.387-408.
- 방정배(1995). 동서독 국가의 정책변화와 언론, 한국언론연구원.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pp.75-107.
- 배진아·곽정래·윤석민(2009). 방송의 통일이념 실천에 관한 주요 관계자의 인식, 〈한국방송학보〉, pp.126-165.
- 안춘옥(1991). 남북한 언론보도의 제 문제 : 〈남북한언론보도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의하면서, 언론연구원.
- 안춘옥(1991a). 북한 언론의 남한 보도에 관한 연구, 언론연구원.
- 여명우(1990). 한국언론의 통일문제 보도와 역할, 한국언론연구원. 〈독일통일과 언론의 역할〉.
- 염돈재(2011).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평화문제연구소.
- 유동희(1996). 남북 방송교류의 전망과 통일방송의 기능, 문화방송 통일문제연구소.
- 유선영·전효관(2000). 남북한 문화 차이와 언론, 한국언론재단.
- 유재천(1997). 분단과정에서의 방송: 통일지향적 역할 증대 방안, 문화방송 통일문제연구소, 분단국 통합과 방송.
- 이성춘(1995). 남북한 신문의 남북한 보도 분석, 한국언론연구원.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pp.331-381.
- 이우승(2004). 분단국의 방송교류,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우승(2005). 통일방송론, 한울아카데미.
- 이정춘·전석호(1991). 분단국의 통일과 방송정책, 청림.
- 이호규·곽정래(2012). 북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미디어,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호규·곽정래·신미녀(2015). 북한 내 한국 미디어 콘텐츠 수용실태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화형·정성호·강경수·이정기(2014). 통일과 언론: 통일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용준(1991). 북한의 언론, 북한의 언론정책과 언론구조, 언론연구원.
- 주창윤(2000). 북한 관련 보도의 반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방송진흥원.
- 최선열(1995). 통일에 관한 언론인들의 역할 인식, 한국언론연구원.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pp.383-426.
- 한국방송개발원(1994). 통일에 대비한 방송 체계 연구: 1단계 방송망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94-14.
- 한국방송진흥원(1999). 남북영상교류 및 제작협력 활성화 방안연구, 연구보고 99-08.
- 한국언론학회(1993). 한반도통일과 방송의 역할.
- 한국언론연구원(1990). 독일통일과 언론.
- 한국언론연구원(1995).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독일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 비교.
- 홍성기·하태경·손광주·이종철(2011). 북한 관련 뉴스보도 현황 연구: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인권 및 안보 관련 뉴스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외국 문헌〉

- ARD/ZDF (1997). *Was Sie ueber Rundfunk wissen sollten, Materialien zum Verstaendnis eines Mediums, Berlin, Vistas.*
- Branahl, Udo(1997). *Medienrecht, Eine Einfuehrung, Opla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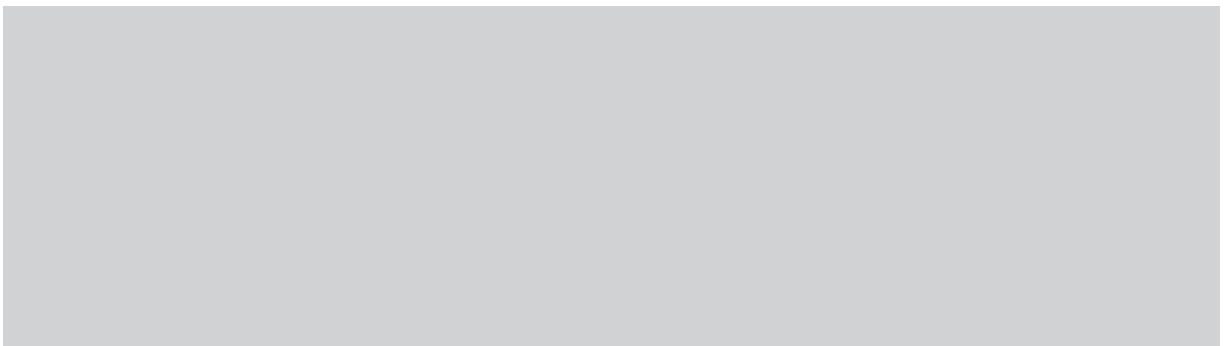


-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1997).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Spiegel der DDR-Medien*. Bonn.
- Frey-Vor, G. & Gerhard, H. and Mohr, I. (2002). *Mehr Unterschiede als Annaeherung? Media Perspektiven*, 70-76.
- Frey-Vor, G. & Mohr, I. (2015). *25 Jahre Deutsche Einheit-Fernsehnutzung in Ost und West*, *Media Perspektiven*, 453-469.
- Heinrich, Juergen(1994). *Medienoekonomie, Band1: Mediensystem, Zeitung, Zeitschrift, Anzeigenblatt,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Hoffmann-Riem, Wolfgang(1979). *Rundfunkfreiheit durch Rundfunkorganisation, FaM*.
- Holzweissig, G. (1989). *Massenmedien in der DDR*. Berlin : Verlag Gebr. Hplzapfel.
- Holzweissig, G. (1999). *Massenmedien in der DDR*, in Wilke, Juergen(1999). *Medien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 Machill, M / Beiler, M / Gerstner, J (ed.) (2010). *Medienfreiheit nach der Wende. Entwicklung von Medienlandschaft, Medienpolitik und Journalismus in Ostdeutschland*. Konstanz, UVK.
- Meyn, Hermann(1999). *Massenmedi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Colloquium*.
- Mohr, I. & Frey-Vor, G. (2016). *Radio- und Zeitungsnutzung im Ost-West Vergleich*. *Media Perspektiven*, 392-400.
- Muehl-Bennighaus, Wolfgang (1999). *Rundfunk in der SBZ/DDR*, in Schwarzkopf, Dietrich (ed.) (1999). *Rundfunkpolitik in Deutschland. Wettbewerb und Oeffentlichkeit*, Mue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Noelle-Neumann, E. & Schultz, W. & Wilke, J. (994). *Publizistik Massenkommunikation*. Fischer Taschenbuch Verlag.
- Puerer, H./ Raabe, J. (1996). *Medien in Deutschland Band1 Presse*, Konstanz, UVK Medien.
- Schneider, B. (1999). *Massenmedien im Prozess der deutschen Vereinigung*. in Wilke, Juergen(1999). *Medien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603-629.
- Schuetz, W. J. (2012). *Deutsche Tagespresse 2012, Ergebnisse der aktuellen Stichtagsammlung*. *Media Perspektiven*, 570-593.
- Schwarzkopf, Dietrich (ed.) (1999). *Rundfunkpolitik in Deutschland. Wettbewerb und Oeffentlichkeit*, Mue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Stolte & Rosenbauer(1995). "Die doppelte Oeffentlichkeit. Zur Ost-Studie der ARD/ZDF-Medienkommission" *Media Perspektiven*. 358-365.
- Stuiber, Heinz-Werner (1998a). *Medien in Deutschland Band2 Rundfunk, 1.Teil*. Konstanz, UVK Medien.

- Stuiber, Heinz–Werner(1998b). *Medien in Deutschland. Band2 Rundfunk 2.Teil*, UVK Medien, Konstanz.
- Thierse, W./ Spittmann–Ruehle, I./Kuppe, J. (ed.) (2000).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 Tonnemacher, Jan(1996). *Kommunikationspolitik in Deutschland*, Konstanz.
- Trautloff & Bruebler (2010).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r ostdeutschen Landespressesgesetzze und Rundfunkordnung*, in Machill, M / Beiler, M / Gerstner, J (ed.) (2010). *Medienfreiheit nach der Wende. Entwicklung von Medienlandschaft, Medienpolitik und Journalismus in Ostdeutschland*. Konstanz, UVK, 75–96.
- Wilke, Juergen(1994). *Medien DDR*, in Noelle–Neumann, E./Schultz, W./Wilke, J.(ed.) (1994). *Das Fischer Lexikon. Publizistik Massenkommunikation*.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 Wilke, Juergen(1999). *Medien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독일통일 총서 22

언론 분야
관련 정책문서



들어가며

분단과 통일과정에서 미디어에 관해 논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독일의 상황이 한국과는 전혀 달랐다는 점이다. 남한과 북한에서는 상대방의 미디어를 접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반해 독일의 경우 분단 시기에도 서독에서 동독의 방송을 시청·청취하거나 신문을 보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고, 동독 정부는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방송을 수신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1950년대부터 서베를린에 소재하던 RIAS 방송국(미국 주둔지역 방송국)은 바이에른주 북부의 호프시에 위치한 방송시설을 통해 동독 남부지역에 방송을 보냈었다. 동독은 오랫동안 서독의 방송 수신을 방해하고, 서독 TV 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 설치에 반대하는 등의 캠페인을 통해 수신을 중단시키려 노력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동독 인구의 80%가 정기적으로 서독 미디어를 청취하고 시청했다고 알려져 있다. 동독 국민들은 동독 상황에 관한 정보도 서독 미디어를 통해서 입수했고, 동독 지도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 정부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공지사항을 절대로 '서독 방송'의 주요 뉴스 시간에 발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분단시기에도 미디어는 동독과 서독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그러나 미디어가 분단과 통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특히 서독의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TV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일이 실현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서독 미디어의 동독에 대한 보

도형태가 동독의 안정에 기여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독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학술연구의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수립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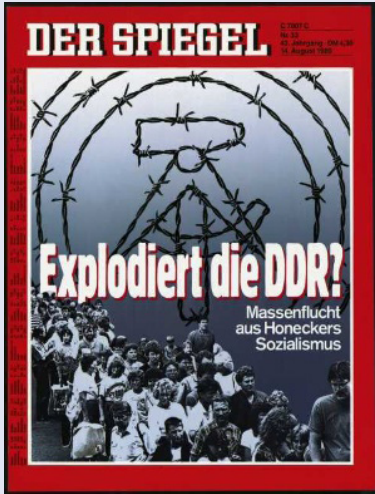
과도기 동독의 개혁내각의 경제부장관이었던 크리스타 루프트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언론이 긍정적인 역할만 한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그녀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사회주의통일당이 스스로 개혁하기로 결정한 후 수상으로 선출된 한스 모드로우의 부탁으로 개혁정부의 경제부장관직을 맡았다. 1989년 11월 13일에 수상으로 선출되고, 11월 17일 서독과 동독의 계약공동체 설립을 제안한 직후 한스 모드로우는 11월 20일에 당시 사통당 당수였던 에곤 크렌츠와 함께 서독 연방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와 앞으로의 협력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회의에 참가하려고 공항으로 가던 서독의 사절단은 신문가판대에서 그날 발행된 슈피겔지의 표지에 ‘동독: 파산한 마르크스 경제’라는 제목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동베를린에 도착한 서독의 사절단이 이미 동독은 파산했다는 선입견을 갖고 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크리스타 루프트는 회상한다. 실제 11월 20일의 회의에 관한 다양한 보고를 보면 동독의 크렌츠와 모드로우 수상이 개혁의지를 표명하고 우호 협력을 열심히 강조하는 데 반해 서독 대표단은 동독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다. 크리스타 루프트는 2017년에도 그날의 상황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¹ 그 당시 동독 경제가 그렇게 파탄이 난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동독 정부가 계획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계약공동체로 단계적으로 동독과 서독 간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당시 슈피겔과 같은 서독 언론이 이미 동독은 망했다는 보도를 한 후에는 동독의 개혁과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서독 언론이 동독의 개혁을 시작도 하지 못하

.....
¹ 크리스타 루프트, 2017년 2월 25일 면담.

도록 망쳐 놓았다는 것이 크리스타 루프트의 의견이다. 실제로 1989년 여름 이후 슈피겔지의 표지만 보면 동독의 붕괴가 기정사실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슈피겔 1989년〉

1989년 33호(1989년 8월 14일)



표지제목: 동독으로부터의 탈출

1989년 41호(1989년 10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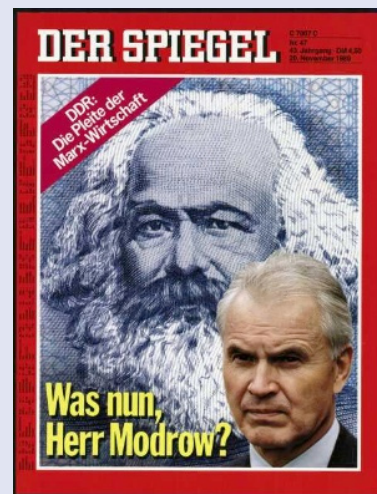
표지제목: 동독 40년-슬픈 연극

1989년 45호(1989년 11월 6일)



표지제목: 동독을 아직 구할 수 있는가?

1989년 47호(1989년 11월 20일)



표지제목: 모드로우씨,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부제목: 동독-파산한 마르크스 경제

크리스타 루프트처럼 개혁성향이 분명했지만 개혁을 통해 동독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독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지금까지도 비판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개혁을 통해 추구한 것이 궁극적으로 통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독일통일을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로 본다면, 1989-1990년에 독일을 둘러싼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1989년 11월 17일에 한스 모드로우가 제안한 계약공동체 통일방안과 11월 28일에 헬무트 콜이 발표한 통일을 위한 '10개 조항'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독 언론의 보도 때문에 동독의 개혁정부가 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크리스타 루프트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 과정에서 대중매체의 역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과정에서 언론과 기자의 역할이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문제는 독일의 언론학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서독 미디어가 동독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도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다.² 서독 언론인들이 대부분 동독의 실생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독 언론의 보도행태가 동독의 체제 안정에 오히려 기여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서독에서 동독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대부분 통일 이후의 시점에서는 동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든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정확한 현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1980년대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

.....
² Donsbach, W., & Klett, B. (1992). Verspätete Einheit? Zur Rolle des Journalismus in der Deutschlandpolitik. *Medien und Zeit*, 7(2), 8-10. Reprint: *Medien-Kritik* 26(1992), pp.2-5.

독의 언론인들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그들이 비판적 저널리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이 과도한 것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1990년까지 유효했던 서독 제2공영방송 ZDF의 정관 2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이 무엇보다 평화와 자유의 틀에서 독일통일과 국민들 간의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규정을 통해, 서독의 공영방송이 독일통일을 위한 책무를 법적으로 명령받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 언론의 역할에 대해, 특히 비판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다.

언론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1989년 여름 이후 서독의 대중매체가 동독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989년 9월 유럽의 철의 장막을 제거한 헝가리를 통해 동독인들이 대거 서방으로 넘어 오는 것에 대한 서독 텔레비전의 집중적인 보도가 독일통일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언론학자도 있다.³ 철의 장막이 제거된 헝가리 국경을 넘어 자유세계로 온 동독인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서독 텔레비전을 통해 동독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면서 서독의 텔레비전이 그려내는 자유의 드라마가 동독 사회 내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이 단순한 사건의 증인이 아니라 동독에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고 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혁을 도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989년 9월 초의 체제비판적 시위에 1천 명 정도 참여한 것에 반해, 10월 라이프치히의 군중시위에 7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11월 동베를린의 시위에 수십만 명이 참여한 것은 바로 미디어의 집중적인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독의 텔레비전이 동독을 떠나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저항운동을 지속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설정 보도함으로써 동독 사회주의 지배 체제를 뒷받침하던 도덕적 정통성의 기반이 붕괴되도록 했다고 본다.

.....
³ Der Tagesspiegel, Waren die Medien der Motor des Mauerfalls?, 2016년 10월 30일자; Hertle, Hans-Hermann Der Fall der Mauer. Die unbeabsichtigte Selbstauflösung des SED-Staates, VS Springer: 1999 참조.

1989년 11월 9일 저녁 대부분의 동독 주민들이 자유로운 여행이 즉각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동독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독의 TV 뉴스를 통해서였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독일통일과 관련된 정책문서를 분석해 보면 이미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이런 사실들 외에 독일통일의 경험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를 위한 시사점을 찾을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이 글에서는 정책문서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통일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 위주로 설명할 것이다.⁴

.....
⁴ 통일을 전후로 한 독일 미디어 구조의 변화와 발전 경로에 관해서는 앞 장을 참조.

동독 언론에 대한 불신과 개혁

제1절 슈프트닉지 사건과 샤보브스키 기자회견

1980년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에 의해 개혁이 시작된 이후 동독 사회 내부에서도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 중에 잡지 ‘슈프트닉’과 관련된 것이 있다. 이 사건은 동독 정부가 소련에서 발행되는 슈프트닉이라는 잡지의 수입과 배포를 금지한 것이다. 각료회의가 슈프트닉 1988년 10월호를 압수하고 1,800,000부를 배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10월호에 당시 고르바초프가 추구하던 글라스노스트 정책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가 확대적용된 상태에서 작성된 스탈린주의에 관한 기사들이 여러 편 실렸기 때문이다.⁵ 이 결정에 따라 1988년 11월 19일부터 우편으로 배달되는 신문의 리스트에서 슈프트닉지가 삭제되고 기존의 정기구독도 모두 취소하라는 명령이 각 우체국에 전달되었다.

이 결정에 대한 동독 지식인들의 반발이 아주 컸던 것으로 보인다. 1988년 11월 30일에 비밀경찰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슈프트닉지 배포 금지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자들이며, 비판의 주된 논지는 각료회의의 결정은 동독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

⁵ 소련 잡지 슈프트닉 1988년 10월호와 관련한 국가보위부(비밀경찰)의 입장과 조치(문서번호 2).

이라고 분석했다. ‘부분적으로는 아주 공격적으로 학술, 기술, 의료, 예술, 교육 분야의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이’ 비판적이라고 보고한다. 더욱이 “일부는 오랫동안 사통당의 당원이었고 간부였던 사람들이 … 이 결정을 계기로 또 다시 언론정책 전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많은 사회문제와 씨름하면서 동시에 국경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대적인 … 세력과 경쟁해야만 했던 전쟁 직후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입지가 이 정도의 언쟁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것인가 묻는다.”⁶

비밀경찰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1980년대 동독의 지배 엘리트들이 가졌던 동독 체제에 대한 자신감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서독 방송을 통해 동독의 발전에 반하는 정보들이 매일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슈프트니지에 실려 있는 몇 개의 기사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보면 오히려 그런 결정이 체제 저항세력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악의적 공격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⁷ 동독의 소위 ‘재건세대’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은 전쟁으로 인한 황폐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나라를 세웠다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사회심리학자 라이너 실버아이젠은 분석했었다. 이들은 1945년에서 1960년 사이에 동독의 재건기에 사회에 진출한 세대로 기존의 엘리트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세우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엘리트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세대이다.⁸ 1980년대에 이들은 대부분 70대에서 80대의 연령에 있었다. 비밀경찰의 문서에서 인용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노인들이었다. 그들이 동독 사회를 보는 시각은 변혁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의 그것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런 의미

⁶ 슈프트닉 잡지의 금지 발표에 관한 국민의 반응-동독 국가보위부(비밀경찰)의 분석(문서번호 4).

⁷ 슈프트닉 잡지의 금지 발표에 관한 국민의 반응-동독 국가보위부(비밀경찰)의 분석(문서번호 4).

⁸ Rainer K. Silbereisen, Psychological Challenges of Unification - Selected Results and Thoughts on Korea, in: Historical Social Research Vol. 41 (2016) 3, pp.299-317 참조.



에서 슈프트닉지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많은 비판은 1980년대 말 동독 사회 내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고 있다.

1980년대 말 동독 주민들 사이에 동독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만연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무엇보다 11월 9일의 여행자유화에 대한 보도였다. 이에 대해서는 포츠담 현대사연구소의 헤어틀레 박사가 구체적으로 연구했다.⁹ 그에 따르면 귄터 샤보브스키가 여행규정의 변화를 발표한 기자회견은 11월 9일 저녁 7시에 동독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다. 생중계를 본 동독 주민의 수가 적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보고도 동독 주민들이 그것을 믿지 못해서인지, 실제로 7시경에 동독의 국경검문소에 가서 여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서독의 제1국영방송인 ARD의 저녁 메인뉴스인 Tagesthemen이 그날 저녁 22시 45분에 이 기자회견에 관해 보도하자 동베를린의 주민들이 서둘러서 장벽으로 향했고, 그를 통해 발산된 다이내믹한 힘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장벽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헤어틀레 박사는 평가한다.

제2절 모드로우 정부의 언론개혁정책

장벽이 붕괴된 후 11월 13일에 구성된 한스 모드로우가 이끄는 개혁정부의 언론개혁 정책은 동독 저널리스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 것은 동독 저널리스트들이 변혁기에 새로운 단체를 발족시키지 않고 기존의 언론인협회를 통해 개혁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동독 언론인협회 회원들은 대부분 사통당 당원이었다. 통일 이후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비밀경찰을 위해 일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스 모드로우 개혁정부가 결정한 홍보처의 구조개혁과 정부대변인의 역

⁹ 귄터 샤보브스키에 의한 동독의 새로운 여행규정 발표(샤보브스키의 메모)-분석 : 서독 언론의 보도 때문에 장벽이 무너졌다?(문서번호 7).

할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언론인협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¹⁰ 1989년 12월 21일에는 기존의 ‘텔레비전 라디오 국가위원회’를 각료회의 산하 ‘동독 텔레비전’과 ‘동독 라디오’로 분리하고 명칭도 변경했다.¹¹

나아가 동독에는 존재하지 않던 언론법 도입에 관한 논의가 언론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언론협회와 다양한 기관이 1989년 12월에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언론법의 도입에 관해 논의했지만 최종적인 합의를 구하지는 못했다. 대신 1990년 1월 9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언론법이 제정될 때까지 언론이 국민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존중해야 하며, 정부가 모든 언론기관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미디어 관련 새로운 규정을 결정하였다. 동시에 중앙원탁회의의 제안에 따라 언론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 후 동독의 라디오 및 TV 방송국장, ADN 통신사장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기구 대표들이 언론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¹²

1990년 3월 8일에는 동독의 국영통신사였던 ADN의 정관이 수정되었다. ADN은 동독의 공적 소통과정을 규제하는 기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던 언론기관이다. ADN의 편집국이 언론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작업에는 동참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통당 산하기구의 성격을 떨치지 못했다. 새로이 도입된 정관을 통해 ADN은 사통당으로부터 독립된 통신사로 전환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¹³

¹⁰ 홍보처의 구조개혁과 정부대변인의 기능과 업무에 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문서번호 9), 동독 정부 보도 및 정보서비스 규정-내각위원회 결정(문서번호 16).

¹¹ 동독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관한 내각위원회의 결정(문서번호 11).

¹² 미디어법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회의 입법위원회의 결정문(발췌)(문서번호 12).

¹³ 동독의 중앙통신사 ADN의 수정된 정관-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문서번호 17).

동독의 언론심의위원회와 동서독 언론위원회

동독 과도개혁정부가 1990년 1월 9일에 내린 결정을 근거로 발족한 동독의 언론심의위원회는 변혁기 동독의 언론인들이 신뢰했던 기관이었다. 사회주의가 내적으로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심의위원회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알리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언론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것은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었지만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정부에게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안드레아스 그라프와 하이케 그라프는 1990년 당시 동독 언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언론심의위원회가 격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 견고하게 존재하던 안정적인 섬과 같은 기구였다고 한다.¹⁴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거를 통해 사통당이 지배정당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기 전에는 이 기구가 언론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다.

당시 동독에는 언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언론심의위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속성과정으로 언론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을 배워야만 했다. 심의위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시

¹⁴ 언론심의위원회(문서번호 27).

작하는 변혁기 동독의 언론시장에서 중심과 균형을 잡아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만 했다. 언론심의위원회가 항상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변혁기 동독 공론장의 전통을 이어가는 기구였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이 기구를 통해서 동독인들이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구조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기구는 대립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들이 투쟁하는 장이 아니라 언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었다고 안드레아스 그라프와 하이케 그라프는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심의위원회의 설치가 동독의 모든 정치단체들로부터 환영받았던 것이다. 언론심의위원회는 ‘국가와 당 정책, 집단이기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국가와의 거리감을 보여준 전문적인 위원회’가 되었다.¹⁵

실제 언론심의위원회는 변혁기 동독의 민주화과정의 혼란기에 법률이 적용되지 못하는 틈새를 찾아서 그것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담당했다. 서독의 대형 출판사와 상업 방송이 동독 미디어 시장에 진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것도 언론심의위원회 업무의 일부였다.

1990년 3월 7일에 언론심의위원회가 ‘출판사로부터 독립적인 공정한 신문 배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이미 동독 프린트미디어 시장을 점령한 서독의 대형 출판사들에 대한 경고였다. 언론심의위원회의 경고에 대해 서독의 대형 출판사들은 새로 발족한 이 기구가 동독인들이 겨우 획득한 언론의 자유를 다시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그에 대해 언론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우리가 서독의 출판물을 동독 신문시장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대형 출판사의 출판물뿐만 아니라 모든 출판물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방송구조에 대한 언론심의위원회의 입장도 분명하였다. 동독 국영방송

¹⁵ 언론심의위원회(문서번호 27), p.15.



을 공영방송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중단하며, 동시에 중앙집권화된 방송을 분권화된 연방적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는 공영방송과 민간상업방송이 공존하는 구조로 발전하겠지만, 우선은 공영방송을 먼저 허용한다는 입장이었다. 서독의 민영방송들이 이에 반발하였다. 서독의 민영방송인 Sat.1의 대표였던 민영상업방송도 동독에서 공영방송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해 언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그것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조치가 아니라 모든 주민이 공영방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언론심의위원회와 서독의 민간상업방송 간의 힘겨루기는 최종적으로 서독 민간상업방송이 이겼다. 당시 서독의 민간상업방송의 태도가 ‘동쪽의 황야’를 점령하려는 카우보이와 같았다고 안드레아스 그라프와 하이케 그라프는 쓰고 있다.¹⁶ 그것은 이들이 글을 완성한 1990년 7월에 동독 언론인, 지식인들이 서독의 언론사와 방송사로부터 받은 인상을 대변해 준다. 통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동독인들은 서독 자본주의 체제 기업들의 이기주의적 탐욕에 그대로 부딪힌 것이다.

이것은 물론 단지 언론 부분에만 제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1990년 3월 이후 독일통일이 가시화된 후에 대부분의 기업은 동독을 단순히 새로운 시장으로 간주했을 뿐, 이 지역에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는 작업이 국가적인 과제이며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연대의식을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서독 연방정부 수상청의 경제국장으로서 통일과정을 준비하던 요하네스 루데비히가 회상했다.¹⁷ 1989년 가을부터 1990년 봄까지 독일의 상황은 한 마디로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동독의 시민 운동가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동독의 급격한 변화를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

¹⁶ 언론심의위원회(문서번호 27), p.15.

¹⁷ 독일통일 총서 신연방주특임관편, 요하네스 루데비히 인터뷰 참조.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는 사람들 및 기업들과 접하면서 시장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적나라하게 보고 배워야만 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장벽이 열린 후에 시작된 정치적 변혁의 물결은 멈추지 않았다.

한스 모드로우 개혁정부하에 구성된 언론심의위원회 외에 주목할 기구가 동독과 서독이 공동으로 설치한 언론위원회이다. 동서독 정부는 1989년 12월 19일에 열린 한스 모드로우 수상과 헬무트 콜 수상 간의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1990년 2월 8일 서독의 수도 본에서 동서독 미디어 회담을 처음 열었다. 이 회담의 목적은 동독 언론과 방송의 다양성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특히 신문과 잡지 배송 체계의 개선과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동독 모든 지역에 원활하게 송신하는 것, 서독 신문잡지의 구독을 자유롭게 하는 것 등이었다. 이를 위해 동서독 공동 언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휘하에 프린트미디어와 방송을 담당할 실무그룹을 두기로 결정하였다.¹⁸ 2월 초에 라디오방송 실무그룹의 1차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장기적으로 동서독의 공동 미디어규정을 작성하면서, 서독의 언론 체계를 동독이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연방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이다.

동서독 정부 간의 이런 합의와 동독 언론심의위원회의 언론구조 개혁 방안 논의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통일 이전 개혁기 동독에서 이루어진 언론구조의 변혁이 서독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영향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동독의 행위자들이 대부분 서독을 모델로 보고 배우려고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¹⁸ 서독의 수도 본에서 개최된 동서독 간의 최초 언론회담-동독과 서독의 공동성명(문서번호 14).

서독 대형 출판사와 동독 미디어시장

변혁기 동독 정부의 언론정책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서독 대형 출판사와의 관계이다. 동독과 서독은 1972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를 통해 신문, 잡지, 서적의 교류에 합의했다. 1986년의 문화협정을 통해 전문저널의 상호 구독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1988년 서독 연방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런 협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동독 행정당국이 동독에서 서독의 잡지를 구독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내독성의 프리스츠 차관이 보고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간신문의 경우 상황이 더 열악해서 구독이 아예 불가능하고, 전문저널의 경우 배송이 허용되지만 동독 국가의 이해에 반한다고 분류될 수 있는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된 모든 인쇄물은 배송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보고했다.¹⁹ 동독 주민이 서독의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었던 것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서독에서 서베를린으로 보내는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 안테나를 설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동독 정부가 1972년과 1986년의 공식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서독의 신문과 방송이 동독에 확산

¹⁹ 동서독 간의 신문잡지 교환 및 서독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동독 케이블망에 입력하는 문제-서독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방정부의 서면답변(문서번호 3).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²⁰

1989년까지 동독 정부는 국내 언론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열을 실시했다. 동독 체제하에서 사통당 기관지인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에 근무했던 기자들은 인터뷰에서 1989년부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곧이어 사통당 중앙위원회(ZK)를 통한 어떠한 지침도 더 이상 전달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²¹ 그런 변화에 힘입어 1990년에 동독에서 수많은 신문이 창간되었다. ‘신문의 봄’이라 불릴 정도로 새로운 신문이 많이 등장한 신문호황기는 1991년까지 이어졌다.²²

그러나 통일과 미디어 관련 문서를 분석해 보면 1989년 11월 이후 한스 모드로우 정부가 동독의 신문배포 체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미 서독의 출판사들이 동독의 미디어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포석을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1990년 1월에 이미 서독의 4대 출판사들이 동독 정부와 함께 동독의 신문배포를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서독 출판사들에게 동독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광고시간이 배정되고, 모든 출판물을 동독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해 주었다.²³ 동독 정부와 서독 대형 출판사들 간의 합의가 원탁회의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자 동독 각료회의는 기존의 우편배달 체계를 이용해서 서독의 신문과 잡지를 동독 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허용했다.²⁴

이 시기에 동독에서 판매되던 서독 신문잡지의 가격은 서독 시장가격보

.....
²⁰ 반면에 서독에서는 동독과의 합의가 실천에 옮겨졌다.

²¹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의 우베 칼베(Uwe Kalbe), 라인하르트 프리케(Reinhard Fricke)와의 인터뷰, 2010년 8월 5일, 베를린.

²² 앙케이트위원회 최종보고서 5/1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역사를 청산하고 사통당 독재의 결과를 극복하면서 민주적 법치국가로 이전하는 과제의 해결-‘미디어와 의견의 다원성’(문서번호 65).

²³ 신문배포 체계 확대에 관한 동독 정부당국과 서독 대형 출판사 간의 합의-배포지역의 분할(문서번호 13).

²⁴ 동독 국영우편을 통해 동독지역에서 서독의 신문을 배포하는 것에 관한 기본원칙-내각위원회의 결정 (문서번호 18).



다 세 배 정도 비쌌다. 그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인 대형 출판사들이 서독 출판물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동독 정부가 그렇게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독의 대형 출판사들이 변혁기의 동독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판매처를 찾기 위해 나섰다. ²⁵ 그들은 이미 1990년 1월부터 재빠르게 동독 시장에 진출을 모색했다. 이렇게 민간기업이 일찍 동독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 통일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서독 은행의 동독 은행 인수과정에서 볼 수 있었다. 미디어시장의 경우 금융시장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독일 전역에 판로를 갖고 있는 대형 출판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서독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 출판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²⁶

동독 체제하에서 이 지역에 39개의 일간지가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사통당과 다른 정당들이 발행하는 것이었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신문들 중에서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지만 사통당의 후신인 민사당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독 15개 지역에서 사통당 신문으로 발행되었던 모든 지역신문들은 신탁관리청에 의해 1991년 5월 15일까지 서독 신문사에 매각되었다. 이로써 사통당을 통해 만들어졌던 독점적 시장구조는 서독 대형 신문사들에게 넘어갔다. ²⁷ 사통당의 신문이 아니었던 모든 신문들도 예외없이 서독지역의 대형 출판사에 의해 인수되었다. ²⁸

.....

²⁵ 신연방주지역의 신문언론의 발전전망과 구조 적응 문제-연방내무부에 제출된 연구보고서(문서번호 47).

²⁶ 신연방주지역의 신문언론의 발전전망과 구조 적응 문제-연방내무부에 제출된 연구보고서(문서번호 47).

²⁷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언론발전에 관한 보고서(문서번호 60).

²⁸ 신연방주지역의 신문언론의 발전전망과 구조 적응 문제-연방내무부에 제출된 연구보고서(발취)

사통당의 지역신문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헬무트 콜 수상을 비롯한 연방정부의 요인들과 비공식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보수적인 출판사들이 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1년 4월 22일 슈피겔지는 헬무트 콜 수상이 신탁관리청이 지역신문을 민영화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아주 깊숙이 개입해서, 쾰니츠의 지역신문이 자신의 고향인 루드비히스하펜시에 소재한 기민당계 출판사에 의해 인수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연방외무장관 한스 디트리히 겐서도 마찬가지로 신문의 민영화 과정에 개입하여, 그의 고향인 할레시 지역신문인 미틀도이칠란트지가 쾰른의 알프레드 네벤 듀몰 출판사에 의해 인수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이 기사는 언론사의 민영화 과정에서 약속한 중소출판사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난하였다.²⁹

통일 이후 지역언론협회가 신연방지역의 출판이 거대 출판사로 넘어간 것을 비판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실제로 1990년 이후 신연방지역 신문시장의 구조는 시장경제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신탁관리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신탁관리청이 14개 사통당의 지역신문 중에 10개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들은 모두 서독의 출판사에 의해 인수되었다. 소형출판사나 외국회사 또는 동독지역의 회사들은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그 결과 동독지역 신문시장은 소수의 신문사에 의해 지배받게 되었고, 서독신문사에 인수된 사통당의 지역신문이었던 신문사들이 새로 발간되는 신문잡지보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렇게 통일 이후 신연방주와 서독지역의 신문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사통당을 통해 만들어졌던 독점적 시장구조가 서독 대형 신문사들에게 넘어간 것이다. 2000년에 작성된 메클렌

.....

(문서번호 47).

²⁹ 신탁관리청의 동독 신문사 매각정책-슈피겔지 보도(문서번호 40),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紙와 베를리너 차이퉁(Berliner Zeitung)紙를 통해서 본 장벽 붕괴에서부터 구동독지역 최초의 주의회 선거에 이르기까지 독일통일의 해에 있었던 구동독 언론의 변화(문서번호 45).



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언론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서독 대형 신문사들이 소유한 지역신문에 의한 신연방주 신문시장 점유율이 91%였다. 이것은 동독 체제하에 사통당 기관지에 의한 점유율보다 높은 것이었다.³⁰

동독에서 변혁이 시작된 직후부터 동독지역의 신문·잡지사를 닥치는대로 사들였던 서독의 출판사들이 1992년부터는 선별적 인수로 돌아섰다.³¹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개별 가구들이 신문잡지의 구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대형 출판사 주도로 이루어진 신연방지역 프린트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매각 인수가 지속되었고, 위에 언급한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신문시장의 집중이 강화되었다.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신문사의 통합작업에 대한 법리적 검토 과정에서 한 출판사가 한 지역의 주요 신문사들을 여러 개 동시에 인수하거나 배포권이 연결되어 있는 신문사들을 여러 개 인수하여 신문시장을 지배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했다.³² 특히 거대 출판사가 신문배급회사를 구성해서 신연방지역 전역의 배급을 독점하는 것이 소형 출판사에 불이익을 주고 공정경쟁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신문배급사와 대형 출판사가 협력하는 배급국을 동시에 구축하는 방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다.

신연방지역의 신문시장을 소수 대형 출판사들이 독점한 것과 관련하여 1993년 사민당 소속 의원들이 연방의회에서 신연방지역의 소규모 언론사를 위해 유럽부흥기금의 언론차관 및 근대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제출한 설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연방의회에서의 제안설명에서 그들은

³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언론발전에 관한 보고서(문서번호 60).

³¹ 신연방주의 신문통폐합 감독 및 신문 현황-독과점위원회 1990/1991년도 9차 평가서(발취)(문서번호 48).

³² 신연방주의 신문통폐합 감독 및 신문 현황-독과점위원회 1990/1991년도 9차 평가서(발취)(문서번호 48).

구동독지역의 신문시장을 소수의 신문사가 독점하는 위험을 방지해야만 하는 이유를 사통당 지역신문들이 시장을 완전히 점유했기 때문에 언론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했는데, 통일 이후 대형 출판사에 의한 시장독점으로 인해 언론의 다양성이 또 다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를 위해 신연방지역의 중소 출판사들도 유럽부흥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었다.³³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신연방지역에 새로운 출판사가 성장·정착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 신문시장이 서독의 대형 출판사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에 직면한 동독 출신 언론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베를리너 차이퉁’ 소속 언론인들의 답이 인상적이다. 그들은 통일을 해방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통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통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지시·검열을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³⁴ 그런 해방감이 대형 출판사의 독점이라는 굴레에 의해 다시 제약받게 되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을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이 상상해 볼 수 있을까?

.....
³³ 신연방지역의 소규모 언론사를 위해 유럽부흥기금의 언론차관 및 근대화 프로그램 도입-사민당 의원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제안(문서번호 53).

³⁴ 베를리너 차이퉁紙 편집장들과의 인터뷰 기록(문서번호 64).

연방제에 따른 방송구조의 구축

변혁기 동독의 한스 모드로우 정부에 의해 추진되던 언론개혁정책의 중요한 한 축은 방송구조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모드로우 정부는 1990년 3월 15일에 동독 방송을 위한 임시정관을 통해 국가기구였던 방송을 공영기구로 전환했다.³⁵ 그것은 동독 언론심의위원회에서 추구하던 것이었다. 한편 동서독 공동언론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장기적으로 동서독 공동의 미디어 규정을 작성하고, 연방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이렇게 1990년 초에 방송구조의 변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 결정되었다.

1990년 3월 18일 동독 주민들이 자유총선거를 통해 신속한 독일통일을 선택한 이후 동독의 장래 방송구조는 서독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시민당은 동독의 방송은 공영방송의 틀에서 서독 방송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이중구조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았다.³⁶ 기민당도 동독의 방송 체계를 서독에 존재하는 이중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독지역을 위한 제3의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거부했다.³⁷

³⁵ 동독 방송 임시 정관(문서번호 19).

³⁶ 통일된 독일의 언론규정에 관한 서독 시민당 언론위원회의 논의(문서번호 21).

³⁷ 통일독일 언론규정의 기본틀-서독 기민당 미디어정책 연방전문위원회의 결정(문서번호 22).

이에 반해 서독의 언론노조는 동독지역을 위한 공영방송을 설립하는 것이 이 지역의 사회적 잠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논란은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을 별도로 담당할 연방정부의 부처를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있었던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연방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들을 하나의 특별한 단위로 묶어야만 좋을지 아니면 기존의 구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서 체제의 다양성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최적의 결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이다. 서독의 언론노조는 나아가 동독 방송에 관한 서독 연방정부 내의 논의가 주로 서독 방송국의 수입원과 영향력을 확보하고 동독의 방송을 기존의 방송 체계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독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방송을 포함하는 이중적인 서독의 방송구조를 동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³⁸ 동독의 공영방송을 설립하면서 서독의 ARD와 ZDF의 모델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방송에서 연방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론노조도 동의했다.

동독과 서독에서 진행되는 이런 논의들이 통일조약 36조에 반영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신연방주들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이중 체제를 도입해야만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마련된 신연방주들의 방송규정을 보면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그런 의무조항을 도입하였다.³⁹ 1990년 12월부터 이미 신연방지역에서 ARD와 ZDF의 시청이 가능해졌고, 새로이 도입된 DFF 방송도 시청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연방주에 민영방송이 아직 설립되지 못했지만 위성안테나를 통해 그리고 서독의 송신국을 통해 신연방지역에서도 서독지역의 민영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었다.⁴⁰

³⁸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새로운 구조에 관한 동독과 서독 언론노조의 성명서(문서번호 23).

³⁹ 작센주의 민영방송과 뉴미디어법(작센민영방송법)-작센주 정부가 부연설명과 함께 제출한 초안(문서번호 41), 브란덴부르크 방송규정-법안에 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심의(문서번호 43).

⁴⁰ 신연방주 방송규정-독과점위원회 1990/1991년도 9차 평가서(발췌)(문서번호 49).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에서 새로운 방송구조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사실은 무엇보다 신연방지역에서 주 단위의 방송구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송신망을 제3자에게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민간상업방송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처음부터 배제되었던 것이다. 서독의 민영방송이 이미 1990년 초부터 공영방송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동독 언론심의위원회의 입장을 비판했던 것은 위에서 보았다. 적어도 방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프린트미디어와 달리 서독과 동독의 언론정책 결정자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연방주 방송 담당 특임관

1990년 형식적인 통일과 함께 구동독지역에 신설된 주들이 공식적으로 신연방주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이 되면서 신연방주에도 방송 담당 관직이 설치되었다. 1990년 10월 15일에 신연방주의 방송 담당관들이 모여 방송 이사회의 구성원과 신연방주 방송 담당 특임관을 선출하였다.⁴¹ 신연방주 방송 담당 특임관직은 통일조약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동독 체제하에서 국가에 의해 관리감독되던 방송을 대체하고, 신연방주지역 방송국이 완성될 때까지 활동하게 될 과도기적 기구였다. 10월 15일의 회의에서 신연방주 방송 담당 특임관으로 선출된 루돌프 물펜젤 씨의 경우 그가 장벽의 붕괴 이후 동독 방송이 만들어낸 성과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 우려가 많았다.⁴²

신연방주의 방송 담당관들이 직접 선출한 특임관에 관한 논란의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선출되게 된 배경 때문이었다. 당시 슈피겔지는 그가 형식적으로는 선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헬무트 콜에 의해 지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도했다. 다수의 신연방주에서 기민당이 집권하고 있고, 그런 지역

⁴¹ 신연방주 주정부 방송 담당관 회의-신연방주 방송위원회와 방송 담당 특임관 선출(문서번호 36).

⁴² 어떻게 루돌프 물펜젤이 구동독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넘겨받았는가-슈피겔지 보도(문서번호 38).



의 주정부에 대해 콜 수상은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특임관으로 선출된 물펜젤은 콜 수상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밀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서독 바이에른 방송국장과 방송위원을 역임했던 물펜젤이 1970년 이후 바이에른주에서 바이에른방송이 기사당 당수였던 요하네스 슈트라우스 바이에른 주지사에게 절대로 복종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서독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지식공유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를 주도하면서 동시에 민간상업방송에 대한 지원을 주도하였던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이 1991년 12월 31일까지 동독 국영방송을 전환하는 작업을 책임진다는 것은 신연방지역의 방송을 새로운 국가와 당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전환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슈피겔지는 비난했다.

그것은 변혁기 동독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책임자로 임명된 크리스토프 징겔슈타인과 미하엘 알브레히트와 같이 개혁적이고 창의적인 전문 언론인들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변혁기에 이들이 추구한 것은 무엇보다 동독 방송을 사회주의통일당의 강력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사통당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동독의 방송인들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원탁회의와 풀뿌리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동독의 다른 어떤 기업도 시장에서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고 슈피겔지는 평가했다. 이런 사람들을 과연 물펜젤과 같은 사람의 통제 관리하에 두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콜 수상에게 질문을 던졌다.

루돌프 물펜젤 신연방주 방송특임관실에 근무한 사람 중에 구동독 출신은 드 메지에르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마티아스 겔러가 유일했다.⁴³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서독 출신이었다. 신연방주 방송특임관실의 당시 분위기를 회

⁴³ 동독 드 메지에르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마티아스 겔러와의 인터뷰(문서번호 66).

상하면서 겔러 씨는 서독에서 온 자신의 동료들은 동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한다. 어린이 프로그램 '잔드 맨헨'과 같이 동독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던 프로그램도 당연히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 어린이 프로그램은 동독 방송의 상징으로 인정되어 폐지를 면할 수 있었다. 방송특임관실의 구성원들은 동독에서 직위가 높았던 언론인들은 모두 비밀경찰과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들을 모두 해고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고 한다. 신연방주 방송특임관실처럼 신연방주의 방송인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의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동독 방송인들이 구조개혁 과정에서 서독에서 온 방송인들이 자격과 능력에 상관없이 혜택을 보았고, 본인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출신지역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꼈던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연구팀이 인터뷰한 구동독 출신의 언론인, 방송인들이 모두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다.⁴⁴ 서독에서 온 사람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혜택을 보았고 동등한 기술자격과 능력을 보유한 동독 출신에게는 정치적 경력과 관계없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혁기 동독 방송의 개혁에 동참했던 많은 언론인, 방송인들이 그로 인해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꼈을 것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 방송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동독 방송의 기술자들은 대부분 곧바로 민간상업방송에 의해 채용되었다. 그들이 서독의 동료들과 비교할 때 기술적으로 적어도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서독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마티아스 겔러는 설명한다. 통일과정에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발생한 브레인드레인이 방송 분야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신연방주 방송특임관실이 이런 현상을 재촉했다는 것이

⁴⁴ 디터 바이리히(Dieter Weirich, 1989-2001 도이체 벨레 방송국 사장) 교수와의 인터뷰 기록(문서번호 63), 베를리너 차이통紙 편집장들과의 인터뷰 기록(문서번호 64).



아이러니컬하게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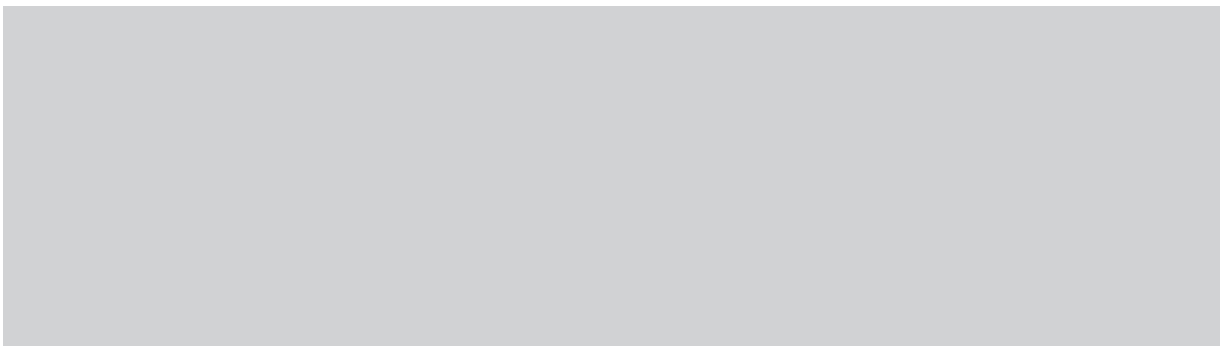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송경영진을 위한 법률과 재정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 후 체결된 많은 계약서들을 나중에 다시 수정해야만 했다고 겔러는 설명했다.⁴⁵ 다른 언론인들도 새로운 업무방식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⁴⁶ 이것은 분명 신연방주의 방송구조 조정을 총괄하던 방송특임관실에서 담당했어야 할 과제였다.

2016년까지 물펜젤 특임관이 이끄는 신연방주 방송특임관실의 업무에 대해 부정적인 기억이 지배적인 것을 보면, 물펜젤의 선출을 슈피겔지가 그렇게 심하게 비난한 것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헬무트 콜 수상은 왜 그렇게 강력하게 바이에른 출신의 루돌프 물펜젤을 신연방주 방송특임관으로 밀어부쳤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다.

.....
⁴⁵ 동독 드메지에르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마티아스 겔러와의 인터뷰(문서번호 66).

⁴⁶ 베를리너 차이퉁紙 편집장들과의 인터뷰 기록(문서번호 64).

언론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동독에서의 의사표현과 언론의 자유-법적 근거	1968년 1월 12일	동독 헌법과 형사법	http://www.documentarchiv.de/ddr/verfddr.html und http://www.verfassungen.de/de/ddr/strafgesetzbuch74.htm (Stand: 19.09.2016)
2	소련 집지 슈프트닉 1988년 10월호와 관련한 국가보위부(비밀경찰)의 입장과 조치	1988년 10월 3일	동독 국가보위부(비밀경찰) 제XIX국, 동독 우편체신부, 우편신문국	Bundesbeauftragter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SU), Archiv Nr. MfS HA XIX 4774, Bl. 2 und MfS HA XIX 6935, Bl. 7-9
3	동서독 간의 신문잡지 교환 및 서독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동독 케이블망에 입력하는 문제-서독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방정부의 서면답변	1988년 10월 18일	서독 연방의회, 기민당 바인리히 의원, 내독성 프리스니츠 차관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3167, S. 15-16
4	슈프트닉 잡지의 금지 발표에 관한 국민의 반응-동독 국가보위부(비밀경찰)의 분석	1988년 11월 30일	동독 비밀경찰, 중앙정보분석팀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U)
5	동독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서독 케이블망 통합 실현-서독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방정부의 서면 답변	1989년 6월 23일	서독 연방의회 시민당 힐러 의원, 연방정부 체신부 리베 차관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4911
6	변혁기 동독 미디어의 변화를 보여주는 문서	1989-1990년	동독 정부와 정당, 사회단체	Nölte, Joachim, Dokumentation des Wandels im DDR-Journalismus Oktober '89 - Oktober '90; in: Claus, Werner (Hrsg.) 1991, Medien-Wende, Wende-Medien, Berlin: Vistas Verlag, S. 120-135, S. 142-171, S. 181-185, S. 221-226
7	군터 샤보브스키에 의한 동독의 새로운 여행 규정 발표(샤보브스키의 메모)-분석 : 서독 언론의 보도 때문에 장벽이 무너졌나?	1989년 11월 9일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정보국 비서 군터 샤보브스키, 동독 내각위원회, 포츠담 현대사연구소, 한스 허만 헤어틀레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 DDR (BSU), Stasi Mediathek, http://www.stasi-mediathek.de/medien/regelungen-fuer-reisen-und-staendige-ausreise-aus-der-ddr-vom-9-november-1989/blatt/164/ (Stand 31.3.2016);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	서독에서 동독 텔레비전을 수신하기 위한 설비-서독 연방의회에서 연방정부의 답변	1989년 11월 27일	서독 연방의회 사민당 소속 니제 의원, 연방통신부 리베 차관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5957, S. 36-39
9	홍보처의 구조개혁과 정부대변인의 기능과 업무에 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89년 11월 30일	동독 내각위원회, 홍보처, 동독 정부의 언론홍보국	Bundesarchiv, BArch/DC 20-1/3/2874; 3. Sitzung des MR vom 30. Nov. 1989
10	동독 주재 외국 기자의 활동 규정에 대한 내각위원회의 새로운 결정	1989년 11월 30일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외무부, 정부 대변인	Bundesarchiv, BArch/DC 20-1/3/2874; 3. Sitzung des MR vom 30. Nov. 1989 (geänderte Blattreihenfolge)
11	동독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관한 내각위원회의 결정	1989년 12월 21일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 로우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26; Ausgabebetag 29. Dezember 1989
12	미디어법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회의 임법위원회 결정문(발행체)(기준: 1990년 1월 9일)	1990년 1월 9일	동독 인민회의 의원/인민회의 결정	http://www.ddr89.de/ddr89/texte/medien.html vom 08.06.2010
13	신문배포 체계 확대에 관한 동독 정부당국과 서독 대형 출판사 간의 합의-배포지역의 분할	1990년 1월 23일	동독 체신부, 문화부, 정부홍보처, 하인리히 바우어 출판사, 부르다 출판사, 그루너+아이트 출판주식회사, 슈프링거 출판사	Bundesarchiv, BArch DC 9/1052, sowie Grafik aus: der neue vertrieb, 42. Jg. (1990), Nr. 4, S. 6.
14	서독의 수도 본에서 개최된 동서독 간의 최초 언론회담-동독과 서독의 공동성명	1990년 2월 8일	서독 연방내무부 차관 노이젤, 동독 홍보처 부대변인 바흐만	Tichy, Roland; Diel, Sylvia (Hrsg.): Deutschland einig Rundfunkland? Eine Dokumentation zur Wiedervereinigung des deutschen Rundfunksystems 1989-1991, München 2000, S. 231.
15	라디오방송에 관한 동서독 실무그룹 1차 회의-결과보고서	1990년 2월 16일	서독 연방 주정부의 라디오 담당 사무관, 동서독 라디오 실무그룹	Tichy, Roland; Diel, Sylvia (Hrsg.): Deutschland einig Rundfunkland. Eine Dokumentation zur Wiedervereinigung des deutschen Rundfunksystems 1989-1991, München 2000, S. 232-234
16	동독 정부 보도 및 정보서비스 규정-내각 위원회 결정	1990년 2월 22일	동독 내각위원회, 홍보처 정부대변인	Bundesarchiv, BArch/DC 20-1/3/2919 15. Sitzung des MR vom 22. Febr. 19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7	동독의 중앙통신사 ADN의 수정된 정관-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3월 8일	동독 내각위원회, 중앙통신사 ADN	Bundesarchiv, BArch/DC 20-1/3/2931 17. Sitzung des MR vom 8. März 1990
18	동독 구영우편을 통해 동독지역에서 서독의 신문을 배포하는 것에 관한 기본원칙-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3월 9일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체신부	Bundesarchiv, BArch DC 9/1038
19	동독 방송 임시 정관	1990년 3월 15일	동독 방송, 동독 내각위원회	Funkhaus Berlin (Hg.). Radio im Umbruch - Oktober 1989 bis Oktober 1990 im Rundfunk der DDR, Darstellungen, Chronik, Dokumentation, Presseresonanz, Berlin 1990, S. 373-377. Zitiert: "Internet: JournalisMus" (www.journalis-mus.de; Stand 26. April 2016)
20	동독에서 신문 잡지 배포에 관한 내각위원회의 시행령	1990년 5월 2일	동독 내각위원회, 드 메지에르 수상, 미디어정책부장관 물러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26, S. 245-246.
21	통일된 독일의 언론규정에 관한 서독 시민당 언론위원회의 논의	1990년 5월 18일	서독 시민당 언론위원회	Rundfunk und Fernsehen, 38. Jg., 3/1990, S. 459-461, zitiert aus: "Internet: JournalisMus": (www.journalis-mus.de)
22	통일독일 언론규정의 기본틀-서독 시민당 미디어정책 연방전문위원회의 결정	1990년 5월 30일	서독 시민당 언론위원회	Rundfunk und Fernsehen, 38. Jg., 3/1990, S. 455-458, zitiert aus: "Internet: JournalisMus": (www.journalis-mus.de)
23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새로운 구조에 관한 동독과 서독 언론노조의 성명서	1990년 6월 8일	동독 문화예술언론노조, 인쇄노조, 언론인협회, 서독 언론노조	Rundfunk und Fernsehen, 38. Jg., 3/1990, S. 466-468, zitiert aus: "Internet: JournalisMus": (www.journalis-mus.de)
24	노이에스 도이첸린트트紙 편집규약안	1990년 6월 13일	규약안 작성자, 편집국총회/노이에스 도이첸린트트紙	Fotokopie des Entwurfs plus Begleitschreiben der Autoren
25	독일과 외국 기자의 승인허가 권한을 수상 대변인에게 부여하기로 한 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6월 13일	동독 내각위원회, 드 메지에르 수상, 정부대변인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0, vom 12.07.1990, S. 592-59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6	언론심의위원회가 동의한 독일 텔레비전의 임시 방송규약	1990년 6월 27일	동독 텔레비전 방송국 DFF, 동독 언론심의위원회	Rundfunk und Fernsehen, 38. Jg., 3/1990, S. 446-454. Zitierweise: "Internet: JournalisMus" (www.journalis-mus.de; Stand 28.4. 2016)
27	언론심의위원회(Medienkontrollrat)	1990년 7월	안드레아스 & 하이케 그라프 (Andreas und Heike Graf)의 기사	Claus, Werner (Hrsg.) 1991. Medien-Wende, Wende-Medien, Dokumentation des Wandels im DDR-Journalismus Oktober '89 - Oktober '90, Berlin: Vistas Verlag, S. 7-15
28	동독 미디어의 장래-최고인민회의 논의	1990년 7월 5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원들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21. Tagung
29	언론정책을 담당할 동독 정부부처의 업무영역분할계획 및 조직구조	1990년 7월 6일	동독 미디어정책부	Bundesarchiv, BArch DC 9 / 1030
30	동독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관한 과도규정-내각위원회가 제출한 발의안에 대한 최고인민회의의 1차 심의	1990년 7월 20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각위원회, 언론정책부, 물러 장관, 최고인민회의 의원들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26. Tagung (Stenografische Niederschrift)
31	방송시청료 인상-동독 내각위원회에 제출된 초안	1990년 8월 15일	동독 내각위원회, 미디어정책부 차관 베커	BArch, DC 20-1/3/3047, 25. Sitzung des MR vom 15. Aug. 1990
32	통일조약 제36조-방송	1990년	통일조약	http://www.buzer.de/gesetz/2318/a32516.htm vom 26.07.2010
33	통일조약에 대한 부연설명서-방송을 보장하기 위한 과도규정(발체)	1990년 8월 31일	서독 연방의회, 연방정부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7760, S. 374.
34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연방주의 입법권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안-최고인민회의의 2차 심의	1990년 9월 13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슈바르츠 의원, 언론미디어상임위원회 대변인, 시민당 헬스베르그 의원, 민사당 비스키 의원, 녹색당 바이스 의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회프너, 동독 내무부 디스텔 장관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35. Tagung, S. 1713-1716.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5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연방주의 입법권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방송 과도규정	1990년 9월 14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베르그만-플 의장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63, vom 26.09.1990, S. 1563 ff
36	신연방주 주정부 방송 담당관 회의-신연방주 방송위원회의와 방송 담당 특임관 선출	1990년 10월 15일	신연방주 방송 담당관, 방송 담당 특임관	Tichy, Roland; Dietl, Sylvia (Hrsg.): Deutschland einig Rundfunkland? Eine Dokumentation zur Wiedervereinigung des deutschen Rundfunksystems 1989-1991, München 2000, S. 245-246
37	신연방주의 방송광과 주피수 확충-연방의회 의원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0년 11월 2일/ 11월 7일	연방정부 체신부 피츠 차관, 라베 차관, 연방의회 시민당 소속 헬치히 의원, 녹색당 호스 의원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427
38	어떻게 루돌프 뮐펜젤이 구동독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넘겨받았는가-슈피겔지 보도	1990년 12월 3일	신연방주 방송 담당 특임관 루돌프 뮐펜젤, 동독 라디오방송 사장 크리 스토프 징겔슈타인, 동독 텔레비전 사장 미하엘 알브레히트, 슈피겔 뮐헬름 비트호프 기자	Der Spiegel, Ausgabe 49/1990, S. 56 ff
39	동독 언론정책 연표	1991년	요아힘 뉘테(Joachim Nölte)	Nölte, Joachim. Dokumentation des Wandels im DDR-Journalismus Oktober '89 - Oktober '90; in: Claus, Werner (Hrsg.) 1991. Medien-Wende, Wende-Medien., Berlin: Vistas Verlag, S. 17-115
40	신탁관리청의 동독 신문사 매각정책-슈피겔지 보도	1991년 4월 22일	신탁관리청, 신연방주 신문사, 서독 출판사, 연방정부 콜 수상, 연방 외무장관 겐서	Der Spiegel, Ausgabe 17/1991
41	작센주의 민영방송과 뉴미디어법(작센민영 방송법)-작센 주정부가 부연설명과 함께 제출한 초안	1991년 5월 15일	작센 주의회, 작센 주정부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73 (http://edas.landtag.sachsen.de ; Stand 28.4.2016)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2	중부독일방송(MDR)에 관한 연방주 간의 조약	1990년 5월 30일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주의회	MDR- Rundfunkrat, (www.mdr.de/mdr-rundfunkrat/rechtliche-grundlagen/download1278_zc-a9ed3c80_zs-755a7482.htm)
43	브란덴부르크 방송규정-법안에 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심의	1991년 6월 12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각 정당 대표, 주정부 총리실장 린데 차관	Parlamentsdokumentation ELWIS des Landtags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19 vom 12.06.1991 (S. 1459-1467)
44	통일독일의 방송에 관한 연방주 간의 조약	1991년 8월 31일	연방주 주총리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2. Jahrgang, Nr. 42, S. 580 ff
45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 紙와 베를리너 차이퉁(Berliner Zeitung)紙를 통해서 본 장벽 붕괴에서부터 구동독지역 최초의 주의회 선거에 이르기까지 독일통일의 해에 있었던 구동독 언론의 변화	1992년	틸만 베크(Tilmann Beck)/브라이스 가우 소재 프라이부르크 알베르트 루드비히 대학 철학과 석사논문	Fotokopie der im Jahre 1992 vorgelegten Magisterarbeit
46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가 작성한 북부독일방송에 관한 법 초안-발체	1992년 1월 20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북독일방송사 NDR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260
47	신연방주지역의 신문언론의 발전전망과 구조적문제-연방내무부에 제출된 연구보고서(발체)	1991년 10월/ 1992년 2월	연방 내무부, 베아테 슈나이더 교수, 하노버 음대, 신문방송연구소	Schneider, Beate: Strukturen, Anpassungsprobleme und Entwicklungschancen der Presse auf dem Gebiet der neuen Bundesländer (einschl. des Gebiets des frühen Berlin-Ost), Forschungsbericht für den Bundesminister des Innern, Band I und des Bundesminister des Innern und Leipzig 1992.
48	신연방주의 신문통폐합 감독 및 신문 현황-독과점위원회 1990/1991년도 9차 평가서(발체)	1992년 7월 13일	독과점위원회, 연방정부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3031
49	신연방주 방송규정-독과점위원회 1990/1991년도 9차 평가서(발체)	1992년 7월 13일	독과점위원회, 연방정부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303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0	브란덴부르크 신문법-브란덴부르크 주의회 1차 심의	1992년 10월 28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학술연구문 화부장관 에더라인, 주의회 발터, 티어제, 비스키, 리츠만, 베트슈타트 의원	ELVIS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Stand: 13.09.2016
51	독일 방송의 개편-국영 라디오-연방의회 전체회의 토론	1992년 11월 6일	독일 연방의회 부의장 레나테 슈미트 외 다수의 의원들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11. Sitzung, Bonn, S. 10079- 10085
52	동독 국영통신사 ADN 아카이브를 베를린에서 코볼펜츠에 있는 연방문서국으로 이전하는 문제-연방의회 의원이 제출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2년 11월 23일	연방내무부차관 바펜슈미트, 시민당 바텐베르크 의원, ADN 통신사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3874
53	신연방지역의 소규모 언론사를 위해 유럽부 흥기금의 언론차관 및 근대화프로그램 도입- 시민당 의원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제안	1993년 5월 4일	독일 연방회의, 시민당 소속 의원들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4857
54	브란덴부르크 언론법	1993년 5월 13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주정부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Teil I - Nr. 10 vom 17. Mai 1993
55	독일통일 이후 서베를린의 라디오방송 리아스와 공영방송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에 관한 법안에 관한 연방회의의 입장 및 그에 대한 설명	1993년 8월 13일	독일 연방회의, 연방정부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Bundesrat-Drucksache 513/93
56	라디오방송 이전에 관한 조약-도이칠란트 퉁크와 '라디오 리아스'를 공영 '도이칠란트 라디오' 방송으로 전환	1993년 6월 17일	연방주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3, Teil I, Anlage 1, S. 2248.
57	독일통일과 신연방지역 재건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작성한 자료들-미디어 부분 발췌	1994년 2월 8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854
58	동독의 중앙통신인 ADN의 후속기관의 이전-디 차이트 인터넷판의 보도	1994년 2월 11일	독일통신 DDP, 전독일통신 ADN	Zeit Online. http://www.zeit.de/1994/07/keine-gute-nachricht (Stand 28.8.2016)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9	1994년 독일 미디어의 현황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고서-1994년 미디어보고서-신연방주와 관련된 부분 발췌	1994년 10월 20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8587, div. Auszüge
60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의 언론발전에 관한 보고서	2000년 7월 10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내무부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3. Wahlperiode, Drucksache 3/1418, 10.07.2000
61	동독의 미디어	2000년	위르겐 빌케(Jürgen Wilke)	Noelle-Neumann, Elisabeth; Schulz, Winfried und Wilke, Jürgen (Hrsg.). 2002. Fischer Lexikon. Publizistik, Massenkommunikation, Frankfurt/Main.
62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 공동방송국의 설립에 관한 국가조약법-브란덴부르크 주의회 1차 심의	2002년 9월 4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및 주의회, 베를린 시정부	Landtag Brandenburg, 3. Wahlperiode, Plenarprotokoll 3/61
63	디터 바이리히(Dieter Weirich, 1989-2001 도이체 벨레 방송국 사장) 교수와의 인터뷰 기록	2010년 6월 14일	도이체 벨레	
64	베를리너 차이통紙 편집장들과의 인터뷰 기록	2010년 8월 5일	베를리너 차이통지	
65	양케이트위원회 최종보고서 5/1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역사를 청산하고 사통당 독재의 결과를 극복하면서 민주적 법치국가로 이전하는 과정의 해결-미디어와 의견의 다원성(발췌)	2014년 3월 6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양케이트 위원회	Landtag Brandenburg, Schriften des Landtages Brandenburg Heft 5/2015. http://www.landtag.brandenburg.de/media_fast/5701/Schriftenreihe_5_2014_Internet.pdf (Stand 18.04.2016)
66	동독 드 메지에르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마티아스 켈러와의 인터뷰	2016년 5월 17일	마티아스 켈러 동독 과도개혁내각 대변인	Interview der Forschungsgruppe Wiedervereinigung des Instituts für Koreastudien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문서 요약

문서 요약(문서번호 1~66)

담당자 / 기관_ 동독 헌법과 형사법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헌법과 형사법 중 언론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1968년 4월 6일에 제정된 후, 1974년 10월 7일에 개정된 동독 헌법의 27조에는 모든 동독 국민들이 헌법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공개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1968년 1월 12일에 제정된 후 1974년 12월 19일에 개정된 형법에는 이 조항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 106조는 반국가적 선동과 관련하여 (1) 사회주의 국가질서 또는 동독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문서, 물건 또는 동독의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을 폄하하는 상징물을 도입하거나 제작·배포 또는 게시하는 사람은 1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며, (2) 범법행위를 위해 동독 체제에 반하는 투쟁을 하는 단체 또는 저술을 이용하는 사람은 2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였다.

219조는 불법적인 결사체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동독의 국가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기구, 그룹에 참가하는 사람은 3년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1979년 6월 28일에 개정된 형법의 219조에 따라 이 조항은 국제적인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행위는 구체적으로 (1) 동독의 국가이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외국에 전하거나 전해지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하거나 기록하도록 도와주는 것, (2) 법규정을 어기고 외국의 조직,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문서와 원고 또는 다른 자료를 넘겨주는 행위가 포함되었다.

출처_ <http://www.documentarchiv.de/ddr/verfddr.html> und <http://www.verfassungen.de/de/ddr/strafgesetzbuch74.htm> (Stand: 19.09.2016)



문서
번호 2

소련 잡지 슈프트닉 1988년 10월호와 관련한 국가보위부(비밀경찰)의 입장과 조치
1988년 10월 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국가보위부(비밀경찰) 제XIX국, 동독 우편체신부, 우편신문국

내용_

이 문서는 1988년 동독 정부가 소련에서 발행되는 저널 슈프트닉을 압수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각위원회 언론국은 슈프트닉 1988년 10월호를 압수하고 1,800,000부를 배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10월호에 당시 고르바초프가 추구하던 글라스노스트의 정책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가 확대적용된 상태에서 작성된 스탈린주의에 관한 기사들이 여러 편 실렸기 때문이었다. 우편신문국은 각 지역의 우체국장과 신문보급국장들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1988년 11월 19일부터 우편으로 배달되는 신문의 리스트에서 슈프트닉지를 삭제한 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1. 슈프트닉지는 1989년 1월 1일자로 동독의 모든 신문배달리스트의 자료에서 삭제
2. 1988년 12월호의 구독 취소 및 1989년의 구독 취소
3. 정기구독자의 요금 즉시 환불
4. 슈프트닉지 문제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의 대체는 별도의 구좌를 통해 처리

출처_ Bundesbeauftragter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StU), Archiv Nr. MfS HA XIX 4774, Bl. 2 und MfS HA XIX 6935, Bl. 7-9

동서독 간의 신문잡지 교환 및 서독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동독 케이블망에 입력하는 문제-서독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방정부의 서면답변

1988년 10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의회, 기민당 바인리히 의원, 내독성 프리스니츠 차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의회 기민당 소속 바인리히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독성 프리스니츠 차관이 답변한 것이다. 바인리히 의원은 신문매체가 동독과 서독 간에 원활히 교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방신문사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동서독 간에 설치하는 문제와 동독 주민들의 정보획득의 자유 확대에 관해 질문하였다. 나아가 동독의 케이블망에 서독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해 질의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프리스니츠 차관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과 서독 간에 상호 신문, 잡지, 서적의 교류를 개선하는 문제는 1972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에 수록된 부록에 이미 포함되었다. 그러나 (1988년) 현재까지도 동독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1986년에 체결된 문화협정은 전문저널도 구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독 행정당국이 서독의 저널을 구독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일간신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결과적으로 기본합의서의 체결 결과로 언론매체의 교류가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전문저널을 배송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하지만 동독 시민의 이해에 반한다고 규정될 수 있는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된 모든 인쇄물의 배송은 여전히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서독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 안테나를 통해서 서독의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지역의 케이블망에만 그것을 포함시켰을 뿐이다. 동독의 동남부나 북동부지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로운 케이블선을 통해 난청지역이었던 곳 중에서 몇 군데만 서독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서독의 방송을 시청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한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3167, S. 15-16



문서
번호 4

슈프트닉 잡지의 금지 발표에 관한 국민의 반응—동독 국가보위부(비밀경찰)의 분석
1988년 1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비밀경찰, 중앙정보분석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비밀경찰 정보분석팀이 소련에서 발행되는 저널 ‘슈프트닉’의 배포금지 조치에 관한 국민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슈프트닉지의 금지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자들이다. 비판의 주된 논지는 잘못된 역사관으로 인해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고 그로 인해 동독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발단은 슈프트닉지가 ‘역사적 진실의 금지에 반하여’라는 평론을 싣고 그와 관련하여 소련 공산당과 동독 공산당의 역사 기술의 왜곡에 관한 논란이었다. 슈프트닉지의 배포금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주로 학술 영역과 대학에서 제기되었다. 배포금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이번 조치가 국민들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현수막 홍보자료, 편집진에 보내는 서신, 항의문에 서명 모음 그리고 독소친선협회로부터의 탈퇴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감지되었다.

출처_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BStU)

1989년 6월 23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연방의회 사민당 힐러 의원, 연방정부 체신부 라베 차관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연방의회 사민당 소속 힐러 의원의 질의에 대한 연방체신부 라베 차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힐러 의원은 동독의 방송 프로그램을 서독 방송망에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라베 차관은 1989년 6월 23일의 답변을 통해 동독의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서독 체신부의 송신망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서독 전역에 동독의 방송을 송신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송신망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독 방송과 서독 연방체신부 간에 프로그램의 송신 확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고 했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4911

문서
번호 6

변혁기 동독 미디어의 변화를 보여주는 문서
1989-1990년

담당자 / 기관_ 동독 정부와 정당, 사회단체

내용_

이 문서는 변혁기 동독 언론의 변천사를 보여 주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발췌해서 정리한 것이다. 문서 전문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하였기 때문에 1989년 11월에서 1990년 10월까지 동독의 언론 방송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논의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여준다. 여기에 포함된 문서들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문서 1: 1989년 10월 19일에 있었던 동독 기자연맹 의장단회의에 관한 보도자료

문서 2: 1989년 10월 24일자 동독 영화 및 TV제작사연맹 이사회의 공식발표

문서 3: 1989년 10월 21일자 동독방송 내 사통당 기본조직 당활동반의 성명서

문서 4: 1989년 11월 6일자 기민련(CDU) 기자들의 미디어법 초안 제시

문서 5: 1989년 11월 8일 제10차 사통당 중앙위 회의에서의 에곤 크렌츠(Egon Krenz)의 연설문 발췌

문서 6: 1989년 11월 10일 제10차 사통당 중앙위 회의에서의 귄터 샤프브스키(Günter Schabowski)의 연설문 발췌

문서 7: 1989년 11월 14일 제9차 당간부회 회의 관련 독일민주노동당(DBD) 간부회의 논평 발췌

문서 8: 1989년 11월 16일자 제16차 동독 기자연맹(VDJ) 베를린 지구 간부회 회의에서의 결정문

문서 9: 1989년 11월 25일자 현재와 미래에 관한 기민당(CDU)의 입장표명보고서 발췌

문서 10: 1989년 12월 5일자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학을 위한 독립적인 학술협회 구성을 위한 성명서

문서 11: 1989년 12월 17일자 사통당 임시정당대회에서의 그레고어 기지(Gregor Gysi)의 연설문 발췌

문서 12: 미디어법 관련 의견 1989년 12월 20일자 직업연맹들의 공동 제안

문서 13: 1989년 12월 21자 동독 TV 및 동독 라디오에 관한 결정문

문서 14: 1990년 1월 13일자 변화하는 사통당/PDS의 재산 관련 당간부회의 결정문

문서 15: 1990년 1월 16일자 클라우스 볼프(Klaus Wolf) 장관의 기자회견에 관한 보도자료 발췌

문서 16: 1990년 1월 17일자 요아힘 헤어만(Joachim Herrmann)에 대한 동독 인민회의의 조사위원회의 청문회 녹취기록 발췌

문서 17: 1990년 1월 23일자 국영미디어의 기회균등 관련 동독 정부 공보부의 발표

문서 18: 1990년 1월 25일/26일자 동독 기자연맹 특별위원회의의 성명서

문서 19: 1990년 2월 5일자 의사표현, 정보, 미디어 자유 보장 관련 인민회의의 결정문

- 문서 20: 1990년 2월 15일자 언론출판물 등록에 관한 규정
 문서 21: 1990년 2월 22일-25일자 라이프치히 정당대회에서 결정된 사민당(SPD) 기본강령 발췌
 문서 22: 1990년 3월 9일자 동독 방송 편집부장회의 회칙
 문서 23: 1990년 3월 15일자 동독 방송의 임시규약
 문서 24: 1990년 3월 15일자 독일 TV방송의 기본규정 관련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문
 문서 25: 1990년 3월 28일자 동독 정부에 대한 미디어조정위원회의 성명서
 문서 26: 1990년 3월 17일자 기민당(CDU) 강령 발췌
 문서 27: 1990년 4월 26일자 동독 신문잡지출판연맹의 요구안 발췌
 문서 28: 고틀프리트 뮐러(Gottfried Müller, CDU) 미디어정책부장관과의 인터뷰
 문서 29: '동독언론출판물유통에관한규정' 발췌
 문서 30: 1990년 여름에 제시된 라디오 및 TV 관련 연방법 적용을 위한 법안의 전문
 문서 31: 1990년 9월 13일자 동독 인민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의 전문
 문서 32: 통일조약 제36조
 문서 33: 1990년 9월 20일자 베를리너 차이퉁紙 논평
 문서 34: 마지막 동독 언론 통계, 출처: 1990년 9월 12일자 베를리너 차이퉁紙
 문서 35: 베를린, 1990년 7월 22일자 '존탁(Sonntag)紙에 실린 '새로운 시대에서의 경험'에 관한 언론인들과의 인터뷰
 - 토마스 라인카우프(Thomas Leinkauf). 베를리너 차이퉁紙.
 - 울리케 부흐만(Ulrike Buchmann). 베를리너 알게마인紙.
 - 홀데-바바라 울리히(Holde-Barbar Ulrich). 여성주간지 '너를 위해(Für Dich)'.
 - 하이너 노스케(Heiner Noske). DS 문화채널(DS Kulturkanal) 방송.
 - 게오르크 랑거베크(Georg Langerbeck). 11 99(ELF 99) 방송.

출처 Nölte, Joachim. Dokumentation des Wandels im DDR-Journalismus Oktober '89 - Oktober '90; in: Claus, Werner (Hrsg.) 1991. Medien-Wende, Wende-Medien. Berlin: Vistas Verlag, S. 120-135, S. 142-171, S. 181-185, S. 221-226

문서
번호 7

군터 샤보브스키에 의한 동독의 새로운 여행규정 발표(샤보브스키의 메모)
-분석 : 서독 언론의 보도 때문에 장벽이 무너졌다?

1989년 11월 9일

담당자 / 기관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정보국 비서 군터 샤보브스키, 동독 내각위원회, 포츠담 현대사연구소, 한스 허만 헤어틀레

내용

이 문서는 1989년 11월 9일 동독 정부의 대변인 군터 샤보브스키가 기자회견에서 ‘동독 주민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것과 관련된 현대 사학자의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군터 샤보브스키의 발표 내용의 핵심은 동독 주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제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이었다. 해외여행을 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개인도 해외여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 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하였다. 해외여행을 위해 동서독 간의 모든 국경검문소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동독 정부는 이 규정을 1989년 11월 10일에 공포하기로 하였었다. 그러나 11월 9일 기자회견을 하던 샤보브스키는 그 결정을 넘겨보았다.

샤보브스키가 여행규정의 변화를 미리 발표한 것과 그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어떻게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이어졌는지에 관해 포츠담 현대사연구소의 헤어틀레 박사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독 주민들이 장벽과 국경검문소로 밀려나온 직접적인 이유는 동독 텔레비전에 생방송되었던 기자회견이 아니라(11월 9일 저녁 7시), 서독의 방송들이 이 기자회견에 관해 보도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수의 동독 주민들이 국경검문소에 와서 여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당시 국경검문소의 담당자들은 그러한 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어떠한 지시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동독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11월 10일에 여행자유화가 발표되어야 했고, 그를 위해 11월 9일 저녁에 국경검문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에 필요한 준비 조치가 내려졌어야 했다.

그러나 서독 제1국영방송인 ARD의 저녁 메인뉴스쇼 ‘Tagesthemen’은 11월 9일 22시 45분에 “오늘 11월 9일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동독 당국이 모든 국경이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장벽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라고 전했다. 서독 미디어의 이런 보도들로 인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주민들이 서둘러서 장벽으로, 국경검문소로 향하였고, 그를 통해 발산된 다이내믹한 힘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장벽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출처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 DDR (BStU). Stasi Mediathek. <http://www.stasi-mediathek.de/medien/regelungen-fuer-reisen-und-staendige-ausreise-aus-der-ddr-vom-9-november-1989/blatt/164/> (Stand 31.3.2016);

담당자 / 기관 서독 연방의회 사민당 소속 니제 의원, 연방체신부 라베 차관

내용

이 문서는 동독 방송 프로그램을 서독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서독 연방의회 사민당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연방체신부 차관이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방송을 서독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독 프로그램을 서독 방송망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사민당의 니제 의원과 파울리 의원의 질문에 라베 차관은 1989년 11월 27일의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동독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미 서독 연방주들의 미디어법에 근거하여 송신 가능한 지역에서는 독일전신전화의 광케이블망을 통해 이미 송신되고 있다. 동독의 프로그램들이 위성을 통해 송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에 송신하기 위해서는 500개가 넘는 송수신국이 설치되어야만 한다. 서독 전역에 동독 프로그램을 송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파망 또는 케이블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비용문제로 인해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이 비용은 송신하려는 방송국에서 부담해야만 한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통해 저작권보호문제 또는 기술적,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나아가 동독 방송 프로그램을 당장 서독 전역에 방송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동독 텔레비전을 수신하는 문제, 기술적인 문제와 재정에 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미 연방정부의 체신부와 내독성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5957, S. 36-39

문서
번호 9

홍보처의 구조개혁과 정부대변인의 기능과 업무에 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89년 1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홍보처, 동독 정부의 언론홍보국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내각위원회의 구조변경에 관한 것이다. 특히 정부 대변인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실에 소속되었던 홍보처가 동독 언론홍보국으로 개칭되고 새롭게 구조개편 되었다. 이 기구의 관리자는 정부 대변인이며, 그는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정부 내각위원회의 결정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정부 대변인은 국내외 언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부의 업무와 국가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준다. 내각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언론에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부 대변인이 관여하도록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874; 3. Sitzung des MR vom 30. Nov. 1989

담당자 / 기관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외무부, 정부 대변인

내용

이 문서는 동독 주재 외신기자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한 내각위원회의 결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각위원회는 외무부 홍보실이 제출한 방안에 따라 동독에 상주하는 외신 특파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동독 주재 외신 특파원과 외국 출판기관의 활동에 관한 규정'과 '외국 저널리스트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 업체 시설의 업무에 관한 지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규정들은 저널리스트들이 서로 상주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로 합의한 유럽안보협약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외국언론과 특파원들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게 되었다. 동독 내에 사무실 개설 또는 특파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무부 언론관계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승인허가가 거부될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국가기관과 국책 기구 사업장 시설들이 언론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모든 관청과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은 발표된 정보의 정치적, 사실적 정확성을 보장하고 그것이 동독 국가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명시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무부에 외신기자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외무부가 답사 등 외신기자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조직할 수도 있다. 중요한 국내, 국제 행사의 경우 그 행사의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외신기자센터를 통해 보도권과 외신인가증을 관리한다. 유럽안보협력조약의 규정에 따르면 언론이 합법적인 업무를 할 때에는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중앙기관에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뷰, 영상, 사진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것과 나아가 국가기관이나 사회기관, 개인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국가의 모든 조직과 기관은 언론담당자를 임명하여 언론인들의 질의에 신속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한다. 외무부는 '동독 주재 외신특파원을 위한 소식지'를 작성하여 공개될 정보를 알리도록 한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C 20-I/3/2874; 3. Sitzung des MR vom 30. Nov. 1989 (geänderte Blattreihenfolge)



문서
번호 11

동독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관한 내각위원회의 결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라디오, 텔레비전 조직에 대한 내각위원회의 새로운 결정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각위원회는 1989년 12월 21일에 기존의 ‘텔레비전 라디오 국가위원회’가 내각위원회 산하 기관이며 그 명칭을 ‘동독 텔레비전’과 ‘동독 라디오’로 개칭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기구의 책임자는 내각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으며, 이 기구 자체는 국가위원회의 후속기관으로서 법인화된다. 내각위원회가 1968년에 ‘텔레비전 라디오 국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도입하였던 결정은 1989년 12월 31일자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26; Ausgabetag 29. Dezember 1989

담당자 / 기관_ 동독 인민회의 의원/인민회의 결정

내용_

이 문서는 한스 모드로우 개혁정부 시기에 중앙원탁회의와 최고인민회의가 미디어와 관련하여 도입한 새로운 규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회의가 새로운 미디어법을 완성하지 못하자 원탁회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의사표현, 정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결할 것을 권유했다. 그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새로운 미디어법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갖게 될 총 16개 항목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 항목 중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특별히 강조되었다. 이 조항은 아주 광범위한 것으로 예술적 자유 및 특정 의견에 대해 반박하거나 다른 의견을 표명할 자유도 포함되었다. 동독 미디어에 대한 모든 검열이 금지되면서 동시에 미디어가 갖는 책임도 강조되었다. 특히 “미디어는 국민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나아가 내각위원회가 모든 미디어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임무를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이 항목이 특별히 중요했던 이유는 사통당의 당기관지인 노이에스도이칠란트紙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항목들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원탁회의의 제안에 따라 미디어조정위원회(Medienkontrollrat)를 구성했다. 라디오 및 TV 방송국장, ADN19통신 사장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기구 대표들이 미디어조정위원회에 보고의무를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디어법 제정안은 법무부에서 준비하며,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된 후에 제정하기로 하였다.

출처_ <http://www.ddr89.de/ddr89/texte/medien.html> vom 08.06.2010



문서
번호 13

신문배포 체계 확대에 관한 동독 정부당국과 서독 대형 출판사 간의 합의-배포
지역의 분할

1990년 1월 23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체신부, 문화부, 정부홍보처, 하인리히 바우어 출판사, 부르다 출판사, 그
루너+야르 출판주식회사, 스프링어 출판사

내용

이 문서는 한스 모드로우 수상의 개혁정부가 동독의 신문배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
독의 출판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체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언론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관한 최고인민회의의 의결을 바탕으로 동독 체
신부, 문화부, 홍보처는 서독의 4대 출판사와 함께 동독에 신문배포를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목적은 기존의 동독 우편배포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었다. 그
업무는 1990년 2월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동독의 TV, 라디오의 광고에 관한 규
정이 법적으로 정비되는대로 서독의 출판사들에게도 광고시간을 배정하여 시장화할 수 있
도록 해 주기로 하였다. 이 회사는 서독의 4대 출판사와 동독우편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 회사를 통해 서독과 외국의 출판사가 판매를 원하는 모든 신문출판물
이 판매될 것이다. 판매대금은 동독 마르크화로 지불된다. 출판물의 원활한 배포를 지원
하기 위해 체신부는 새로 정비된 운반차량 100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출처 Bundesarchiv, BArch DC 9/1052. sowie Grafik aus: der neue vertrieb, 42. Jg.
(1990), Nr. 4, S. 6.

담당자 / 기관 서독 연방내무부 차관 노이젤, 동독 홍보처 부대변인 바흐만

내용

1990년 2월 8일에 서독 연방내무부 차관과 동독 홍보처 부대변인이 서독의 수도 본에서 동서독 미디어회담을 처음 가졌다. 이 회담의 목적은 동독에서의 언론과 방송의 다양성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특히 신문과 잡지 배송 체계의 개선과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동독 모든 지역에 원활하게 송신하는 것, 서독 신문잡지의 구독을 자유롭게 하는 것 등이었다. 나아가 동독의 한스 모드로우 수상과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이 1989년 12월 19일에 합의한 것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동서독 공동의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휘하에 언론과 방송을 각각 담당할 실무그룹을 두기로 하였다.

출처 Tichy, Roland; Dietl, Sylvia (Hrsg.): Deutschland einig Rundfunkland? Eine Dokumentation zur Wiedervereinigung des deutschen Rundfunksystems 1989-1991, München 2000, S. 231.

문서
번호 15

라디오방송에 관한 동서독 실무그룹 1차 회의-결과보고서

1990년 2월 16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연방 주정부의 라디오 담당 사무관, 동서독 라디오 실무그룹

내용

이 문서는 동서독 미디어위원회 산하 방송실무그룹의 1차 회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는 연방 주정부 차원, 연방정부-주정부 차원, 전 독일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1990년 2월 15일 서독 연방정부 수상과의 회의 결과에 따라 동서독 간의 협상과정에서 법적으로 주정부가 담당하는 의제가 논의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회의를 주정부가 주도하기로 하였다. 방송과 관련된 업무가 바로 그런 예이다. 그에 따라 라인란트-팔츠주가 동서독 실무그룹의 회의에 참가하는 서독 측 대표단의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다. 서베를린 정부가 각 주정부의 방송 담당 사무관들과의 연락을 맡기로 했다. 서베를린과 라인란트-팔츠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동독 정부의 연락을 책임지게 된다. 방송위원회에는 모든 주정부가 대표를 파견할 수 있으며 주정부의 대표가 연방정부의 대표보다 다수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신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연방이 다수를 점한다. 새로 구성될 동서독 미디어위원회에 언론과 방송 부문을 분리하여 실무그룹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방송국과 민영방송들은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구성원이 될 수는 없다. 서독의 제1국영방송인 ARD와 제2국영방송 ZDF를 동독의 모든 가구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상송신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위성 또는 케이블망을 통해 송신하는 것보다 실현하기 수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동서독 공동의 미디어규정을 작성하고 방송구조를 연방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전국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한다. 동독 방송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세우기 위해 먼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로 한다.

출처 Tichy, Roland; Dietl, Sylvil (Hrsg.): Deutschland einig Rundfunkland. Eine Dokumentation zur Wiedervereinigung des deutschen Rundfunksystems 1989-1991, München 2000, S. 232-234

담당자 / 기관 동독 내각위원회, 홍보처 정부대변인

내용

이 문서는 동독 내각위원회가 15차 회의에서 동독 국정홍보처의 구조와 정관에 관해 논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 정관은 국정홍보처 PIDR의 구조와 업무를 규정하고, 정부대변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내각위원회 위원장 휘하에 있던 홍보처의 후속기관으로 내각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변신하며 베를린에 본청을 두게 된다. 국정홍보처의 주 업무는 여론에 정부정책을 알리고 보도를 담당하는 동독과 외국의 언론 미디어를 지원해 준다. 국정홍보처는 매주 정부언론보도를 작성하고 매달 '악젠트'라는 저널을 발행하도록 한다. 국정홍보처는 나아가 동독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의 수와 종류, 출판부수를 유엔에 보고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정부대변인이 국정홍보처의 책임자가 되며, 그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의 구성, 업무진행방식과 업무영역을 결정한다(조직도 포함).

출처 Bundesarchiv, Barch/DC 20-1/3/2919 15. Sitzung des MR vom 22. Febr. 1990

문서
번호 17

동독의 중앙통신사 ADN의 수정된 정관-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3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중앙통신사 ADN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내각위원회 17차 회의에서 결정된 중앙통신사인 ADN의 정관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DN의 정관이 통과되고 1990년 3월 9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ADN은 동독의 유일한 통신사로 공식적으로는 내각위원회의 산하기관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통당의 당기구로 간주되었고 사통당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 본사는 베를린에 있었다. 새로운 정관을 통해 ADN은 독립적이고 공적으로 감시되는 기구가 되었다. 그 업무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라 ADN은 이제 동독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그 업무는 다른 기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만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사실에 기반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소식을 전달하며 영상과 사진, 문서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되었다. 통신사를 대표하는 책임자는 구성원들의 다수가 제안하여 선출하고, 동독 수상이 임명하거나 파면하도록 하였다. 이사회는 통신사 사장으로 부터 독립적인 공적 감시기구이며 통신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사회의 업무에는 최고인민회의가 도입한 미디어규정과 정관의 준수 여부를 감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931 17. Sitzung des MR vom 8. März 1990

문서
번호 18

동독 국영우편을 통해 동독지역에서 서독의 신문을 배포하는 것에 관한 기본원칙-
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체신부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1월 23일에 서독의 대형 출판사들과 합의한 내용이 원탁회의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게 된 후에 동독 내각위원회가 신문잡지의 판매에 관한 기본원칙에 관해 내린 결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독일제국우편은 1990년 3월부터 인력과 기술적 조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서독과 다른 외국의 신문잡지의 배포 업무를 시작한다. 신문과 잡지는 동독에서의 가격 수준으로 서독의 출판사에서 구매한다. 동독의 시장가격은 서독의 마르크화로 지불하는 가격보다 최대 3배 비쌀 수 있다. 체신부장관은 신문잡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신문잡지 중에서 동독의 국정홍보처에 등록된 것들만 배포가 허용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 DC 9/1038



문서
번호 19

동독 방송 임시 정관

1990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방송, 동독 내각위원회

내용

이 문서는 동독 내각위원회가 1990년 3월에 도입한 새로운 방송 정관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정관을 통해 동독의 방송은 국가기구에서 공영기구로 변신하였다. 그것은 1990년 2월 5일에 최고인민회의가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지식,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임시 정관은 그것이 발표되면서 동시에 효력을 갖게 되고, 체제 전환 과정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법적인 문제 또는 재정적 문제, 업무와 근로방식, 지도부의 구조, 직원의 이익 대표자(노동조합), 법적 대리인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확정될 것이다.

출처 Funkhaus Berlin (Hg.). Radio im Umbruch - Oktober 1989 bis Oktober 1990 im Rundfunk der DDR, Darstellungen, Chronik, Dokumentation, Presseresonanz, Berlin 1990, S. 373-377. Zitierweise: „Internet: JournalisMus“ (www.journalis-mus.de; Stand 26. April 2016)

문서
번호 20

동독에서 신문잡지 배포에 관한 내각위원회의 시행령

1990년 5월 2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내각위원회, 드 메지에르 수상, 미디어정책부장관 물러

내용

이 문서는 동독 내각위원회가 신문잡지의 배포와 관련하여 발표한 시행령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2월 5일에 최고인민회의가 결의한 의사표현과 정보지식의 자유, 미디어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신문잡지의 배포가 제도화되게 된다. 신문잡지의 배포를 위해서는 미디어정책부에 등록해야만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배포권이 박탈될 수 있다. 나아가 미디어정책부장관은 이 규정이 지켜지도록 관리할 책임을 갖는 동시에 배포권을 박탈할 권한도 갖는다. 그를 위해 벌금을 책정해 부과할 수도 있다. 신문잡지의 배포권이 박탈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을 때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26, S. 245-246.

문서
번호 21

통일된 독일의 언론규정에 관한 서독 사민당 언론위원회의 논의

1990년 5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사민당 언론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사민당이 통일된 독일의 언론발전을 위한 기본지침과 규정에 관해 작성한 초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공영방송의 틀에서 서독 방송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이중구조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독에 이미 있는 ARD와 ZDF 외에 동독지역만을 위한 제3의 공영방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을 것이다. 대신 동독과 서독의 라디오와 TV 체계가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지역에서도 방송은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연방주가 담당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라디오는 각 지역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TV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독일 전역을 커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공영방송의 재원은 앞으로 시청료와 광고료를 통해 충당되며 동독과 서독의 시청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줄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독 신문을 경쟁력있게 만들고 신문잡지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서독 출판사들에 의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출처_ Rundfunk und Fernsehen, 38. Jg., 3/1990, S. 459-461, zitiert aus: „Internet: JournalisMus“: (www.journalis-mus.de)

담당자 / 기관_ 서독 기민당 언론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기민당의 언론정책 연방전문위원회에서 1990년 5월 30일에 결정된 통일된 독일의 미디어규정을 위한 기본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통당에 의한 권력독점 체제에서 만들어진 동독 언론 체계의 이념적 구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을 위한 변혁과정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동독의 미디어 체계를 변혁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대부분이 구사통당의 엘리트였던 동독 언론의 간부들을 교체하는 것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지역에서 방송, 신문, 언론인 양성과 관련하여, 특히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라는 사실과 언론구조를 서독의 체계와 가능하면 유사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특히 주의해야만 한다. 방송과 관련하여 동독의 방송 체계를 서독에 존재하는 이중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독지역을 위한 제3의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거부한다. 동독의 신문은 더 이상 국가의 허가과 검열을 받을 필요가 없고 서독 연방주 신문법의 구조를 따라야만 한다. 그 목적은 출판사와 별개의 신문배포 체계를 구축하여 신문의 다양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언론인 양성과정에서는 미디어영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구와 제도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출처_ Rundfunk und Fernsehen, 38. Jg., 3/1990, S. 455-458, zitiert aus: „Internet: JournalisMus“: (www.journalis-mus.de)

담당자 / 기관_ 동독 문화예술언론노조, 인쇄노조, 언론인협회, 서독 언론노조

내용_

이 문서는 동독과 서독의 언론노조가 독일통일을 앞두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구조변화에 대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언론노조는 동독 방송에 관한 현재 서독 연방정부 내의 논의가 주로 서독 방송국의 수입원과 영향력을 확보하고 동독의 미디어를 기존의 체계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비판한다. 지금은 동독지역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예를 들어 동독지역에는 지금 민주적 제도와 구조에 관련한 정보욕구가 아주 팽창해 있다. 이러한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독 사회의 특별한 문화와 언론구조를 고려하여 동서독의 언론이 점차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이해하기 위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동독의 엄청난 예술적 잠재력도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동독지역을 위한 공영방송 ORD를 설립하는 것이 이 지역의 사회적 잠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독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서독에서 실행되고 있는 민영방송을 포함하는 기존의 이중적인 방송구조를 동독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독지역에서 서독에서보다 훨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만 한다. 동독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에 따르면 동독지역의 공영방송을 설립할 때 서독의 ARD와 ZDF의 모델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방송이 국가로부터 독립되고 다양성을 보장받으며 사회적 공공성을 감시받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구조들은 충족시켜야만 한다.

한편 방송에서도 연방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는 언론노조 내에서도 합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동독지역에 배정된 주파수 영역이 너무 좁고, 방송국의 설비도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은 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동독지역의 방송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거나 인력이 과잉고용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앞으로 동독지역의 공영방송은 시청료를 통해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시청료를 통한 수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광고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고, 그래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노조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간의 과도기에는 모든 연방주들이 참가하는 방송재단과 같은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여 공공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출처_ Rundfunk und Fernsehen, 38. Jg., 3/1990, S. 466-468, zitiert aus: „Internet: JournalisMus“: (www.journalis-mus.de)

담당자 / 기관 규약안 작성자, 편집국총회/‘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

내용

이 문서는 사통당의 당기관지였던 ‘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 소속 직원 중에 개혁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편집국 총회에 제출한 새로운 편집규약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규약안의 핵심은 신문사 내에서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규약의 전문에서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지가 당기관지이며 사회주의적 일간지임을 확인하고, 이어 편집국 업무의 기본원칙과 개별 단체 및 개인의 업무 내역이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편집국 조직, 편집국장, 부서장 회의, 편집국 총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규약안은 특히 언론인으로서 편집장은 자기책임과 독립성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윤리에 어긋날 경우, 업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규약안의 준수 여부는 비밀리에 선출되고 부서장 회의에 속하지 않는 이들로 구성된 명예위원회에서 감시하게 되어 있다. 규약안은 편집국 총회의 결정에 의해 발효되며, 이를 위해서는 편집장들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하다.

이 규약안은 독일통일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정적이었던 시대에 등장한 흥미로운 자료이다. 사통당의 당기관지였던 신문이 타협을 시도한 것이다. 즉, 자력으로 개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되, 새로운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민주적 사회주의의 기본원칙들을 보존하는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출처 Fotokopie des Entwurfs plus Begleitschreiben der Autoren



문서
번호 25

독일과 외국 기자의 승인허가 권한을 수상 대변인에게 부여하기로 한 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6월 13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내각위원회, 드 메지에르 수상, 정부대변인

내용

이 문서는 동독 내각위원회가 저널리스트의 승인업무에 관해 결정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베를린의 언론센터가 수상이 관할하는 언론인의 허가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1990년 7월 1일부터는 동독 언론인협회의 단일한 프레스패스가 도입된다. 기존의 동독 수도 베를린 거주 독일 언론인을 위한 증명서는 1990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서독의 증명서는 즉시 유효하게 된다. 동독 정부 대변인과 서독 정부 대변인 간에 동서독의 프레스패스가 1991년 1월 1일부터 발급지역과 관계없이 동서독 모든 지역에서 유효성을 갖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동베를린 기자협회가 서독의 본 연방기자협회와 상호주의 원칙하에 협회 소속의 기자들이 기자회견에 참가하고 질문할 권리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0, vom 12.07.1990, S. 592-593

담당자 / 기관 동독 텔레비전 방송국 DFF, 동독 언론심의위원회

내용

이 문서는 동독의 언론심의위원회가 동독의 새로운 주 방송국으로 출범하는 DFF의 임시 정관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DFF는 연방주의 원칙에 따르는 독립적인 공영방송으로 자치행정권을 갖고, 공익을 위해 활동하며, 면세혜택을 받고, 방송지역 내의 시청료가 재정적 기반이다. DFF의 업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생산과 방송이다. 송신기술과 관련된 것은 국가기업인 독일제국우편과 계약을 체결한다. 방송위원회와 이사회는 방송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일한다. 이사회는 구성은 정당과 교회, 기업협회 노조와 다른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방송위원회는 프로그램위원회와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국장을 선출한다.

출처 Rundfunk und Fernsehen, 38. Jg., 3/1990, S. 446-454. Zitierweise: „Internet: JournalisMus“ (www.journalis-mus.de; Stand 28.4. 2016)



문서
번호 27 언론심의위원회(Medienkontrollrat)
1990년 7월

담당자 / 기관_ 안드레아스 & 하이케 그라프(Andreas und Heike Graf)의 기사

내용_

이 문서는 '미디어 통일'에 관한 문서집에서 발췌한 안드레아스와 하이케 그라프의 논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내각에서 설치한 언론심의위원회는 '미디어정책의 시끄러운 전쟁 속의 견고한 섬'이었다. 이 기구는 변혁과 새로운 시도의 시기이면서도 여전히 사통당의 영향력이 큰 시기에 언론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다. 동독에는 미디어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헌법에 언급된 자유는 실질적으로 거의 보장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의 불신도 높았지만 변혁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았다. 미디어에 관한 최고인민회의의 결정과 언론심의위원회 설치의 동독의 모든 정치단체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미디어 관련 결정이 몇 가지 틈새를 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원회의 설치의 필요한 것이었다. 많은 이들은 심의위원회가 모두가 함께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공개 논의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했다.

신속하고 중대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기에 언론심의위원회의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었다. 집필자들은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미 국가와 당 정책, 집단이기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국가와의 거리감을 보여준 전문적인 위원회가 탄생했다."(p.15)

출처_ Claus, Werner (Hrsg.) 1991. Medien-Wende, Wende-Medien. Dokumentation des Wandels im DDR-Journalismus Oktober '89 - Oktober '90, Berlin: Vistas Verlag, S. 7-15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원들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사통당의 후신인 민사당의 제안으로 동독 미디어의 장래에 관해 논의한 것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사당의 비스키 의원은 동독의 언론이 해체되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정관이 그 효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민사당은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 민사당의 입장은 동독지역을 위한 방송국을 설립하고 방송과도규정과 같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일반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미디어 장관 물러는 아주 정상적인 민주적 입법절차가 의회와 정부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언론과 관련하여 더 이상 중앙집권적인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연방주의 원칙을 따르는 구조가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동독지역의 연방주의를 위해 동독 정부가 대신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참고로 동독지역에 연방주의를 도입하는 문제는 1990년 7월 22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되었다). 나아가 방송국의 구조조정은 기존의 방송능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언론상임위원회 위원장 슈바츠 의원은 동독을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는 것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과도규정은 아직 실무담당자의 초안만 만들어졌고 많은 부분에서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방송국장, 편집장의 업무는 새로운 사람들이 담당해야만 한다고 요구하였다.

자유당의 카우프만 의원은 동독 언론이 세뇌를 담당했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언론의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하는 이중 체계를 즉시 도입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 군사방송의 주파수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녹색당의 바이스 의원은 원탁회의와 최고인민회의가 내린 미디어에 관한 결정을 언급하면서 1990년 2월 5일에 입법위원회를 통해 언론법이 제정되었고 그 과정에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했었다고 강조하였다. 사민당의 티어제 의원도 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제안이 민주적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염려되는 것이며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능력없는 동독 언론의 간부들이 해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원적인 전 독일 언론 속에서 동독지역의 방송 생산기지도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출처_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21. Tagung



문서
번호 29

언론 정책을 담당할 동독 정부부처의 업무영역분할계획 및 조직구조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미디어정책부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4월 13일에 동독의 새로운 정부부처로 신설된 미디어정책부에 관한 것이다. 내부용으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업무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디어정책부에는 장관 외에 두 명의 차관과 네 명의 국장을 둔다. 부장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회차관 아래 국제협력국, 홍보국과 내무조직국을 둔다. 의회차관은 최고인민회의와 부처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최고인민회의의 미디어상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다. 그는 동독의 신문미디어 영역의 구조전환을 책임진다. 제2차관은 언론정책국을 주관한다. 언론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법적인 문제를 주관한다. 이 부처의 모든 국 단위 조직은 실과 과 단위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조직도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 DC 9 / 1030

동독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관한 과도규정-내각위원회가 제출한 발의안에 대한 최고인민회의의 1차 심의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각위원회, 언론정책부, 물러 장관, 최고인민회의 의원들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내각위원회가 제출한 방송과도규정의 초안에 대해 심의한 것이다. 과도규정에 따라 동독의 방송이 연방주에 소속되는 독립적인 기구로 변신하게 되었다. 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민당 소속 물러 장관은 주 단위의 방송국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연방국가의 원칙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베를린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이 동독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1990년 7월 22일에 신설될 연방주는 주방송국을 설립하고 각 지역 방송의 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분리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다루는 각 주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지역 방송국들은 서로 협력하여 주 단위 방송국을 구성하기로 하였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약 2개에서 3개의 방송국이 동독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기민당 소속 슈타인만 의원은 방송과도규정이 새로 신설될 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변혁이 시작된 이후 다양한 사안들이 자체적인 역동성을 갖고 진행되는 속에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원탁회의와 최고인민회의의 언론입법위원회가 광범위한 언론법을 작성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사민당 소속 티어제 의원은 최고인민회의 미디어상임위원회가 이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무시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이 초안도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방송국의 감시, 방송국장의 임명, 민간방송의 허용 그리고 새로 도입될 주정부가 발전시켜야 할 구조를 사전에 정착시키는 것 등이 그런 사례라는 것이다.

민사당 의원 비스키도 이런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 법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마루쉬 의원도 발표하였다. 기민당의 슈바츠 의원은 다양한 비난으로 인해 실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동독 정부가 신속하게 과도규정을 도입할 의무가 있다는 데에 모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방송과도규정의 초안에 언급된 민영방송의 차별과 국가의 영향권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녹색당의 바이스 의원은 경제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동독지역을 하나의 방송으로 취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20시 이후에는 광고방송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출처_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26. Tagung (Stenografische Niederschrift)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미디어정책부 차관 베커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내각위원회에서 시청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0월 1일자로 시청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라디오방송은 2마르크(DM)에서 4마르크(DM)로, 제I방송 텔레비전은 5마르크(DM)에서 9마르크(DM), II 프로그램은 3마르크(DM)에서 6마르크(DM)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시청료의 면제 또는 일부면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준비작업은 체신부 주관으로 진행될 것이다. 1991년 1월 1일부터 모든 요금은 서독의 규정과 동일하게 매년 4분기마다 부과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근거자료를 통해 방송 예산과 현재의 재정상황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 자료는 동시에 보도자료의 역할도 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0년 하반기에 2억 마르크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료의 인상을 통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부분을 모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국의 직원 해고와 단축근무제도의 도입, 주파수 영역을 독일우편에 반납하고 방송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해체, 프로그램의 축소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_ BArch, DC 20-I/3/3047, 25. Sitzung des MR vom 15. Aug. 1990



문서
번호 32

통일조약 제36조-방송

1990년

담당자 / 기관_ 통일조약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 제36조로, 동독 라디오방송과 독일 TV방송에 관한 문제들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통일조약의 36조를 통해 통일 이후 신연방주 방송시설의 구조조정, 즉 동독 미디어의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제 구조로의 편입을 위한 틀이 마련되었다. 관할 영역과 재정문제도 규정되어 있다.

출처_ <http://www.buzer.de/gesetz/2318/a32516.htm> vom 26.07.2010

담당자 / 기관 서독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

이 문서는 통일조약 부연설명서 중에서 동독 방송을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약 36조에 대한 설명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이 신연방주로서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한 후, 즉 통일이 실현된 후에도 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동독 체제하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방송 관련 입법권과 행정권은 신연방주의 주정부로 이관된다. 그러나 신연방주의 주정부가 완전하게 결정능력을 갖출 때까지 과도규정과 과도기구를 마련해서 동독 방송 Rundfunk der DDR과 독일 텔레비전방송 Deutscher Fernsehfunk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법적 기구로 전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신연방주들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통일조약 36조의 규정을 대체할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규정에는 공영방송의 일반적인 기본원칙, 즉 광고, 청소년 보호, 보도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그 외에 방송시설물, 시청료, 민영방송 프로그램, 라디오방송과 직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7760, S. 374.



문서
번호 34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연방주의 입법권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안-최고인민회의의 2차 심의

1990년 9월 13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최고인민회의, 슈바르츠 의원, 언론미디어상임위원회 대변인, 사민당 힐스베르그 의원, 민사당 비스키 의원, 녹색당 바이스 의원, 최고인민회의의 부의장 회프너, 동독 내무부 디스텔 장관

내용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에서 열린 방송과도규정의 초안에 대한 2차 심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과도규정은 동독 방송을 신속하게 주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작업을 돕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의 언론미디어 상임위원회의 대변인 슈바르츠 의원은 이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길게 설명하였다. 이 규정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동독 정부의 언론정책이 대부분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먼저 언급하였다. 방송 프로그램이 이전에 해오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통당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고 비난하였다. 과잉고용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 정부 담당자들이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의 이중 체계의 필요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 구축될 주방송국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사민당의 힐스베르그 의원은 과도규정 초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환 작업이 1991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에 특히 유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나아가 과도기에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중요한 문제는 방송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니라 구체제의 잔재적인 구조를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민사당의 비스키 의원은 과도규정 초안에 동의하지만 이를 통해 마치 동독 체제하에서 동독 방송이 이룬 모든 성과들이 묻혀버리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녹색당의 바이스 의원도 통일조약 36조와 과도규정 초안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신연방주들이 공동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합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 법안은 4명의 반대표를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출처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35. Tagung, S. 1713-1716.

문서
번호 35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연방주의 입법권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방송과도규정

1990년 9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베르그만-폴 의장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9월 14일에 동독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방송과도규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과도규정은 동독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주정부가 관할하는 연방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 규정은 통일조약 36조를 보완하는 것으로 199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그 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 규정의 최종적인 목적은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새로이 신설될 신연방주에 동독 방송의 관할권을 이전하여 독립적이고 공익을 추구하는 기구로의 전환을 보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관계를 규정한다. 공영방송은 기본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반면, 민영방송은 방송사 간의 경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주파수와 관련하여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동일한 기술적, 경제적 조건하에서 의견의 다양성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방송과도규정을 통해 방송국 지도부와 방송이사회 재정 프로그램 편성 등이 규정되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63, vom 26.09.1990, S. 1563 ff



문서
번호 36

신연방주 주정부 방송 담당관 회의-신연방주 방송위원회와 방송 담당 특임관
선출

1990년 10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신연방주 방송 담당관, 방송 담당 특임관

내용_

이 문서는 구동독지역에 세워진 신연방주들의 방송 담당관들의 회의 결과이다. 이 회의를 통해 방송이사회의 구성원과 방송 담당 특임관이 선출되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는 방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국가조약에 의해 방송제도 전환 준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신연방주의 방송 담당관들은 물펜젤 씨를 방송 담당 특임관으로 선출하고 그에게 활동계획을 방송이사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사회는 선출은 신연방주의 정부와 의회가 구성된 후에 행정부가 의회에 선출될 사람들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하였다. 주정부들이 제출한 명단이 정부 추천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정부가 방송국을 관리감독하는 행정령과 관련하여 주정부가 결정할 법적 조치의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방송제도의 전환과 방송국의 해체에 대한 주정부 간의 조약을 위해 감사원과 경제회계사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합의하였다.

출처_ Tichy, Roland; Dietl, Sylvia (Hrsg.): Deutschland einig Rundfunkland? Eine Dokumentation zur Wiedervereinigung des deutschen Rundfunksystems 1989-1991, München 2000, S. 245-246

1990년 11월 2일/11월 7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체신부 괴츠 차관, 라베 차관, 연방의회 사민당 소속 헬치히 의원, 녹색당 호스 의원

내용

이 문서는 통일 직후 연방의회에서 방송과 관련하여 열린 회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헬치히 의원이 ARD와 ZDF의 수신을 개선하는 것과 신연방주의 시청료 규정에 대한 과도기의 해결책과 관련된 질문을 제출하였다. 그에 대해 체신부의 괴츠 차관은 1990년 10월 3일부로 독일 연방우편 TELEKOM에 구동독지역 방송망의 확충운영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았다고 답하였다. 방송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ARD-프로그램을 구동독지역 전역에 송신하는 문제는 신연방주의 미디어정책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신연방지역에서 서독지역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시청료를 징수해야만 하는 이유는 서독지역의 시청자들이 구동독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답하였다.

호스 의원은 구동독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파수 배정문제를 누가 결정하는지 그리고 군용주파수를 다른 방송에 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라베 차관은 계획안에 따르면 구동독지역에 28 AM 주파수와 163 FM 주파영역, 81 텔레비전송신 케이블망이 존재하며, 현재 텔레콤이 27 AM, 163 FM, 44 텔레비전송신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주파수 배정은 연방주가 아니라 연방정부의 체신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였다. 군용주파수에 관한 문제는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427



문서
번호 38

어떻게 루돌프 뮐펜젤이 구동독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넘겨받았는가-슈피겔지
보도

1990년 12월 3일

담당자 / 기관 신연방주 방송 담당 특임관 루돌프 뮐펜젤, 동독 라디오방송 사장 크리스토프 징겔슈타인, 동독 텔레비전 사장 미하엘 알브레히트, 슈피겔 빌헬름 비트호프 기자

내용

이 문서는 독일의 주요 주간지인 슈피겔지에 발표된 기사로 통일조약 36조에 따라 동독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주정부 소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도입된 기구와 신연방주 방송 담당 특임관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슈피겔지의 기자는, 특히 새로 선출된 신연방주 방송 담당 특임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장벽의 붕괴 이후 동독 방송이 만들어낸 성과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조약 36조에 따라 만들어진 이 기구는 동독 체제하에서 국가에 의해 관리감독되었던 방송을 대체하며, 신연방주지역 방송국이 완성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존재하였던 기관이다.

동독의 변혁 과정에서 동독 라디오 책임자가 된 크리스토프 징겔슈타인과 동독 텔레비전의 책임자가 된 미하엘 알브레히트는 정치적 관심보다는 전문성에 열광한 관리자로 방송의 책임을 넘겨받았다. 그들의 주된 업무는 동독 방송을 사회주의통일당의 강력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사통당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동베를린의 방송인들이 스스로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원탁회의와 풀뿌리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동독의 다른 어떤 기업도 시장에서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통일조약 36조에 따라 1990년 10월 3일자로 동독국영방송을 이전할 업무는 공식적인 기구에 위임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신연방주 방송 담당관들에 의해 루돌프 뮐펜젤이 신연방주 방송 담당 특임관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연방정부의 헬무트 콜 수상이 그를 선택하였다. 뮐펜젤은 이전에 바이에른주에서 바이에른방송이 기사당의 당수였던 요하네스 슈트라우스 바이에른 주지사에게 절대로 복종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그는 서독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지식공유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를 주도하면서 동시에 민간상업방송에 대한 지원을 주도하였던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이 1991년 12월 31일까지 동독국영방송을 전환하는 작업을 책임진다는 것은 신연방지역의 방송을 새로운 국가와 당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전환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출처 Der Spiegel, Ausgabe 49/1990, S. 56 ff

문서
번호 39

동독 언론정책 연표
1991년

담당자 / 기관_ 요아힘 뉘테(Joachim Nölte)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10월부터 1990년 10월까지 1년 동안의 동독 미디어정책 관련 사건들을 정리한 논문이다. 중요한 사건들을 큰 틀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살펴본 것이다. 또한, 당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독자 편지들을 신문에 삽입함으로써 더 신빙성을 높여 준다.

출처_ Nölte, Joachim. Dokumentation des Wandels im DDR-Journalismus Oktober '89 - Oktober '90; in: Claus, Werner (Hrsg.) 1991. Medien-Wende, Wende-Medien., Berlin: Vistas Verlag, S. 17-115



문서
번호 40

신탁관리청의 동독 신문사 매각정책-슈피겔지 보도

1991년 4월 22일

담당자 / 기관 신탁관리청, 신연방주 신문사, 서독 출판사, 연방정부 콜 수상, 연방 외무장관
젠서

내용

이 문서는 신탁관리청이 구동독지역에서 사통당의 신문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한 슈피겔지의 기사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지역에서 신문 민영화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연방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서독지역의 보수적인 출판사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연방수상은 신탁관리청이 지역신문을 민영화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아주 깊숙이 개입했다. 그 결과 캄니츠의 지역신문이 자신의 고향인 루드비히스하펜시에 소재한 기민당계 출판사에 의해 인수되었다. 외무장관 젠서도 신문의 민영화과정에 개입하여 그의 고향인 할레시 지역신문인 미틀도이칠란트지가 쾰른의 알프레드 네벤 듀몰 출판사에 의해 인수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물론 이 출판사는 친자민당계이다. 미디어정책만 놓고 보면 구동독지역의 언론은 이념적으로 여전히 통일된 색채를 갖고 있다. 그것이 단지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적인 언론에서 보수적인 언론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본에 소재한 지역언론협회는 신연방지역의 출판이 거대 출판사에 넘어간 것을 비판하면서 연방정부가 가능하면 높은 가격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신탁관리청이 약속한 중소 출판사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난하였다.

출처 Der Spiegel, Ausgabe 17/1991

1991년 5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작센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 주정부가 주의회에 민영방송법 도입을 위해 제출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센주는 이 법을 통해 독일연방공화국의 이중방송 체계로 통합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중부독일방송사를 설립하기로 한 신연방주들 간의 조약에 의해 도입된 공영방송 외에 민간방송사도 이 지역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법안에는 특히 민간방송사에 의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 운영, 기술적으로 제한된 송신력의 적절한 배분, 케이블망의 확충, 민간방송사도 방송기술과 이용양식의 발전에 참여 보장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민간방송사의 설립을 위해 작센 주정부가 비용을 지불할 것은 없다. 단지 설립 초기에는 민간방송사와 비교할 때 불리한 출발조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통일조약 36조에 따라 방송시설을 위해 책정된 재원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특별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_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73 (<http://edas.landtag.sachsen.de>; Stand 28.4.2016)



문서
번호 42

중부독일방송(MDR)에 관한 연방주 간의 조약

1990년 5월 30일

담당자 / 기관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주의회

내용

이 문서는 중부독일의 신연방주인 작센주와 쾰른-안할트, 튀링겐주 등 3개 주의 의회가 공동으로 중부독일방송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조약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부독일방송사 MDR은 3개 주의 수도인 드레스덴, 에어푸르트와 막테부르크에 지방방송국을 운영한다. MDR의 본사는 작센주의 라이프치히시에 두며,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은 할레에서, 광고파트는 에어푸르트에서 담당한다.

공동으로 라디오 프로그램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영방송기구인 전독일방송사 ARD에 함께 참여한다. ARD 참가국에 제공되는 중부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은 MDR이 책임진다.

MDR의 주요기관으로는 방송위원회, 행정위원회와 사장단이 있다. 방송위원회는 주정부와 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며 방송지역의 일반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방송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되는 행정위원회와 사장단을 선출한다.

MDR 방송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1991년 11월 1일에 개최되며,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후 1달 이내에 행정위원회를 선출하도록 한다.

출처 MDR-Rundfunkrat, (www.mdr.de/mdr-rundfunkrat/rechtliche-grundlagen/download1278_zc-a9ed3c80_zs-755a7482.htm)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각 정당 대표, 주정부 총리실장 린데 차관

내용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가 브란덴부르크방송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 기록이다. 이 회의에서는 의회의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과 민사당이 제출한 브란덴부르크 방송법안과 함께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이 제출한 브란덴부르크 방송규정 도입을 위한 준비규정안도 논의되었다.

사민당의 비어틀러 의원은 새로운 방송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브란덴부르크주가 자체적으로 방송사를 설립하는 것 또는 베를린시와 공동으로 또는 북동부지역 공동으로 방송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였다. 비어틀러 의원은 두 번째 방안은 미디어정책적으로 보거나 미디어경제성을 볼 때 브란덴부르크주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특히 포츠담-바벨스베르크지역에 자리한 미디어생산센터의 존재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브란덴부르크주가 자체적으로 방송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사민당의 발터 의원은 브란덴부르크방송법은 서부독일방송 WDR법과 아주 유사하다고 비판하였다. WDR은 사민당이 지배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방송사이다. 그는 브란덴부르크주가 자체적으로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ARD-프로그램 중에서 브란덴부르크방송이 담당할 분량도 아주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민당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베를린시와 공동으로 방송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 하였다.

자민당의 지베르트 의원은 통일조약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까지 동독방송과도규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시간적 압력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작센-안할트주와 브란덴부르크주가 공동으로 방송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런 시간적 압력을 고려할 때 브란덴부르크방송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법안 때문에 베를린시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 협상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민사당의 비스키 의원은 신연방주 방송 담당 특임관의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미디어의 종사자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녹색당의 로이터 의원은 준비규정안을 보면 다른 주들과 공동으로 방송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며, 반면 브란덴부르크방송법은 단독으로 방송사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가 기민당이 지배하는 다른 신연방주들의 결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린데 차관은 주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베를린시와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였다. 이 법안은 주의회 전문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출처 Parlamentsdokumentation ELWIS des Landtags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19 vom 12.06.1991 (S. 1459-1467)

담당자 / 기관_ 연방주 주총리

내용_

이 문서는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문화정책을 각 주정부의 관할 영역으로 규정한 독일의 연방주의 원칙하에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연방주들의 미디어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체결된 연방주들 간의 국가조약이다. 이것은 서독 연방주들 간에 체결된 기존의 국가조약의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방송조약-민영방송과 공영방송으로 구분된 이중 체계를 구축한다.

제2조. ARD조약-전독일공영방송 ARD 규정에 따라 연방주의 방송사가 모두 함께 제1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제3조. ZDF조약-제2공영방송사인 ZDF에는 모든 연방주가 참가하여 지분을 갖는다. 이 조항에는 ZDF의 업무, 조직, 재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 시청료 조약-이 조항은 시청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기와 시청료납부 의무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제5조. 방송사재정조약-이 조항은 시청료의 규모와 시청료를 통해 각 지역 방송사의 재정을 충원하는 것과 ARD에 참가한 방송사 간의 재정배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6조. 문자화면조약-공영방송망을 통한 문자화면 전송과 이용에 관한 내용.

제7조. 과도규정, 선포, 발효일.

제8조. 조약의 해지.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2. Jahrgang, Nr. 42, S. 580 ff



문서
번호 45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紙와 베를리너 차이퉁(Berliner Zeitung) 紙를 통해서 본 장벽 붕괴에서부터 구동독지역 최초의 주의회 선거에 이르기까지 독일통일의 해에 있었던 구동독 언론의 변화

1992년

담당자 / 기관_ 티만 베크(Tilmann Beck)/브라이스가우 소재 프라이부르크 알베르트 루드비히 대학 철학과 석사논문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직후 언론학 전공 학생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특히 1989년 가을부터 1990년 10월까지의 기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동독은 변화와 개혁의 단계를 겪었다.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변혁기에 동독 신문들은 구조조정을 해야 했으며 커다란 재정손실을 입었고 1990년 초기부터 등장한 대형 서독 신문사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와 베를리너 차이퉁紙라는 두 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를 잘 볼 수 있다. 두 신문의 편집장들과의 인터뷰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언론인들의 전략과 신문 종사자들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외부 결정요인들이 잘 드러난다. 동독 신문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과 급격히 높아지는 서독 대형 신문사들의 영향력 사이의 긴장관계는 그루너+야르(Gruner+Jahr)출판사가 동독 또는 신연방주를 대상으로 펼친 전략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출처_ Fotokopie der im Jahre 1992 vorgelegten Magisterarbeit

문서
번호 46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가 작성한 북부독일방송에 관한 법 초안-발췌
1992년 1월 20일

담당자 / 기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북독일방송사 NDR

내용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정부가 NDR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법으로 승인해 주기를 주의회에 요청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조약을 통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가 서독지역의 니더작센, 쉐레스비히-홀슈타인, 함부르크주가 운영하는 NDR방송사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한다. 슈베린시에 NDR의 지역방송국이 세워지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지역 프로그램이 일정한 방영시간을 받게 되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지역의 지방 라디오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NDR의 기구는 국가조약을 통해 규정되며 거기에는 이 기구에 참여하는 각 주의 사회조직과 단체들의 구성원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출처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260



문서
번호 47

신연방주지역의 신문언론의 발전전망과 구조 적응 문제-연방내무부에 제출된
연구보고서(발췌)

1991년 10월/1992년 2월

담당자 / 기관_ 연방 내무부, 베아테 슈나이더 교수, 하노버 음대, 신문방송연구소

내용_

이 문서는 하노버 대학 신문방송연구소 베아테 슈나이더 교수가 연방정부 내무부의 의뢰로 작성한 신연방주의 신문발전에 관한 보고서이다. 변혁이 시작된 후 동독지역 출판사들의 경제적 상황, 신문의 내용, 신문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벽이 붕괴된 직후 서독의 대형 출판사들은 기존의 동독 신문과 협력관계를 구축·확대하고자 했다. 1989년 말 이후 동독의 신문들은 사통당의 검열과 통제로부터 벗어났다. 사통당의 신문들은 국가재산으로 분류되어 신탁관리청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 신문들은 대개 지역에서 발행되었고 발행부수가 많은 편이었다. 이들 사통당 신문들은 1990년 말에 이미 매각되었다. 예를 들어 켐니츠시의 '프라이에 프레세'는 라인란트-팔츠주에 소재한 '메디엔 유니온'에, 할레시의 '미틀도이체 차이퉁'은 듀폰-사우베르크출판사에 의해 인수되었다. 1990년 12월에 신탁관리청은 다른 10개의 신문의 매각공고를 낼 것이다. 그 금액은 15억 마르크 정도로 독일 신문역사에서 가장 거대 규모의 신문매각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신문들은 예외없이 모두 서독지역의 거대 출판사에 의해 인수되었다. 그것은 신탁관리청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수상실에서는 정책적으로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동독지역의 신문들 중에서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지만 사통당의 후신인 민사당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되었다. 사통당의 신문이 아니었던 모든 신문들도 예외없이 서독지역의 대형 출판사들에 의해 인수되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도시에 있는 출판사들 또는 자매도시의 출판사들이 동독에서 변혁이 시작된 직후부터 동독지역을 위한 지역판을 발행하여 신문배포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슈피 일루'와 같은 신연방지역만을 위한 잡지가 개발·발행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신연방지역에 많은 수의 신문사가 세워졌다. 그들 중 몇 개의 회사는 100% 서독 출판사의 자회사이고, 다른 신문사들도 서독 출판사와 연결되어 있다. 이들 회사들은 신연방주를 위한 공적 투자지원금을 받았다.

출처_ Schneider, Beate: Strukturen, Anpassungsprobleme und Entwicklungschancen der Presse auf dem Gebiet der neuen Bundesländer (einschl. des Gebiets des frühen Berlin-Ost), Forschungsbericht für den Bundesminister des Innern. Band I und Kurzfassung. Hannover und Leipzig 1992.

1992년 7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독과점위원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독과점위원회 업무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4장은 신연방주의 언론통합 감독과 언론현황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와 서독지역의 신문시장은 아주 천천히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변혁이 시작된 직후 동독지역의 신문·잡지사를 닦치는대로 사들였던 서독의 출판사들이 이제는 선별적 인수로 돌아섰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구동독지역의 개별 가구들이 신문잡지의 구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적었기 때문이다. 현재 신연방지역 신문시장의 구조는 시장경제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신탁관리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신탁관리청이 14개의 사통당의 지역신문 중에 10개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들은 모두 서독의 출판사에 의해 인수되었다. 소형 출판사나 외국회사 또는 동독지역의 회사들은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몇 개의 매각결정에 대한 법적 분쟁도 발생하였다.

독과점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인 매각, 인수, 신설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신문시장의 집중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통합 작업에 대한 법적 검토 과정에서 한 출판사가 한 지역의 주요 신문사들을 여러 개 동시에 인수하거나 배포권이 연결되어 있는 신문사들을 여러 개 인수하여 신문시장을 지배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동독에서는 1989년 말까지 도이체 포스트(DP)가 신문배달을 독점하였었다. 1990년 초에 이미 서독의 4대 출판사들은 DP와의 협력하에 동독에서도 서독에서와 유사한 신문배급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시도는 당시 원탁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거부되었다. 연방카르텔청은 거대 출판사가 15개의 신문배급회사를 구성하고 동독지역 전역의 배급을 담당하려고 하는 것이 소형 출판사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공정경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1990년 11월에 제시된 타협안은 독립적인 신문배급사와 대형 출판사가 협력하는 배급국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었다. 최종적으로는 배급지역을 분할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다. 독과점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별로 배급 체계의 독점을 허용하는 현재의 체계가 일단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3031

담당자 / 기관_ 독과점위원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독과점위원회 보고서 중 신연방주의 방송규정을 다루고 있는 제5장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조약 36조에 따라 구동독지역에서 기존 방송사의 행정업무는 방송 담당 특임관과 방송이사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임관과 이사회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신연방주 방송의 기본구조와 규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독일연방주의 원칙에 따르면 지상파 주파수와 같은 송신망과 관련된 것은 연방주가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연방 지역에서는 주 단위의 방송구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송신망을 제3자에게 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방송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다. 통일조약에 따르면 신연방주들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이중 체계를 도입해야만 하는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들의 방송규정을 보면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그런 의무조항을 도입하였다. 라디오방송의 재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모델이 논의되었다. 1991년 7월 4-5일에 연방주 총리들은 일단은 RIAS 1, DLF와 동베를린 방송 DS-Kultur를 통합하여 ARD와 ZDF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 1990년 12월부터 이미 신연방지역에서 ARD와 ZDF의 시청이 가능해졌고, 새로이 도입된 DFF방송도 시청할 수 있다. 신연방주에 민영방송이 아직 설립되지 못했지만 위성안테나를 통해 그리고 서독의 송신국을 통해 신연방지역에서도 서독 지역의 민영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고, 이들은 이미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공영방송이 확고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라디오 주파수 배분을 통해 제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3031

담당자 / 기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학술연구문화부장관 에더라인, 주의회 발터, 티어제, 비스키, 리츠만, 베티슈타트 의원

내용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들이 신문법 초안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제출한 새로운 신문법 초안은 민주주의와 신문의 권리를 보호하며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단지 2조, 4조, 9조의 경우 이견이 있다. 특히 4조의 경우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출판인과 편집자가 전횡하지 못하도록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브란덴부르크주의 미디어 발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 2조에 언급된 신문배급의 중립성 보장을 통해 신문잡지 유통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 9조에 언급된 신문사의 소유권과 지분관계를 공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 초안을 전문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에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였다.

출처 ELVIS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Stand: 13.09.2016

문서
번호 51

독일 방송의 개편-국영 라디오-연방의회 전체회의 토론

1992년 11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연방의회 부의장 레나테 슈미트 외 다수의 의원들

내용_

이 문서는 독일 연방의회가 1992년 11월 6일에 국영 라디오방송의 설립과 관련하여 독일 방송의 새로운 구성에 관해 논의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의 초점은 서베를린에 있었던 RIAS와 서독의 Deutschlandfunk 그리고 동독의 DS Kultur를 통합하여 하나의 국영 라디오 '도이칠란트라디오'를 창립하는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 발언한 모든 의원들은 국영 라디오방송을 구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전국적인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해서 주파수 배분, 재정, 직원의 고용문제와 같은 것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해당 기관들, 특히 방송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국영 라디오방송의 설립을 규정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데에 모두 동의하였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11. Sitzung, Bonn, S. 10079-10085

문서
번호 52

동독 국영통신사 ADN 아카이브를 베를린에서 코블렌츠에 있는 연방문서국으로
이전하는 문제-연방의회 의원이 제출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2년 11월 23일

담당자 / 기관 연방내무부차관 바펜슈미트, 시민당 바텐베르크 의원, ADN 통신사

내용

이 문서는 연방의회 시민당의 바텐베르크 의원이 동독 통신사였던 ADN의 아카이브를 연
방문서국으로 이전하기로 한 계획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연방내무차관이 답변한 것이
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탁관리청은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어권에서 가장 귀중한 영상자료를 연방문서국에 인계
하였다. 이런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베를린보다는 코블렌츠가 더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이전을 통해 1945년 이전, 이후의 다른 영상자료들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맥락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무차관은 바텐베르크 의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반공개를 통해 이 자료가 손상될 위험은 없다고 보았다. ADN 아카이브에서 근
무했던 직원은 다른 분야에 투입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3874



문서
번호 53

신연방지역의 소규모 언론사를 위해 유럽부흥기금의 언론차관 및 근대화 프로그램
도입-사민당 의원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제안

1993년 5월 4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연방회의, 사민당 소속 의원들

내용_

이 문서는 사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들이 신연방주의 중소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연방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지역에서 의사형성의 다양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유럽부흥특별기금을 통해 이 지역 언론사에 용자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용자금으로 생산을 위한 기술설비와 신문잡지의 배포, 그를 위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한다. 그를 통해 구동독지역의 신문시장을 소수의 신문사가 독점하는 위험을 방지해야만 한다. 일간지의 경우 기존의 사통당 지역신문들이 시장을 완전히 점유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문에게는 시장접근이 거의 불가능했었다. 변혁이 시작된 후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신설된 신문사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다. 이들이 차지했던 시장점유율은 8%가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언론의 다양성이 발전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 의한 정치적 통합 기능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연방정부의 강력한 정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새로 도입될 유럽부흥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1989년 11월 9일 이후 신설된 중소 규모의 출판사로 제한하며, 이들은 소규모의 발행부수를 갖고 있지만 주민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유럽부흥특별기금의 기본규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에는 5백만 마르크까지, 일반적으로는 1백만 마르크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4857

문서
번호 54

브란덴부르크 언론법

1993년 5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가 도입한 언론법이다. 프러시아 때부터 동독을 거쳐서 이 지역에 신문법이 도입된 것은 처음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조 2항은 “신문의 자유는 헌법을 통해서만 직접 제한되거나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떤 특별조치도 금지된다”고 하였다. 신문의 활동은 출판사의 허가나 같은 어떤 인가사항에 종속되어서도 안 된다. 신문도 매상의 증립성은 보장되어야만 한다. 신문은 보도와 비판을 통해 개별적이거나 공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4조에서는 신문의 내적 자유를 설명하며 “어떤 편집자도 그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수용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되며, ... 필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글을 그의 이름으로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5조에 따르면 해당 관공서는 언론인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소유권, 지분관계, 편집자의 자격요건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Teil I - Nr. 10 vom 17. Mai 1993



문서
번호 55

독일통일 이후 서베를린의 라디오방송 리아스와 공영방송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에
관한 법안에 관한 연방회의의 입장 및 그에 대한 설명

1993년 8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연방회의,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독일 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회의가 방송규정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찬성
하는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을 통해 Deutschlandfunk와 RIAS Berlin이 연방주들의 관할 영역으로 지정된다.
그것은 1993년 6월 17일에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에 체결된 라디오이전조약에서 이미 합의
된 것이었다. 독일통일이 실현됨에 따라 동독 주민을 포함하는 모든 독일인을 위한 라디
오 프로그램을 만들던 도이칠란트퐁크(Deutschlandfunk) 특별임무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
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프로그램의 임무를 다시 규정해야만 한다. 동시에 독일이 완
전한 주권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서베를린의 RIAS의 법적 지위도 새로 마련되어야만 했다.
이 두 방송의 권리와 의무를 도이칠란트라디오로 이전하고, 통합을 위한 특수한 업무는
도이치벨레가 맡게 된다. 이 문서에는 방송규정의 개별조항 및 방송과도규정을 위한 연방
정부와 연방주 간의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Bundesrat-
Drucksache 513/93

문서
번호 56

라디오방송 이전에 관한 조약 ‘도이칠란트퐁크’와 ‘라디오 리아스’를 공영 ‘도이칠란트라디오’방송으로 전환

1993년 6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주

내용_

이 문서는 1993년 6월 17일에 연방정부와 16개 연방주가 라디오이전에 관해 체결한 조약문이다. 이 조약에 따라 연방정부 관할 방송사 도이칠란트퐁크와 RIAS 베를린의 권리와 의무가 연방주들이 설립한 공영방송사 도이칠란트라디오로 이전되었다. 이 조약은 199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를 통해 도이칠란트라디오는 RIAS 베를린과 도이칠란트퐁크의 사장단이 가졌던 의무와 권리도 이어받게 된다. 나아가 인력, 연금, 송신기술에 관한 규정이 이 조약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3, Teil I, Anlage 1, S. 2248.



문서
번호 57

독일통일과 신연방지역 재건과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작성한 자료들-미디어 부분
발췌

1994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작성한 독일통일에 관한 자료에서 신연방주의 미디어 현황에 관해 설명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2쪽 분량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방송은 사통당에 의해 관리되는 중앙집중적 구조로 이루어졌었다. 1990년 1월 24일에 최고인민회의가 새로운 방송규정을 도입하여 검열을 폐지하였다. 신연방주의 방송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틀은 통일조약 36조에 의해 마련되었다. 그에 따라 동독 방송과 동독의 중앙텔레비전 Deutsche Fernsehfunke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신연방주와 베를린시의 공영시설로 이전되어야만 했다. 통일조약에 의해 통일 이후 1991년 8월 31일까지 모든 연방주들이 합의하는 공동의 기본규정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신문영역을 보면 동독 체제하에서 이 지역에 39개의 일간지가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사통당과 다른 정당들이 발행하는 것이었다. 시장경쟁을 지배하던 사통당의 신문과 그에 소속된 인쇄소는 1991년 4월에 신탁관리청에 의해 서독의 출판사에 매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는 탈중앙집중화를 아주 선호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정책이 쉽게 실현가능한 것은 아니다. 39개의 지방신문과 3개의 지역신문이 신설되었다. 나아가 연방정부는 신연방지역에서 공정한 신문보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출판사와 연계된 회사 8개와 독립적인 배급사 9개가 설립되었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854

담당자 / 기관_ 독일통신 DDP, 전독일통신 ADN

내용

이 문서는 권위 있는 주간 매거진, 디 차이트지가 '뉴스통신사 DDP/ADN의 직원들, 회사
를 선물받다.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1993년에 통합된 서독의 DDP와 동독
의 ADN의 현황에 관해 보도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DDP/ADN의 소유자 볼코 호프만이 이 통신사를 직원들에게 매각하고자 한다. 그러나 직
원들은 이 회사의 건전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 노사평의회 의회 라이프라이트의
평가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특히 뉴스통신의 사회적 발전
전망이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반 언론사들이 뉴스통신이
제공하는 자료를 수용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독지역의 ADN
의 경우에는 1,300명의 직원을 200명으로 극단적으로 감축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이 회사
의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구동독지역 전역을 커버하는 전문
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DDP/ADN이 다른 통신사와의 경
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독지역에서의 지역보도망을 확충할 수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지
역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의미 있는 대안인지도 아직 두고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장
기적으로 볼 때 이 통신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력이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는 방법 외에
는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_ Zeit Online. <http://www.zeit.de/1994/07/keine-gute-nachricht> (Stand 28.8.2016)



문서
번호 59

1994년 독일 미디어의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서-1994년 미디어보고서-신연방주와 관련된 부분 발췌

1994년 10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미디어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신연방주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신연방주의 미디어 현황에 관한 보고를 위한 별도의 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주제별로 구성된 장에 신연방주의 현황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은 일간지, 잡지시장, 신문배급 체계, 미디어지원, 방송 과도규정, 방송사, 방송규정, 송신망, 언론법, 카르텔법 등이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8587, div. Auszüge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내무부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내무부가 작성한 언론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 내 언론시장의 발전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신문 부문의 집중화 현상과 동일한 전개 양상을 보였다. 통일 후 1997년, 독일에는 발행부수의 절반 이상으로 발행지 외의 지역에서 판매하는 일간지가 6개 밖에 없다. 그것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紙, '벨트(Welt)'紙, '도이체 타게스포스트(Deutsche Tagespost)'紙, '타츠(taz)'紙,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紙, '유에 벨트(Junge Welt)'紙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의 수는 1993년과 1997년 사이에 3.4% 감소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자체 제작 출판물'의 수는 1.5% 감소했다. 이는 언론의 집중화를 초래했다.

신연방주의 경우 이런 집중화 현상이 신탁관리청의 지원을 받았다. 동독 기업의 민영화정책, 매각정책을 통해서 신탁관리청은 동독 15개 지역에서 사통당 신문으로 발행되었던 모든 지역신문들을 1991년 5월 15일까지 서독 신문사에 매각했다. 이로써 사통당을 통해 만들어진 독점적 시장구조는 서독 대형 신문사들에게 넘어갔다. 지역신문들은 신연방주에서 총 9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동독시절보다도 높은 점유율이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 신설된 수많은 지방신문들은 대규모 지역신문(총발행부수-1989년: 550만 부, 1997: 360만 부)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1990년에는 총 54개 서독신문사들이 동독지역에 70개 이상의 지역신문을 신설했지만, 이들 신설 신문 가운데 1997년까지 존속한 신문은 10개 뿐이었다. 이들 10개 신문은 구지역신문과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동독의 전국 규모의 신문 7개 가운데에는 2개만이 통일과정에서 살아남았다. 오늘날 이들 2개의 신문의 보급지역은 거의 동베를린에 국한되어 있다. 구블록정당의 14개 지역신문 가운데에는 5개만이 1997년까지 살아남았다. 신연방주로서는 당연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구지역신문의 과도한 점유율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이브란텐부르크(Neubrandenburg), 로스토크(Rostock), 슈베린(Schwerin)의 사통당 신문인 '노르트쿠리어(Nordkurier)'紙, '오스트제차이퉁(Ostseezeitung)'紙, '슈베리너 폴크스차이퉁(Schweriner Volkszeitung)'紙는 모두 서독 대형 신문사의 소유가 되었다. 이를테면, 노이브란텐부르크 '노르트쿠리어'의 주식은 아우크스부르크신문출판사(Presse-und Druckverlag GmbH Augsburg)와 슈베비세출판사(Schwäbischer Verlag), 킬러나흐리히텐(Kieler Nachrichten)에서 각각 33%씩 차지하고 있다. 이들 신문은 각각 수많은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3. Wahlperiode, Drucksache 3/1418,
10.07.2000

담당자 / 기관_ 위르겐 빌케(Jürgen Wilke)

내용_

이 문서는 언론학자들이 저술한 독일 매스컴에 관한 핸드북 중에서 발췌한 논문이다. 동독 미디어의 7개의 영역에 대해 간략하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다.

1. 동독 미디어의 기초
2. 언론
3. 방송
4. 통신
5. 영화
6. 통일과정(Wende)에서 통일(Einheit)에 이르기까지
7. 변화 그 후

출처_ Noelle-Neumann, Elisabeth; Schulz, Winfried und Wilke, Jürgen (Hrsg.). 2002. Fischer Lexikon. Publizistik, Massenkommunikation. Frankfurt/Main.

문서
번호 62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 공동방송국의 설립에 관한 국가조약법-브란덴부르크 주의회 1차 심의

2002년 9월 4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및 주의회, 베를린 시정부

내용_

이 문서는 통일된 후 12년이 지나서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두 지역의 방송사를 통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논의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가 베를린의 SFB방송과 브란덴부르크의 ORB를 통합하여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 RBB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서 논의되었다. 주총리실 실장인 슈페어 차관은 10년 동안 단독으로 방송하던 두 방송을 통합하려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지역에 두 개의 방송사가 있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두 방송사를 통합하여 양측의 장점을 살리고 무엇보다 전국방송망인 ARD 내에서 더 좋은 입장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통합을 위한 조약의 초안은 일찍 작성하여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대해 민사당의 비스키 의원은 통합으로 인해 직원들의 권리가 제한되는 일은 없어야만 한다고 경고하였다. 시민당의 클라인 의원은 통합조약이 동독지역 방송사로서 경제성을 강화하고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타협안이라고 보았다. 기민당의 슝스 의원은 원칙적으로 통합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의 입장에서 방송사의 사장단이 브란덴부르크에 사무실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3. Wahlperiode, Plenarprotokoll 3/61

문서
번호 63

디터 바이리히(Dieter Weirich, 1989-2001 도이체 벨레 방송국 사장) 교수와의
인터뷰 기록

2010년 6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도이체 벨레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자유대 독일통일 총서 작업팀이 2010년에 통일 당시 도이체 벨레의 사장
이었던 바이리히 교수를 인터뷰한 것이다.

출처_

담당자 / 기관_ 베를리너 차이통지

내용_

이 문서는 2010년 8월 5일에 독일통일 총서 연구팀이 진행한 인터뷰이다. 인터뷰를 한 안나 라이히(Anja Reich)는 동독에서, 즉 1990년까지 베를리너 차이통지에서 잡지 담당 인턴 생활을 하였다. 페터 리즈베크(Peter Riesbeck, 1968년 팔츠 출생)는 1997년부터 베를리너 차이통지에서 일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정치부장을 맡고 있다.

베를리너 차이통지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 통일 후 동독 출신 기자들의 대부분이 이 신문에서 활동을 했다.
- 해고된 사람은 없다. 단, 몇몇 나이가 많은 이들은 퇴직금을 받고 은퇴했다.
- 슈타지 관련 조사가 시행되었다.
- 슈타지 과거가 있는 몇몇 기자들은 자발적으로 나갔다.
- 슈타지 과거가 있는 몇몇 기자들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남았으며, 이와 같은 사안들을 다루고 권고를 해주는 윤리위원회가 있었다.
- 1990년 통일 직후 동독 기자들을 위한 특별교육은 없었다.
- 통일 후인 1990년 가을 즈음부터 사통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지시나 검열이 중단되었다.
- 동독 기자들은 통일을 해방으로 여겼다. 통일로 인해 미디어의 자유가 보장되고 당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 서독 기자들은 구조조정에서 특혜를 받았다.
- 동독과 서독 기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컸지만, 극복할 수 없는 대립은 없었다.
- 베를리너 차이통지의 대부분의 독자들은 구동독지역에 거주한다.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보급지역의 확장은 실패했다.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베를리너 차이통지가 장벽 붕괴 기념일 등에 발행한 기념호를 나누어 줬다. 이 기념호에는 발행부수 수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한 공식자료는 구할 수 없다고 한다.

출처_

양케이트위원회 최종보고서 5/1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역사를 청산하고 사통당 독재의 결과를 극복하면서 민주적 법치국가로 이전하는 과제-미디어와 의견의 다원성(발췌)

2014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양케이트위원회

내용

이 문서는 양케이트위원회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중에 미디어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는 2010년에 통일 이후 민주적 체제전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양케이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디어와 의견의 다양성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언론이 다원적이며 편견 없는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관해 주로 조사되었다. 이를 위해 인력과 제도의 전환과 동독에 관한 보도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함께 진행된 설문조사를 보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동독에 관한 언론보도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과 관련된 것으로는 1989-1990년 이후에는 신탁관리청의 매각정책, 구동독지역에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서독 신문사들의 전략, 새로운 신문의 창설 등이 다루어졌다. 새로운 신문이 많이 등장하여 신문의 봄이라 불리었던 1990-1991년의 신문호황은 금방 사라졌다. 신탁청의 매각정책으로 인해 동독지역 신문시장은 소수의 신문사에 의해 지배되게 되었고, 서독 신문사에 인수된 사통당의 지역신문이었던 신문사들이 새로 발간되는 신문 잡지보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통일 이후 전체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신연방주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의 방송사 대신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주가 참가하는 중부독일방송 MDR와 브란덴부르크주의 ORB가 설립되었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북부독일방송 NDR에 가입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의 3대 일간지와 공영방송은 동독을 주제로 비교적 많은 보도를 하였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변화와 연속성 사이에 관해 비교적 균형을 취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Schriften des Landtages Brandenburg Heft 5/2015. http://www.landtag.brandenburg.de/media_fast/5701/Schriftenreihe_5_2014_Internet.pdf (Stand 18.04.2016)



문서
번호 66

동독 드 메저에르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마티아스 켈러와의 인터뷰

2016년 5월 17일

담당자 / 기관 _ 마티아스 켈러 동독 과도개혁내각 대변인

내용 _

이 문서는 베를린 자유대 독일통일 총서 연구팀이 통일 당시 동독 개혁정부의 대변인과 2016년에 진행한 인터뷰이다.

출처 _ Interview der Forschungsgruppe Wiedervereinigung des Instituts für Koreastudien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